# 목 차

【 제2차 본회의 】	
1. 1993년도 평창군일반회계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	562
2. 1993년도 평창군일반희계 예비비지출 승인의건 ————	588
3. 1994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 ————	593
4 1995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b>5</b> 96
5. 평창군 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	615
6. 평창군 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및 수수료등의 부과징수에관한 조례안	618
7. 평창군 공중화장실설치및 관리조례안	634
8. 평창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안	642
9. 1994년도 제3회 평창군일반회계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	658
10. 1995년도 평창군 일반회계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667
【 제3차 본회의 】	
11.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695
12. 평창군 행정정보공개조례안	713
13. 평창군세 감면조례안	725
14. 평창군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 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	745
15. 1994년도 제4회 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	753

# 1993年度平昌郡一般會計吳特別會計 歲入歲出決算承認의件

# 審查報告書

1994年 12月 日 豫算決算特別委員會

#### 1. 回附決算

가. 1993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 2. 審查經過

가. 제안일자및 제출자 : 1994년 9월 30일, 평창군수

나. 회 부 일 자 : 1994년 11월 25일

다. 상 정 일 자 : 제28회 평창군의회(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94. 12. 6)

상정,의결

### 3. 提案說明의 要旨

( 제안설명자 : 재무과장 이영덕 )

- 1993년도 세입세출 결산는 총예산액은579억9,570만4천원 이며 세입결산액 585억1,162만4천원,세출결산액 503억2,745만 9천원으로 세계잉여금이 81억8,416만5천원임
- 세계잉여금처리상황은 총81억8,416만5천원중 명시이월이 13억206만9천원이고, 사고이월이 59억9,525만1천원, 보조금잔액 1억4,994만1천원, 순세계잉여금 7억3,690만4천원임

# 4. 專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旨

(전문위원 신교선)

## 가. 일반회계세임

○ 지방세는 목표액 44억8,400만원대 정수액은 52억 9,000만원으로 8.3%를 중액 정수 하였으나, 징수결정액중 미수납된 3억300만원은 결손처분없이 익년도로 이월 하였음.

(4) 医克克克氏 医甲基基甲基甲基乙基

-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예산액 112억8,500만원중 93.5%에 해당하는 105억5,400만원을 징수하였으나, 징수결정액 110억8,300만원에 비하면 5억2,900만원이 미수납되었음.
- 임시적세의수입의 공유재산매각수입은 송정택지분양부진 으로 세입추계가 부정적으로 판단됨.
- 93년도 세입결산은 부정확한 세입추계로 재정균형을 견지 하지 못한 결과가 초래됨.

#### 나. 일반회계세출

- 예산액과 전년도 이월사업비를 포함한 예산현액 508억 7,700만원에 대하여 80%인 407억 5,800만원을 집행하고 94년도 이월액 63억 3,600만원을 차감하면 7.44%에 해당 하는 37억83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93세입결함으로 오는 결산상의 적자를 예상한 계획적인 불용처리임.
- 결산상 순세계잉여금이 800만원으로 전년도 14억 6,000 만원에 비해 크게 미달하고,
- 예산전용은 6개과목에서 9,200만원을 전용하였는바, 모두 규정을 준수 하였음.

### 다. 특별회계 세임세출

○ 상수도특별회계를 비롯한 8개 특별회계로서 세입결산액 112억6,500만원증 지출액 95억 6,900만원과 익년도이월 액 9억 6,100만원을 차감한 결산상 잉여금은 7억3,500만원임.

### 5. 質疑以 答辯要旨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o 군도 확.포장사업의 수의계약	o '95년부터는 경쟁입찰이나 예가조 정등 개선				
o 결산의 예비 검토 불이행	o '94년도 세임세출결산시 예비검토 이행				

# 6. 討論要旨

### 7. 審 査 結 果

○ 원안에 대하여 『 이의 없음 』을 의결

# 8. 少數意見의 要旨

[없음]

### 9. 其他必要한事項

가. 건의사항 : 없음.

나. 기타 특별사항 : 없음.

# 1993년 평창군 세입・세출 결산

의안 번호 /84 제출년월일 : 1994. 9.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 1. 제안이유

1993년도 평창군 세입·세출 결산을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벌첨과 같이 승인요청을 합니다.

#### 2. 관계법령

- ㅇ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
- ㅇ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

#### 1993년 세임 · 세출 결산개요

	O <del>8</del>	一				•		s*
			* 				(단위 : 千	원)
	會計別	致算額	歳入決算額	가/나	歳出決算額	7-/14	蔵計剰除金	4/4
	會計 別	(가)	(日)	(%)	(다)	(%)	(라)	(%)
	at	57,995,704	58,511,624	101	50,327,459	87	8,184,165	15
-	一般會計	47,538,987	47,246,917	99	40,758,160	86	6,488,757	12
4	特別會計	10,456,717	11,264,707	108	9,569,299	91	1,695,408	15
::	# <u>+</u>	10,456,717	11,264,707	108	9,569,299	91	1,695,408	15
	상수도	상수도 2,564,285		103	2,329,853	91	317,612	12
擊	주택사업	826,029	442,845	54	374,850	45	67,995	15
	새마을소득금고	10,175	9,850	97	6,000	59	3,850	39
看	재마을소독 특별지원사업	107,443	238,437	222	84,000	78	154,437	65
	영세민생활안정 기금	67,400	95,548	142	67,386	99	28,162	29
회	의료보호기금	540,673	532,246	98	527,013	97	5,233	1
	농공지구조성	483,009	352,839	73	332,218	69	20,621	6
계	궁유임야관리	75,550	129,688	172	18,618	25	111,070	86
	지방양여금	5,782,153	6,815,789	118	5,829,361	101	986,428	14

(천원 : 千원)

William Commence of the Commence of

_	<del></del>						(@#d: T*	<u>.</u> ,
	會計別	<b>豫算框</b>	微收決定額	71/4	收納額	4/4	未收納額	<u> </u>
		(가)	(나)	(%)	(다)	(%)	(라)	(%)
	<b>at</b>	57,995,704	59,771,923	103	58,511,624	98	1,260,299	2
	一般會計	47,538,987	48,078,951	101	47,246,917	98	832,034	2
	特別會計	10,456,717	11,692,972	112	11,264,707	96	428,265	4
	<del>計</del>	10,456,717	11,692,972	112	11,264,707	96	428,265	4
<b>*</b>	상수도	2,564,285	2,667,325	104	2,647,465	99	19,860	1
4	주택사업	826,029	826,029	100	442,845	54	383,184	46
별	새마을소득금고	10,175	9,850	97	9,850	100		
. 48	새마을소독 특별지원사업	107,443	238,437	222	238,437	100		
희	영세민생활안정 기금	67,400	102,918	153	95,548	93	7,370	7
<b>-44</b>	의료보호기금	540,673	532,486	98	532,246	99	240	1
<b>계</b>	농공지구조성	483,009	369,221	76	352,839	96	16,381	4
শ	공유임야관리	75,550	130,917	173	129,688	99	1,230	1
	지방양여금	5,782,153	6,815,789	118	6,815,789	100		

#### ㅇ 세출결산

(단위 : 千원)

	會計 別	致 算 類	支出額	바/나	移越額	마/다	不用額	마/라	豫算現額
		(가)	(나)	(%)	(다)	(%)	(라)	(%)	(마)
	<del>} </del>	57,995,704	50,327,459	80	7,297,320	11	5,332,502	8	62,957,281
	一般會計	47,538,987	40,758,160	80	6,335,909	12	3,782,809	7	50,876,878
	特別 合計	10,456,717	9,569,299	79	961,411	8	1,549,693	13	12,080,403
	ā <del>l</del>	10,456,717	9,569,299	79	961,411	8	1,549,693	13	12,080,403
<b>4</b>	상수도	2,564,285	2,329,853	88			307,137	12	2,636,990
7	주백사업	826,029	374,850	45		,	451,179	55	826,029
별	새마을소득금고	10,175	6,000	59			4,175	41	10,175
•	새마을소득 특별 지원	107,443	84,000	78			23,443	22	107,443
의	영세민생활 안정 기금	67,400	67,386	99			14		67,400
4	외료보호기금	540,673	527,013	97			13,660	3	540,673
	농공지구조성사업 ,	483,009	332,218	69			150,791	31	483,009
계	공유임야관리사업	75,550	18,618	25			56,932	75	75,550
	지방양여금	5,782,153	5,829,361	79	961,411	13	542,362	7	7,333,134

#### ㅇ 세계잉여금 처리상황

(단위 : 千원)

	A 11 DI	•	明 示	事 故		補助金	純歳計
	會計別	<del>#1</del>	移越	移越	雅 粮 奖	残 類	剩餘金
	#	8,184,165	1,302,069	5,995,251		149,941	736,904
	一般會計	6,488,757	1,302,069	5,033,840		144,708	8,140
	特別會計	1,695,408	· • · · · · · · · · · · · · · · ·	961,411		5,233	728,764
	#f	1,695,408				5,233	
	상수도	317,612	<u> </u>				317,612
큭	주택사업	67,995	·				67,995
	새마을소독금고	3,850					3,850
増	새마을소듁특별지원	154,437					154,437
회	영세민생활안정기금	28,162				-	28,162
	의료보호기금	5,233		-		5,233	
계	농공지구조성사업	20,621					20,621
	공유임야관리사업	111,070					111,070
	지방양역금	986,428		961,411			25,017

#### 4. 기타사항

○ 별점 세입·세출 결산서 및 부속서류 참조

# 1993년도

# 세입세출결산서

571 –

평 창 군

ㅇ세입예산현액 57,995,704,000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8,511,624,553

원이며

ㅇ 세출예산현액

62,957,281,140

원 (전년도 이월금 4,961,577,140원 포함)에 대하여

지출액은

50,327,459,739

원이며

ㅇ그 차인금액은 8,184,164,814 원이며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채무상환에 지출한

(원금 원, 이자

원)을 공제한 잉여금총액 8,184,164,814원은

회계별로 익년도에 각각 이월한다.

0 익년도 이월액중에는

• 명시이월

1,302,069,000원

・사고이월

5,995,251,430원

• 계속비이월

원

·보조금 집행잔액 149,940,87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736,903,514원이다.

ㅇ 세입예산현액 47,538,987,000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7,246,917,518 원이며

o 세출예산현액 50,876,878,130 원에 대하여 (전년도 이월금 3,337,891,130원 포함)에 대하여

지출액은 40,758,159,959 원이며

ㅇ그 차인금액은 6,488,757,559 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애 의거 기존채무상환에 지출한 원

(원금 원, 이자

원)을 공제한 잉여금총액 6,488,757,559원은

회계별로 익년도에 각각 이월한다.

ㅇ 익년도 이월액중에는

· 명시이월 1,302,069,000원

• 사고이월 5,033,840,430원

•계속비이월 원

•보조금 집행잔액 144,708,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8,140,129원이다.

### 3. 1993년도 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9개 특별회계에 대한

#### ■ 총괄결산현황은

ㅇ세입예산현액 10,456,717,000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1,264,707,035 원이며

○ 세출예산현액 12,080,403,010 원 (전년도 이원금 1,623,686,010원 포함)에 대하여

지출액은 9,569,299,780 원이며

ㅇ그 차인금액은 1,695,407,255 원이며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채무상환에 지출한 원

(원금 원, 이자 원)을 공제한 잉여금총액 1,695,407,255원은

회계별로 익년도에 각각 이월한다.

ㅇ 익년도 이월액중에는

• 명시이월 원

• 사고이월 961,411,000원

•계속비이월 원

·보조금 집행잔액 5,232,87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728,763,385원이다.

ㅇ 세입예산액

2,564,285,000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647,465,350

원이며

ㅇ 세출예산현액

2,628,270,000

원 (전년도 이월금 72,705,000원 포함)

지출액은

2,329,852,940

원이다.

ㅇ그 차인잔액은 317,612,410 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채무상환액

원

(원금

원, 이자

원)을 공제한

317.612.410 원은

익년도에 이월한다.

ㅇ 익년도 이월액중에는

• 명시이월

원

• 사고이월

원

• 계속비이월

원

•보조금 집행잔액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317,612,410 원이다.

-575

#### 나.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ㅇ세입예산 826,029,000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42,844,628 원이며

o 세출예산현액 826,029,000 원 (전년도 이월금 원 포함)

지출액은 374,850,230 원이다

0 그 차인잔액은 67,994,398 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채무상환액

(원금 원, 이자 원)을 공제한 67,994,398 원은

원

익년도에 이월한다.

0 익년도 이월액중에는

• 명시이월 원

• 사고이월 원

•계속비이월 원

·보조금 집행잔액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67,994,398 원이다.

ㅇ 세입예산

10,175,000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9,849,826

원이며

o 세출예산현액

10,175,000

원 (전년도 이월금

원 포함)

지출액은

6,000,000

원이다

o 그 차인잔액은 3,849,826

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채무상환액

원

(원금

원, 이자

원)을 공제한 3,849,826

원은

익년도에 이월한다.

ㅇ 익년도 이월액중에는

• 명시이월

원

• 사고이월

원

• 계속비이월

원

•보조금 집행잔액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3,849,826 원이다.

-577

#### 리. 새마을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는

ㅇ세입예산 107,443,000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38,437,485 원이며

이세출예산현액 107,443,000 원 (전년도 이월금 원 포함)

지출액은 84,000,000 원이다

ㅇ그 차인잔액은 154,437,485 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채무상환액

(원금 원, 이자 원)을 공제한 154,437,485 원은

윈

익년도에 이월한다.

이 익년도 이월액중에는

• 명시이월 원

• 사고이월 원

•계속비이월 원

·보조금 집행잔액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154,437,485 원이다.

#### 마.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ㅇ 세입예산

67,400,000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95,547,975 원이며

ㅇ 세출예산현액

67,400,000

원 (전년도 이월금

원 포함)

지출액은

67,386,000

원이다

ㅇ그 차인잔액은 28,161,975 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채무상환액

원

(원금

원, 이자

원)을 공제한 28,161,975

원온

익년도에 이월한다.

ㅇ 익년도 이월액중에는

• 명시이월

원

• 사고이월

원

• 계속비이월

원

•보조금 집행잔액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28,161,975 원이다.

#### 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ㅇ 세입예산

540,673,000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32,245,930

원이며

o 세출예산현액

540,673,000

원 (전년도 이월금

원 포함)

지출액은

527,013,060

원이다

ㅇ그 차인잔액은 5,232,870 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채무상환액

원

(원금

원, 이자

원)을 공제한

5,232,870

원은

익년도에 이월한다.

0 익년도 이월액중에는

• 명시이월

원

• 사고이월

원

• 계속비이월

· 원

• 보조금 집행잔액

5,232,870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원이다.

#### 사.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ㅇ 세입예산

483,009,000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52,839,395

원이며

ㅇ 세출예산현액

483,009,000

원 (전년도 이월금 원 포함)

지출액은

332,217,930

원이다

ㅇ그 차인잔액은 20,621,465 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채무상환액

원

(원금

원, 이자

원)을 공제한

20,621,465 원은

익년도에 이월한다.

ㅇ 익년도 이월액중에는

• 명시이월

워

• 사고이월

원

• 계속비이월

원

• 보조금 집행잔액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20,621,465

원이다.

ㅇ 세입예산

75,550,000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29,687,436

원이며

ㅇ 세출예산현액

75,550,000

원 (전년도 이월금

원 포함)

지출액은

18,618,320 원이다

ㅇ 그 차인잔액은

111,069,116 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채무상환액

원

(원금

원, 이자

원)을 공제한 111,069,116 원은

익년도에 이월한다.

0 익년도 이월액중에는

• 명시이월

원

• 사고이월

원

• 계속비이월

원

• 보조금 집행잔액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111,069,116

원이다.

#### 자. 지방양여금 특별회계는

이세임예산 5,782,153,000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6,815,789,010 원이며

여사출예산현액 7,333,134,010 원 (전년도 이월금 1,550,981,010 원 포함)

지출액은 5,829,361,300 원이다.

ㅇ그 차인잔액은 986,427,710 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채무상환액

(원금

원, 이자

원)을 공제한 (

986,427,710 원은

원

익년도에 이월한다.

이 익년도 이월액중에는

• 명시이월 원

·사고이월 961,411,000 원

•계속비이월 원

·보조금 집행잔액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25,016,710 원이다.

### 세입결산 총괄

(단위:원)

_		······································		<del></del>	······			•			· · · · · · · · · · · · · · · · · · ·		
		구 분	מו גוגוה ומוני	이체둥	세입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	Ą	액	미수남액		납액처리	비
	과	목	세입예산액	중감액	- 1 B - 1 C C - 1	78 T 78 78	수납총액	과오납반환액	실제수납액	-1183	결손처분	익년도이월	고
		합 계	57,995,704,000	4,961,577,140	62,957,281,140	59,771,923,248	58,548,579,628	36,955,075	58,511,624,553	1,260,298,695	701,000	1,259,597,695	
		. A	47,538,987,000	3,337,691,130	50,876,878,130	48,078,951,393	47,269,872,593	22,955,075	47,246,917,518	832,033,875		832,033,758	
		지 방 세	4,884,000,000		4,884,000,000	5,593,668,649	5,291,712,823	1,011,010	5,290,701,813	302,966,836		302,966,875	
	,	보 통 세	4,591,000,000		4,591,000,000	5,154,721,034	4,961,172,507	1,011,010	4,960,161,497	194,559,537		194,559,537	
Į ą	1	목 격 세	200,000,000		200,000,000	285,220,530	267,568,027		267,568,027	17,652,503		17,652,503	
		과년도 수입	93,000,000		93,000,000	153,727,085	62,972,289		62,972,289	90,754,796		90,754,796	
		세외수입	11,284,693,000		14,622,584,130	11,083,136,344	10,576,013,370	21,944,065	10,554,069,305	529,067,039		529,067,039	
빈	<u>r</u>	경상객 수입	2,866,321,000		2,866,321,000	2,724,923,262	2,695,402,597	828,690	2,694,573,907	30,349,355		30,349,355	
		임시객 수입	8,418,372,000	3,337,891,130	11,756,263,130	8,358,213,082	7,880,610,774	21,115,375	7,859,495,398	498,717,684		498,717,684	
3	1	지방교부세	18,361,000,000		18,361,000,000	18,361,000,000	18,361,000,000		18,361,000,000	0		0	
		법 정 분	17,561,000,000		17,561,000,000	17,561,000,000	17,561,000,000		17,561,000,000	0		. 0	
		중 액 분	800,000,000		800,000,000	800,000,000	800,000,000		800,000,000	0		0	
겨	}	보 조 금	11,709,294,000		11,709,294,000	11,741,146,400	11,741,146,400		11,741,146,400	0		0	
		국고보조	5,338,479,000	,	5,338,479,000	5,335,519,880	5,335,519,880		5,335,519,880	0		0	
		도비보조	6,370,815,000		6,370,815,000	6,405,626,520	6,405,626,520		6,405,626,520	0		0	
		국내차입금	1,300,000,000		1,300,000,000	1,300,000,000	1,300,000,000		1,300,000,000	0		0	
		국내차입금	1,300,000,000		1,300,000,000	1,300,000,000	1,300,000,000		1,300,000,000	0		0	

15847

														,		<del></del>
	•			구	분	341 343 3	이체동	세임예산현액	지스거리에	<del>ن</del>	납	ᅄ	미수남백	미수	납액처리	я)
3	4	목				세입예산액	중감액	<i>ભારા ભારા</i> સચ	징수결정액	수납총액	과오남반환액	실제수납액	11.18.4	결손처리	익년도이월	고
			계			10,456,717,000	1,623,686,010	12,080,403,010	11,692,971,855	11,278,707,035	14,000,000	11,264,707,035	428,264,820	701,000	427,563,820	
		상 특	수 별	<u>.</u> 회	도 계	2,564,285,000	72,705,000	2,636,990,000	2,667,325,255	2,647,465,350		2,647,465,350	19,859,905		19,859,905	
		<u>구</u> 주 특	택 볅	사 회	업 계	826,029,000		826,029,000	826,029,000	456,844,628	14,000,000	442,844,628	383,184,372		383,184,372	
특	- 1	새미 특	마을 소 별	노득 등 회		10,175,000		10,175,000	9,849,826	9,849,826		9,849,826				<u> </u>
별	Γ	새ㅁ	가을 4 별 지	녹득	7고	107,443,000		107,443,000	238,437,485	238,437,485		238,437,485			· ·	
		영사	네 민 4 금 특	방활인	ŀ 정	67,400,000		67,400,000	102,917,645	95,547,975		95,547,975	7,369,670		7,369,670	
희			昆 보		금	540,673,000		540,673,000	532,485,930	532,245,930	:	532,245,930	240,000		240,000	
계			공 지 업 특			483,009,000		483,009,000	369,220,458	352,839,395		350,839,395	16,381,063		16,381,063	<u> </u>
		광 .	유 임 업 특	야관	<u>!</u> 리	75,550,000		75,550,000	130,917,246	129,687,436		129,687,436	1,229,810	701,000	528,810	
		지 특	방 9 별	》 역 회		5,782,153,000	1,550,981,010	7,333,134,010	6,815,789,010	6,815,789,010		6,815,789,010				
			_													
						,										
				•												•
			•												:	

<del>-- 585 --</del>

								( = 1	
과	구 분 목	예 산 액 ⑦	예산성림후 중감액 ①	예 산 현 액 ⑤=⑦+ⓒ	지출원인행위액 ②	지 <b>출</b> 액 ⑩	익년도이월액 <sup>19</sup>	⑤·⑥·⑩ F 용 에	비고
	함 계	57,995,704,000	4,961,577,140	62,957,281,140	56,322,711,169	50,327,459,739	7,297,320,430	5,332,500,971	
	계	47,538,987,000	3,337,891,130	50,876,878,130	45,792,000,389	40,758,159,959	6,335,909,430	3,782,808,741	
	의 회 비	327,643,000		327,643,000	314,224,490	314,224,490		13,418,510	
일	일 반 행 정 비	10,405,530,000	55,231,000	10,460,761,000	9,732,009,444	9,675,659,444	92,162,000	692,939,556	
,	사회복지비	6,056,954,000	24,935,000	6,081,889,000	5,350,264,292	4,985,158,862	525,105,430	571,624,708	
반	산 업 경 제 비	8,591,765,000	1,298,301,650	9,890,066,650	9,546,476,190	8,500,377,190	1,046,099,000	343,590,460	
회	지역개발비	17,789,319,000	990,861,290	18,780,180,290	16,494,646,083	13,012,648,323	3,887,254,760	1,880,277,207	
	문화및체육비	3,277,208,000	1,112,004,190	4,389,212,190	3,611,790,280	3,527,502,040	785,288,240	76,421,910	
계	민 방 위 비	455,296,000		455,296,000	394,086,640	394,086,640		61,209,360	
	지원및기타경비	635,272,000	143,442,000	491,830,000	348,502,970	348,502,970		143,327,030	
	계	10,456,717,000	1,623,686,010	12,080,403,010	10,530,710,780	9,569,299,780	961,411,000	1,549,692,230	
특	상수도사업	2,564,285,000	72,705,000	2,636,990,000	2,329,852,940	2,329,852,940		307,137,060	
<b>—</b>	주 택 사 업	826,029,000		826,029,000	374,850,230	374,850,230		451,178,770	
별	의료보호기금	540,673,000		540,673,000	527,013,060	527,013,060		13,659,940	
2	새마율소득금고	10,175,000		10,175,000	6,000,000	6,000,000		4,175,000	
희	영세민생활안정기금 -	67,400,000		67,400,000	67,386,000	67,386,000	-	14,000	
-	<b>새마율소독특별지원사업</b>	107,443,000		107,443,000	84,000,000	84,000,000		23,443,000	,
계	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	483,009,000		483,009,000	332,217,930	332,217,930		150,791,070	
71	공유임야관리사업	75,550,000		75,550,000	18,618,320	18,618,320	1.42	56,931,680	
	지 방 양 여 금	5,782,153,000	1,550,981,010	7,333,134,010	6,790,772,300	5,829,361,300	961,411,000	542,361,710	

1 586

세입ㆍ세출결산상 잉여금 처리상황

					구	분					୦) କୃ		<del></del> 역	<u></u>	
					•	Ľ	세입결산액	세출결산액	세계잉여금	익	년 도 이			]	비
							(71)	als	(대)		₹ <u>∓</u> 9	밀	보조금	순세계잉여금	고
j	<u>\$</u> ]	7	비	변			(21)	(나)	(가 - 나)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사용잔액		
		Ŷ	ł			계	58,511,624,553	50,327,459,739	8,184,164,814	1,302,069,000	5,995,251,430		149,940,870	736,903,514	
		q	Į	반	회	계	47,246,917,518	40,758,159,959	6,488,757,559	1,302,069,000	5,033,840,430		144,708,000	8,140,129	
					계		11,264,707,035	9,569,299,780	1,695,407,255		961,411,000		5,232,870	728,763,385	
투		7	y.	4	도	사 업	2,647,465,350	2,329,852,940	317,612,410					317,612,410	
		2	주	택	,	사 업	442,844,628	374,850,230	67,994,398					67,994,398	
별		,	비ㅁ	<b>)</b> 을	소 -	두금 고	9,849,826	6,000,000	3,849,826					3,849,826	
		,	마-	율소득	금고	.지원사업	238,437,485	84,000,000	154,437,485					154,437,485	
회		٩	경세	민생	활인	·정기금	95,547,975	67,386,000	28,161,975					28,161,975	
		2	리 -	K 1	<u>,                                    </u>	기 금	532,245,930	527,013,060	5,232,870				5,232,870		
  계		-	£ <u>4</u>	- 지 -	7 <i>&amp;</i>	성사업	352,839,395	332,217,930	20,621,465			· · · · · · · · · · · · · · · · · · ·		20,621,465	
		-7	당 유	- 임 여	야 관	리사업	129,687,436	18,618,320	111,069,116					111,069,116	
		7	지	바	양	여 급	6,815,789,010	5,829,361,300	986,427,710		961,411,000	! 		25,016,710	

-587 -

# 1993年度平昌郡一般會計 豫備費支出承認의件

# 審査報告書

1994年 12月 日 豫算決算特別委員會

#### 1. 回附豫備費

가. 1993년도평창군일반회계예비비

#### 2. 審查經過

가. 제안일자및 제출자 : 1994년12월 2일 , 평창군수

나. 회 부 일 자 : 1994년 12월 2일

다. 상 정 일 자: 제28회 평창군의회(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94. 12. 6)

상정,의결

#### 3. 提案說明의 要旨

( 제안설명자 : 기획실장 고창식 )

○ 1993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2억7,376만 2천원으로서 환경미화원 퇴직금외 12건에 1억4,463만3천원을 지출하였음.

### 4. 專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旨

(전문위원 신교선)

- 예비비는 총 13건에 1억 4,463만 3천원을 지출하였는바, 대부분이 농작물재해보상및 태풍로빈으로인한 피해복구비 등으로 지출되었으나,
  - 세출의 예측이 매년 반복되는 환경미화원 퇴직금 2건, 수로원퇴직금 2건의 지출은 예산에 반영하여 의회의 숭인 절차를 득하는 것이 더 바람직 했을것으로 사료됨.
  - 청소차량 손해보상금 5,500만원의 지출은 진부면 예산에서 종합보험료가 계상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에 가입 하지 않음으로써, 지출요인이 발생하여 예산의 낭비를 초 래하게 된것은 문제가 있다고 사료됨.

#### 5. 質疑 以答辯要旨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o 환경미화원, 수로원 퇴직금을 지출한 이유는	o 환경미화원및 수로원은 퇴직의 예 측이 불가능하나 95년에는 예산에 계상하여 지출하겠음.
o 청소차량 손해보상금을 지출한 이유는,	o 우선 예비비에서 지출하고 구상권을 청구하였으나 그 사유가 되지 않으며, 이는 행정의 중대한 착오로 생각하며, 향후 예비비지출에 신중을 기하겠음.

6. 討論要旨

[ 없 음 ]

- 7. 審査結果
  -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음 』 을 의결
- 8. 少數意見의 要旨

[ 없 음 ]

9. 其他必要한事項

가. 건의사항 : 없음.

나. 기타특기사항 : 없음.

## 1993년도평창군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

의 안 번호 20/ 제안년월일 : 1994.12.

제 안 자:평창군수

### 1. 계안사유

지방자치법120조에의거 1993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을 의결요구 합니다.

### 2. 예비비지출총괄

(단위:천원)

7	午	에 비 비 에 산 액	지 출 결 경 액	지 출 액	의 년 도 이 웹 액	불 용 액	비고
함	71	273,762	144,633	144,633			
경 소	판 리		9,764	9,764			
능 산	판 리		32,902	32,902			
도로교	. <b>량관</b> 리		10,328	10,328			
쟤 해	대최		36,408	36,408			
골 자	구 자 판 리		55,231	55,231		•	

# 1993년도 평창군일반회계 예비비지출승인조서

(단위:원)

					7	1	•	<b>A</b>	<b>원</b> 원 인	지	*	4	이원액	불용예		為	리	일	자			
7			*	<u> </u>	1	1 3	4	4	શ વ				Ø-0	<b>න-</b> 9	지	출경	겨	ŧ	÷	인	사	a
4	함	4	A	항		Ø			0		8		0-0	0-9	햩	자	일	자	엩	자		
					144	,633	,000	144,0	533,000	144,	633,0	000				_						
경소된	<u> </u> 리	기 (	· 7	) 기	8	.573	.000	8,	573,000	8,	573,0	000			5.	25			5.	25		미화 작급
÷산₹	t,리	ረ ተ	ኒ ሉ '	설비	7	,114	,000	7,1	114,000	7,	.114,0	000			6.	21			6.	21		바구 약대 원
판 도보호	로 <b>양</b> 리	<b>₹</b>	ኔ <sup>ለ</sup>	검비	6	.818	,000	6,	318,000	6,	818,0	900			7.	30			7.	30	군도	도및 수보 직금
সাগা	14	<b>₹</b>	ኒ <mark>ት</mark> '	검비	9	,048	,000	9,0	048,000	9,	048,0	200			7.	30			7.	30	7월 : 과 해 비	호우 복구
농산원	<del>1</del> 리	<b>₹</b>	ኒ <mark>ት</mark> የ	걸 비	1	.631	,000	1,0	531,000	1.	631.0	000			9.	21			9.	21	7월 : 의 최 자지 지원	영 <del>등</del> 디
농산원	<b>후</b> 리	<b>₹</b>	ኒ <mark>ት</mark> ና	a I	4	,070	,000	4,6	070,000	4,	070,0	000			9.	21			9.	21	이식 병병 겨원	
농산원	<b>라</b> 리	7.5	ኒ <b>ት</b> የ	g aj	11	,592	,000	11.5	592,000	11,	592,0	000			9.	21			9.	21	백 냉 坪 해 농 약	방지
<b>স গ</b> গ	17	<b>2</b>	ኒ <b>사</b> ና		27	,360	,000	27,3	360,000	27,	360,0	000			9.	21			9.	21		의 용급 로빈
골자편	<b>:</b> 리	경소	ያ ት	보비	55	,231	,000	55,2	231,000	55,	231,0	<b>XXX</b>			10.	8			10.	8		차량 배상
도로 3 관	Z <b>당</b> 리	<del>주</del> 9	<b>-</b> ሉ የ	법비	3	,510	,000	3,5	510,000	3,	510,0	000			10.	27			10.	27	수로 사망 급	원 <b>최</b> 작
경소원	1 리	기원	. 경수	하 피	: ا	. 191	,000	1,1	91,000	1.	191,0	000			12.	27			12.	27		미 화 작 금
ें ⊹ें स	<b>:</b> 리	Ħ	¥	귣	6	<b>.</b> 797	,000	6,1	797,000	6,	797,0	000			11.	22			11.	22	제공 예의 농자 지원	한 :
농산론	리	¥	상	3	1.	, <del>69</del> 8	,000	1.6	598,000	1,	698,0	000			11.	22			11.	22	우박 농가 자계	લે ક
	نـــــ							<u>l</u>							L							

# 1994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계획동의안

의 안 권 203 번 호 제출년월일 : 1994.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 1. 제안이유

1993. 12. 17. 평창군외회에서 동외의결된 1994 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여 집행하여야할 사유가 발생하여 지방재정법제77조제1항 및 평창군공유 재산관리조례제37조제1항 규정에 의거 동 변경계획의 동의의결을 받고자 제안함.

#### 2. 주요골자

군유림 확대 및 경영효율을 기하고지 군유림 인접 사유림 4필 97,389㎡를 추가 취득코자 변경하는 것임.

#### 3. 관련법규

- 가. 지방자치법제35조
- 나. 지방재정법제77조 및 동법시행령제84조
- 다. 평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제37조 및 동시행규칙제29조

### 총 괄 표 (7-1)

(일반회계)

단위 : ㎡, 천원

구 분		합 계				94 당	초	94, 2차 변경				
	l E		건 <b>수</b>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 액	건수	수량	금 액	
		토지	38	171,549	742,884	34	74,160	682,735	4	97,389	60, 149	
	계	건물	1	408	225,000	1	408	225,000				
취		기타										
41	1)	토지	24	111,442	373,683	20	14,053	313,534	4	97,389	60, 149	
	매 입	건물		•	:						Ì	
		기타							:			
	2)	토지	14	60, 107	369, 201	14	60, 107	369, 201				
	교환	건물			•			·				
독	취목	기타										
-	. 3)	토지										
	기타	건물	1	408	225,000	1	408	225,000				
	취득	기타										
		토지	36	46,859	775, 563	36.	46,589	775,563				
처	계	건물	5	1,391	71,105	5	1,391	71,105		1		
,		기타										
	4)	토지	21	3,244	344,684	21	3, 244	344, 684				
	매 각	건물										
		기타										
	5)	토지	15	43,615	430,879	15	43,615	430, 879				
분	교 환 매 각	건물	5	1,391	71,105	5	1,391	71, 105			·	
	대 다 (철거)	기타										
대		토지	545	690, 927								
早		건물	5	555								
		기타	56	94, 331								

# 1994년도 취 득 재 산 목 록 (7-2)

희계명 : 일반희계

단위 : 교, 천원

		<del> </del>		,			211 11 12 2
일련		계산의 표/	ዛ	추정가액	취독시기	#1 E 11 ^	취득재산 소유자
번호	지목	소 재 지	수량			취 독 사 유 ·	주소 성명
	토지	4 필	97,389	60, 149			
계	건물						
	기타						
1	임	방림 방림리 ··· 572	21,818	15,578	하반기	군유림 확대 및 경영효율	대화면 대화리 1001 박 중 문
2	•	573	17,455	12, 305	,		•
3 .	•	대화 개수리 237	35, 207	19,540	•	•	평창읍 하리 410-11 윤 옥 순
4	•	. 239	22,909	12, 726	•	•	•

#### 19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의 안 번호 건호

제출년월일 : '94. 12.

제출자 : 평 창 군 수

#### 1. 제안이유

강원도 회계 13330-1564(94. 10. 18)호 1995 공유재산 관리계획 작성기준에 의하여 작성하여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걸친 1995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지방재정법제77조 및 동법시행령84조와 평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37조에 따라 평창군 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첨부된 안과 같이 제안함.

#### 2. 주요골자

1995 공유재산관리계획 작성기준에 의하여 입안한 취득·처분재산은 총211건에 4,724,846㎡로서 취득재산은 군청사 확장부지 4필지 2,956㎡,보건지소 및 진료소 부지 3개소 6필지 1,460㎡,건물 신규취득 4건 8,363㎡등 모두 11건 10필 4동 12,779㎡ 임처분재산은 사유건물 접유부지 매각 11필지 1,354㎡와 봉명 도읍가꾸기 이주 주택부지, 총정 택지 미분양 부지,횡계 수해주택 이전부지, 농촌지도소 북부지소부지등 각종 사업추진용 매각재산 5건 36,155㎡이며 구 용전출장소,도암문화관등 불용 건물철거 2건 473㎡임.

교환은 군유림 집단화를 위하여 국유림과 교환코자 하는 것으로서 처분 53필 2,326,880㎡ 취득 126필 2,347,205㎡ 임.

#### 3. 관계법규 및 지침

- 가. 지방자치법 제35조
- 나. 지방재정법제77조 및 동법시행령제84조
- 다. 평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제37조 및 동시행규칙제29조

# 총 팔 표 (7-1)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m', 천원

	_			캽	계	ধ	} 반	기	t	하 반	7]
Ī	L	분	건수	수 량	금 액	건수	수 량	금 액	건수	수 랑	금 액
		토지	136	2,351,621	1,534,432	50 l	, 387, 502	1,009,017	86	964, 119	525, 415
	계	건물	4	8,363	7,574,650	2	2,454	1,075,000	2	5,909	6, 499, 650
.,		기타						;			
취	1)	토지	10	4,416	361,914	4	2,956	316,713	6	1,460	45,201
	_n _n	건물	4	8,363	7,574,650	2	2,454	1,075,000	2	5,909	6, 499, 650
	매 입	기타			•						
	2) , 교 환	토지	126	2,347,205	1,172,518	46 1	, 384, 546	692,304	80 9	62,659	480,214
	-	건물						•			
뜩	취 득	기타			•						
¬	3) 기 타	토지									
	기 대	건물									
	<b>F</b>	기타									
		토지	69	2,364,389	5,211,563	27 1	  , 010, <i>765</i> 	558,861	42 1	l <sup> </sup> , 353, 624 	4,652,702
	계	건물 (철거)	2	473	42, 114				2	473	42, 114
为		기타									
,	4)	토지	16	37,509	4,029,718	9	1,274	35,715	7	36,235	3,994,003
	매 각	건물				]					
분		기타									
"	5)	토지	53	2, 326, 880	1,181,845	18	<sup> </sup> 1,009,49 	1 523,146 	35	1,317,38	39 <b>658,6</b> 99
	교 환 대 각	 건물 (철거)	2	473	42,114				2	473	42, 114
	(철거)	기타									
대	톺	지	545	690, 297						1. 7	
	건	뀰	5	555				į			•
부	7]	타	56	94,331		<u> </u>		<u> </u>			<u> </u>

## 1995년도 취 득 재 산 목 록 (7-2)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 천원

- 44 Al 7		로단커기						
일련	٦	대산의 표	시	추정가역	취득시기	취득사유	취득대산	소유자
번호	지목	소 재 지	수량	1 0 2 1 71	4) 4 1 2 1	, , , , ,	주소	성명
계	토지 건물 기타	10필 4동	4,416 8,363	361,914 7,574,650				
1	답	평창 하리 208	231	. 8, 223	상반기	군청사 부지 확장	춘천시 후평동 정	830-2 경 일
2	N	평창 하리 87	546	51,214		•	평창 하리 197 이	창 균
3		평창 하리 88-2	2,129	253, 351		•	원주시 봉산동 조	1102 성 분
4	*	평창 하리 227	50	3,925	•		평창 하리 197 이	남 진
5	대	방림방림리 ·1287-3	245	7,413	하반기	방림보건지소 부지	방림면 방림리 강	1300 대 길
6		방림방림리 1288-3	147	4,447	•	•	•	
7	전	방림방림리 1287-2	260	7,865	•	•	•	
8	•	방림방림리 1287-7	181	5, 476		•		
9	•	붕평면은리 799-3	296	18,000	•	면은 보건진 료소 부지	경북 포항시 *	중앙동 경·호
10	•	붕평유포리 75-3	331	2,000	,	등매 보건진 료소 부지	붕평면 유포리 마	기 철

일권	7	제산의 표	시	추정가액	취됵시기	2) E 2) 0	취득대신	소유자
번호	지목	소 재 지	수량	ተ3/14	위탁시기	취독사유	주소	성명
11	건물	평창충부리 66-6	3,929	5,103,000	하반기	평창군 중합 문화예술회관 건립	प्रव	창 군
12	*	평창 하리 10	590	235,000	상반기	노성정 건립		
13		대화대화리 979-1 978-8	1,864	840,000	Я	체육관 건립		
14		도암횡계리 335	1,980	1,396,650	하반기	도암면 청사		•

## 1995년도 교환대상 재산 목록 (7-3)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 천원

회계명	8 : 일반	~ 게						141 • 111	, থাম
일련	재	산	의 표	시	四 幹	추 정	교 환	교환사유	교환
번호	구 분	지목	소 재 지	일단의수량	대상수량	가 액	시 기	# Q 7 11	대상자
계	교환취득	토자 건물 기타	126필기	2,347,205	2,347,205	1, 172, 518			
All	교환처분	토지 건물 기타	53필지	2,326,880	2,326,880	1,181,845			
1	교환취득	임야	평창 상리 26	2,380	2,380	1,190	상반기	군유림 집단화	국 산림청
2	M		5	9,620	9,620	4,810	*	и	4
3	R		<b>4</b> 0	1,736	1,736	<b>86</b> 8	я	,	
4	n		평창 중리 8	<b>7</b> 67	767	383	*		•
5			9	2,876	2,876	1,438	R	И	
6	R	•	13	992	992	496	R		
7	ø		평창노론리 80-2	4,959	4, 959	2, 479	Ħ	u	•
8	•		52	2, 102	2, 102	1,051		Ħ	•
9	•	•	53	2,357	2,357	1,178		n	•
10	•	•	평창고길리 51	83,603	83,603	41,801	n	N	•
11	n .	•	평창향동리 22	1,236	1,236	618	. N		•
12			27	780	780	390	ņ	•	•.
13		•	28	2,916	2,916	1,458	•	•	

일련	재	산	의 표	시	교 <u>한</u>	추 정	교환		교환
번호	구 분	지목	소재지	일단의수량	대상수량	가 액	시기	교환사유	대상자
14	교환취독	임야	명창향동리 19	1,031	1,031	-515	상반기	군유림 집단화	국 산림청
15			평창여만리 42	7,736	7,736	3,868	,,	*	•
16	н	*	명창원당리 42	3, 174	3, 174	1,587	N	н	
17	•	#	43	2, 182	2, 182	1,091	*	. и	•
18	п		평창뇌운리 1	7,071	7,071	3, 535	H	н	•
19	,	,	2	7,273	7,273	3,637	н	п	R
20	я и	,	7	1,729	1,729	864	. *	e e	•
21	"		9	893	893	446	н	4	
22	•	н	63	1,488	1,488	744			<b>P</b>
23	,	•	평창 중리 10	86,777	86, <i>777</i>	43, 389			•
24			평창향동리 103	3,302	3,302	1,651	•		•
25			평창뇌운리 28	6, 965	6,965	3, 483	*	*	,
26		•	30	5,712	5,712	2,856			•
27	•	•	31	6, 585	6,585	3, 293	*	и	•
28	•		32	14, 321	14,321	7, 161	•	H	•
29	· ·		33	7,379	7,379	3,689		H	•
30	•		평창 상리 15	3,521	3, 521	1,761	•		•
31	N	•	18	4, 631	4, 631	2,316		*	•

일 ;	컨	재	산	의 표	시	亚 塾	추 정	교 환	교환사유	교환
번:	호 구 극	분	지목	소 재 지	일단의수량	대상수량	가 . 웩	시 기	正在小士	대상자
32	2 교환취	득	임야	평창종부리 43	21,025	21,025	io, 513	상반기	군유림 집단화	국 산림청
33	3 "			평창계장리 9	1,587	1,587	794	*	N	,
34	4		n	평창하일리 61	5, 289	5, 289	2,644		N	, 11
3:	5		M	62	8,331	8,331	- 4,166	н	P	,,,,,,,,,,,,,,,,,,,,,,,,,,,,,,,,,,,,,,,
30	5 "		•	64	9, 491	9, 491	4,745	H	*	H
3	7 .			65	1,587	1,587	794	*	u	, n
3	8 .	'	•	73	598	598	299	*	•	•
3'	9 •		•	74	2, 155	2, 155	1,078	,	•	
4	0 •		•	75	1,041	1,041	520	•		
4	1 •		a	76	2,023	2,023	1,012	*		•
4:	2		•	평창천동리 61	42, 545	42,545	21,273		•	•
4:	3		•	평창이곡리 33	8, 588	8,588	4, 294	*	•	•
4	4			34	2, 539	2,539	1,269	•		•
4.	5 *		•	11	5,851	5,851	2,956	•	*	,
4	6		•	평 창천 동리 1	983,802	983,802	491,901		•	.*
4	7 .		•	미 <b>란 한 란</b> 리 35	993	993	497	하반기	•	•
4	8 •		<b>p</b>	미탄마하리 17	7,934	7,934	3,967			
4	9 •			미탄 창리 2-2	4, 959	4, 959	2, 480			•

일련	재	산	의 표	시	교 환	추 정	교 환		교 환
번호	구 분	지목	소 재 지	일단의수량	대상수량	가 액	시 기	교환사유	대상자
50	교환취득	임야	미 탄 평 안 리 87	4, 463	4,463	2, 231	하반기	군유림 집단화	국 산림청
51	•	H	미탄기화리 9	27,273	27,273	13,637	H	W	
52	W	н	방림방림리 34	4,860	4,860	2,430	п	<b>π</b>	in .
53	*	H	" 113	595	595	298	n	n	
54	•	н	324	10,909	10, 909	5, 455	*	•	
55	N		325	7,636	7,636	3,818		N	. ,
56	• •	Ħ	394	. 1,091	1,091	546	• и		7
57	*	,	393	6,347	6,347	3, 173	•	и	•
58	,	Ħ	<b>3</b> 92	1,686	1,686	843	H	н	•
59	•	н	391-1	2,876	2,876	1,438	Ą	W	•
60		•	<b>4</b> 55	7,438	7,438	3,719	•	B	•
61	•	•	* 454	8,099	8,099	4,050	•	*	•
62	•	•	<b>4</b> 56	2,678	2,678	1,339	P	•	•
63	•		<b>45</b> 7	1,289	1,289	645			•
64	•	•	453	5,455	5, 455	2,728	•	•	•
65	•		583-2	5, 256	5, 256	2,628			
66	•	•	592	4,661	4,661	2,330	•		•
67	•		673	2,975	2,975	1,488	•	<b>#</b>	

일련	갞	산	의 표	시	교환	추 정	교 환		교 환
번호	구 분	지목	소 개 지	일단의수량	대상수량	가. 액	시기	교환사유	대상자
68	교환취득	임야	방림방림리 675	2,777	2,777	1,389	하반기	군유림 집단화	국 산림청
69		н	677	4,066	4,066	2,033			R
70	W	N	방림운교리 10	1,683	1,683	841	*	N	•
71	,	м	231	1,164	1,164	582	,	•	P
72	Ħ	ı,	방림계촌리 1086	6,007	6,007	3,004	н	•	n n
73		*	1089	298	298	149			,
74		н	1080	13,686	13,686	6,843.	H	•	•
75	•	н	방림방림리 870	3,570	3,570	1,785	н	R	
76		N	방림계촌리 234	12, 694	12,694	6,347	Ħ		•
77	,	•	대화하안미 663	8, 241	8,241	4,200		a.	•
78	N .	•	662	7, 934	7,934	3,957	Ħ	•	•
79		п	715	1,623	1,623	812		•	•
80		7	716	3,342	3,342	1,671			•
81	•	N	719	2,674	2,674	1,377	•		•
82	•		720	1,835	1,835	938	¥	•	. •
83	•		612	<b>5</b> 95	595	298	h		•
84	•		대화개수리 31	3,358	3,358	1,681	•		•
85	•		대화하안미 419	14,532	14,532	7,266	W	•	•

일 련	재	산	의 표	시	교 환	추 정	교 환	_ = 3 . 3 . 4	교환
번호	구 분	지목	소 재 지	일단의수량	대상수량	가 액	시 기	교환사유	대상자
86	교환취득	임야	대화대화리 166-1	3,074	3,074	1,537	하반기	군유림 집단화	국 산림청
87			211	13,884	13,884	6,942		H .	
88	•		대화 신리 771	21,818	21,818	10,909	N	н	п
89	*		봉평유포리 317	5,256	5,256	2,682	*	n	И
90	<b>a</b>	,	봉평덕거리 183	90,744	90,744	45,372	,		л
91	я	•	봉평창동리 198	17,851	17,851	8,925		· #	N
92		*	봉평평촌리 295	176,628	176,628	88,314	•	P	н
93	N	•	봉평창동리: 136	1,884	1,884	942		ff	н .
94		•	용평속사리 2	29, 455	29, 455	14,728	•		-
95	, F		3	56,033	56,033	28,016	•	н	н
96		•	<b>2</b> 96-3	52	52	26		Ħ	
97	•	•	전부하진부 17	1,190	1,190	595	•	u	
98			대화개수리 25	3, 164	3, 164	1,502	•	H	
99	N	•	대화상안미 180-1	1,190	1,190	592	•		*
100	M	•	140	1,091	1,091	546	•	•	•
101	H	•	* 451	1,686	1,686	843		•	•
102	•		330	3,074	3,074	1,537			u
103	•	•	<b>5</b> 80	595	595	297	•	•	•

일 련	재	<u></u> 산	의 표	시	교 환	추 정	교환		교환
번호	구 분	지목	소 재 지	일단의수량	대상수량	가 엑	시기	교환사유	대상자
104	교환취득	임야	대화대화리 24	3,372	3,372	1,686	하반기	군유림 집단화	국 산림청
105	a		653-2	13, 488	13, 488	5,744	•	. 1	
106	,	Ħ	대화상안미 397	1,864	1,864	932	#		19
107	N	,	398	231	231	116	1		н
108	W		407	25, 587	25, 587	12,794			IF .
109	н		대화하안미 460	5,613	5,613	2,582	*	<b>W</b>	*
110		N	417	4,770	4,770	2, 385		•	
111	•		진부화의리 24	1,521	1,521	760	•	И	я
112	#		• 25-1	2,083	2,083	1,042	e .	- "	н
113		•	진부막동리 43	1,983	1,983	991	•		н
114	•		진부마평리 194	2,588	2, 588	1,294	•		H
115	<b>10</b>	u	195	2,334	2,334	1,167	•	•	n
116	•	*	진부수항리 23	2, 132	2, 132	1,066	•	•	*
117	•		27	6, 407	6, 407	3, 204		•	
118		•	39	3,048	3,048	1,524	•	•	н
119		•	47	107,880	107, 880	53,940	•		a
120			진부하진부 401	38, 281	38, 281	19, 140			,,
121			350	85, 488	<b>8</b> 5, 488	42,744	•	•	

일권	채	·····	와 표	시	교 환	추 정	교 환		교환
번호	구 분	지목	초 재 지	일단의수량	대상수량	가 액	시기	교환사유	대상자
122	교환취득	임야	진부화의리 139	2,902	2,902	1,451	하반기	군유림 집단화	국 산림청
123	N	*	138	5,821	5, 821	2,911		Ħ	н
124			140	1,557	1,557	778	*	n	H
125	*		143	3,997	3,997	1,999	и		•
126	•	H	168	1,491	1,491	746	N	,	и
127	교환처분	Ħ	평창하일리 25	43,041	43, 041	21,520	상반기	•	H
128	,		• 27	93, 223	93, 223	46,611	• .		•
129	•	Ħ	32	12, 189	12, 189	6,094	4	•	н
130	,	•	미탄한탄리 69	6,446	6, 446	32,223	H	•	И
131		*	미탄희동리 49	134, 396	134, 396	57, 103	•	•	A
132	•	4	미탄백운리 20	171,866	171,866	85,533	•		
133	•	■,	<b>.</b> 38	77,355	77,355	38,575		•	*
134		•	미탄마하리 13	40,661	40,661	20, 330		•	,
135			18	38,678	38,678	19,339	•		B .
136		•	방림계촌리 2	10,810	10,810	5, 405		•	
137		•	대화대화리 65	37, 289	37, 289	18,644			ď
138	M	•	대화 신리 662	52, 562	52, 562	26, 281		•	•
139			<b>7</b> 09	17,950	17,950	8,975	•		•

일권	재	 산	의 표	시	교 환	추 정	교 환	¬ +1 -1 0	교환
번호	구 분	지목	소재지	일단의수량	대상수량	가 . 액	시기	교환사유	대상자
140	교환처분	임야	대화 신리 539	50, 579	50,579	25, 289	상반기	군유림 집단화	국 산림 <b>청</b>
141		*	1062	59,901	59, 901	29, 951	•	м	и
142	R	,	봉명덕거리 194	50, 281	50,281	25, 141	•	n	N
143	И	•	247	68,628	68,628	34,314		. "	
144	M	*	봉평유포리 398	43,636	43,636	21,818		N	н
145	*	,	봉평흥정리 13	7,240	7,240	3,620	ø	н	N.
146	a H	,	14	77,058	77,058	38,529	, #	14	a)
147	•		77	6,248	6, 248	3, 124	и	n	
148			진부봉산리 4	63,967	63,967	31,984		H	
149	*	•	• 5	23, 207	23, 207	11,604	h	M	
150		•	13	62,777	62,777	31,389	r	M	
151		•	14	6,347	6,347	3,173	•	п	•
152	,		50	22,711	22,711	11,356		H	•
153	,	ı	18	17,355	17,355	8,677	•	,	
154	•	•	21-1	7, 438	7, 438	3,719	,	п	•
155	•	•	21-2	88, 165	88, 165	44,083	•	N	•
156	*	•	21-3	694	694	347		P	•
157	•	,	21-4	992	992	496	•		»

일권	재	<u>산</u>	의 표	시	교 환	추 정	교 환		교 환
번호	구 분	지목	소 재 지	일단의수량	대상수량	가 왜	시기	교환사유	대상자
158	교환처분	임야	진부봉산리 31	36, 793	36,793	18, 397	상반기	군 유 림 집 단 화	국 산림 <b>청</b>
159	N	Jr.	33	58, 711	58,711	29,355	하반기	•	п
160	n		42	56,727	56,727	28, 364	*	,	N
161	7	W	44	26,876	26,876	13, 438	W	Ħ	it.
162	н	Я	<b>"</b> 45	86, 182	86, 182	43,091	W		н
163	"	•	47	28, 264	28, 264	14, 132	*		н
164	H.		* 51	147, 471	147, 471	<b>7</b> 3,736	, II	п	W
165		•	<b>52</b>	114,446	114, 446	57, 223	п	•	н
166	"	•	진 부 신 기 리 36	86,380	86,380	43, 190		•	H
167	"		도 암 휭 계 리 239	27, 273	27,273	13,637	R	n	н
168	H .		240-1	4,860	4,860	2,430	•	H	W
169	•	•	240-2	198	198	99	•		N
170	,		218	154, 116	154, 116	77,058	•	•	,
171	*		204	3, 570	3, 570	1,785	•	•	R
172	#	•	203	1,091	1,091	546	•	•	н
173		•	도암유천리 157	19,240	19, 240	9, 620	•	u	
174	N	•	도암차항리 244	4, 264	4, 264	2, 132		•	
175	и	•	도 암 수 하 리 29	17, 563	17,563	8,782		R	*

일련	쟤	산	허 끂	시	교 환	추 정	교환	교환사유	亚艳
번호	구 분	지목	소 재 지	일단의수량	대상수량	가 액	시 기	포환사파	대상자
176	교환처분	임야	도암수하리 26	45,640	45,640	22,820	하반기	군유림 집단화	국 산림청
177	•	•	30	7,553	7,553	3,777	N	н	н
178	<b>#</b> ·		<b>"</b> 30-1	1,472	1,472	736	н	7	N
179	•	<b>P</b>	32	4,500	4, 500	2,250	н	н	

# 1995년도 매각대상재산목록 (7-4)

희계대	평 :	일반회계					단위	: m', 천원
일련		재 산 의 3	또 시	매각대상	과표또는	매 각	매 각	매수희망자
번호	지목	소 재 지	일단의수량	수 량	평 가 왜	시기	사 유	주소 성명
	토지	16필지	52, 254	37,509	4,029,718			
계	건물							
	기타			•				-
1	대	평창읍 하리 138-1	208	55	3,844	상반기	지 방 재 정 법 제 95조 2항 4호	평창 하3리 김 중 헌
2	,	평창읍종부리 352	555	278	1,398	,	#	"종부3리 이 배 근
3	H	평창읍여만리 357-18	324	324	1,620	•	М	명창 하4리 최 용 학
4	잡종	대화면대화리 1001-94	63	63	12,637	•	N	대화 대화 9리 김 종 석
5	전	봉평면먹거리 338-7	184	184	481	•		봉평 덕거 2리 배 순 식
6		봉평 만덕거리 388-12	226	226	590	•	<b>N</b>	봉평 덕거 2리 주 태 윤
7	대	진부하진부리 130-19	9	9	4,095	•	н	진부하진부 김 영 순
8	잡종	진부하진부리 131-7	23	23	10, 465	•	•	진부하진부 김 영 규
9	구거	진부하진부리 1291-1	2,986	112	585	•		진부하진부 김 순 육

일 련		재 산 의 표	E 시	매각대상	과표또는	매 각	메 과	매수희망자
번호	지목	소 재 지	일단의수량	수 량	평 가 액	시기	사 유	주소 성명
10	대	진 부 하 진 부 리 152-3	197	39	17,823	하반기	*	진부하진부 전 형 진
11		N	197	41	18,737	N	*	진부하진부 김 영 무
12	답	봉평 창동리 421-1	8, 276	2,653	33, 427	*	*	
13	H	봉평 창동리 425-4	8,276	2,929	36,905		н	
14	대	진부 (송정택지)	25,242	25,242	3, 476, 092	•	•	
15	하천 ·	도암 횡계리 661-14	4, 437	4,437	342,092	n .	•	
16	대	도암 황계리 324-1	1,051	894	68,927	•	•	

# 1995년도 철거대상재산목록 (7-4)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m', 천원

일련		재 산 의 3	표 시	철거대상	과표또는	매 각	철 거	매수희망자
번호	지목	소 재 지	일단의수량	수 량	평가액	시 기	사 유	주소 성명
	토지							
계	건 물	2 동	473	473	42,114			
	기타			•				
1	건물	용평 용전리 ( 구 용전	82	82	4 207	સ્મે પ્રદેશો	노후건물	m =1 = 7 A
'	신흥	( T 중전 출장소)	62	02	4,207	하반기	사용불가	평창군수
2	R	도암 횡계리	391	391	27 007	#	도암면청사	
		(도암문화관)		391	37,907		부지 확장	

# 무상대부 및 사용허가 대상재산 목록(7-7)

일련		'재 산 의	표 시		2) 7) 7) 7)	무상대부	ul -	
번호	종별	소 재 지	지목・구조	수량	허가기간	사용허가 근 거	비고	
	토 지	6 필지		27,528		,		
계	건 물	2 동		119.98				
	기 타							
1	토지	평창읍 하리	대지	99	92. 9. 1	법시 행 령 88	평창군선거관리	
-	<b></b> ,	72-11	-1) - 1		95. 8. 31	조제2항1호	위원회	
2		평창읍 하리	n	204	4		er .	
		72-15		201				
3	•	용평면장평리	임야	11, <i>7</i> 88	, n	*	평창경찰서	
		380	- '				0.0.0 EVI	
4	*	용평면노동리	전	8,859	91. 7. 1	н	육군제3139부대	
		387-11		0,007	96. 6.30		4 E 7(3)37 4(	
5		용평면노동리		476		*	•	
		390				<del></del>		
6		진부면송정리	잡	6, 102	934. 1			
		1306-16	<b></b>		96. 3.31			
7	건물	도암면병내리	건물	68. 98	91. 6. 1		오대산 관리사	
			<b>- -</b>		96. 5.31		무소	

## 평창군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97*  제출년월일: 1994. 11.

제 출 자: 평 창 군 수

### 1. 제안이유

날로 복잡하고 어려운 행정행위가 늘어나고 주민의 욕구가 다양해지는 시기에 관내 법률 전문가가 없는관계로 각종 질의나 법령해석을 고문변호사에게 의뢰하고 있는바 이에따른 고문변호사 수당이 1981년도에 개정된후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어 이를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 하려는 것임.

### 2. 주요골자

수당지급액을 "월 5만원이상 10만원이하"에서 "매월 15만원이하"로 상한선을 조정(제5조제1항)

### 평창군조례 제 호

## 평창군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

평창군고문변호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중 "월액 5만원이상 10만원이하"를 "매월 15만원이하"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제5조(수당) ①고문변호사에 대하여는 예산	제5조(수당) ① ・・・・・・・・・
의 범위안에서 월액 5만원이상 10만원이	····· 매월 15만원이하····
하의 수당을 지급한다. 이 경우 위·해촉 —	
일이 월도중일 때에는 이를 1월로 본다.	
②(생략)	② (현행과 같음)

### 평창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 · 징수에관한조례안

의 안 번 호 *199* 

재출년월일 : 1994. 11.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 1. 제안이유

쓰레기감량화 및 재활용품 분리·배출을 도모하기 위한 『쓰레기수수료종량제』 '95 시행에 따른 사항을 본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고자 함.

### 2. 주요골자

- 가. 종량제 적용대상 폐기물 및 배출방법에 관한 사항(안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 종량제 격용대상은 가정쓰레기 및 다량배출자가 아닌 소규모사업장의 일반쓰레기
   이며,
- 종량제 적용대상 폐기물은 의무적으로 군수가 제작 판매하는 관급규격봉투에 담아 배출하여야 하며, 대형폐기물, 재활용가능폐기물은 본 조례의 별도 방법으로 배출 하여야 함.
-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계진유리, 스치로폴, 이사등)은 쌀마대, 시멘트 봉투등에 담아 배출하며 쓰레기봉투용량으로 환산하여 수수료를 격용함.
- 나. 쓰레기봉투의 종류·재질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용도에 따라 일반용과 공공용으로 구분하며 일반용봉투는 10 4, 20 4, 50 4, 100 4 공공용봉투는 50 4, 100 4 를 기준으로 제작하고 재질은 폴리에틸렌으로 함.
- 다. 쓰레기봉투 제작·공급 및 판매소지정에 관한 사항(안 제7조, 제8조, 제9조)
- ㅇ 쓰레기봉투는 군수가 제작하며 불법제작·유통의방지, 하도급을 금지함.
- 봉투판매소는 신청에 의하여 군수가 지정하며 봉투판매업자로 부적당할 경우 판매소
   지정을 아니할 수 있음.
- · 봉투판매소는 지역주민이 봉투를 손쉽게 구입할 수 있는 업소를 지정·운영함.

ㅇ 봉투판매에 따른 일정비율(9%)의 이익을 판매소에게 줌.

## 라. 봉투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 ㅇ 주민각자의 쓰레기배출량을 기준으로 군수가 결정하여 고시함.
- ㅇ 쓰레기처리비용의 자기부담율을 검진적으로 상향조정하여 현실화
- '95년 40%에서 시작하여 매년 10%씩 상향조정을 원칙으로 함.
- ㅇ 봉투가격 산정방법

쓰레기수집·운반·처리비용 × 수수료자립도 + 제작비 + 판매이익

### 마. 저소득층의 수수료경감에 관한 사항(안제15조)

라면대상은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와 기타 군수가 인정하는 자로 하며,
 감면방법은 매월 604를 기준으로 일반용봉투를 무료로 공급함.

명 창 군 일 반 폐 기 물의 배 출 방 법 및 수 수 료 등 의 부 과 ㆍ 징 수 에 관 한 조 례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 "가정쓰레기"라 함은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로서 일반주택 또는 공동주택에서 배출하는 일반폐기물중에서 연탄재, 재활용가능폐기물, 대 형폐기물을 제외한 일반폐기물을 말한다.
- 2. "사업장쓰레기"라 함은 인적·물적설비를 갖추고 영리 또는 비영리 행위를 하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일반폐기물중에서 연탄재, 재활용가능폐기물, 대형폐기물을 재외한 일반폐기물을 말한다. 다만,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 다량배출자가 배출하는 폐기물은 제외한다.
- 3. "대형폐기물"이라 함은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이하 "일반폐기물"이라 한다)중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별표 1에서 정한 품목 또는 군수가 정하는 품목을 말한다.
- 4. "재활용가능폐기물"이라 함은 일반폐기물증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에 담지 아니하고 군수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배출하여야 하는 폐기물로서 별표 2에서 정한 품목 또는 군수가 정하는 품목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①이 조례는 일반폐기물증 법 제14조 및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 다량배출자로 신고한 자가 배출하는 폐기물이 아닌 폐기물에 적용한다.
  - ②이 조례는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관리구역에 적용한다.
- 제4조(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등) ①가정쓰레기 또는 사업장쓰레기를 배출하고자 하는자는 군수가 제작한 규격봉투(이하 "쓰레기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이를 배출하여야 한다.
  - ②연탄재 또는 대형폐기물은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③재활용가능폐기물은 군수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④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깨진유리, 스치로폴 등과 이사·집수리·정원손질 등일시에 다랑으로 배출되는 폐기물은 군수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⑤군수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처리하기 위하여 각 종류별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기, 별표 1에서 정하는 대형폐기물 수수료의 납부방법·절차 및 별표 2에서 정하는 재활용가능폐기물의 품목별 배출요령 등으로 정한다.

제5조(일반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군수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등을 관할구역의 주민에게 공고하고 동 내용을 기록한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는 등 일반폐기물이 걱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에 대하여는 수거를 지연하거나 당해 폐기물을 배출한 자에 대하여 법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별표3으로 정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재활용가능폐기물은 배출요령에 적합하게 배출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전량 수거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쓰레기봉투의 종류·재질등) ①쓰레기봉투는 일반용봉투와 공공용봉투로 구분 하며, 일반용봉투에는 가정쓰레기와 사업장쓰레기를, 공공용봉투에는 자연정화활동, 주민단체 공동청소 및 공공행사등에서 발생된 쓰레기를 각각 담아야 한다.

②쓰레기 봉투의 재질은 폴리에틸렌으로 투명하게 제작하며, 일반용봉투의 색깔은 흰색, 공공용 봉투의 색깔은 엷은 청색으로 한다.

③쓰레기봉투의 크기·용량 및 두께는 별표 4와 같다.

제7조(쓰레기봉투의 제작등) ①쓰레기 봉투는 군수가 제작한다.

②군수는 쓰레기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전면에 평창군의 문장, 봉투용량, 용도, 주의사항, 평창군 명칭 및 연락처, 제작업체의 고유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민간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유통의 방지 및 하 도급 금지,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완료 후 민간제조업체로 부 터 인쇄원판을 회수·보관하는 등 쓰레기봉투 불법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군수는 쓰레기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공업진흥청장이 승인한 단체표준규격의

적합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

- ⑤제6조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의 제작사양은 별표 5와 같다.
- 제8조(쓰레기봉투의 공급 및 판매) ①일반용봉투는 군수가 지정하는 쓰레기봉투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에서 폐기물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봉투판매자에게 일정율의 판매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
  - ②공공용봉투는 군수가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환경미화원 등에게 주기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 ③군수는 골목길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하여 리·반단위로 골목길 청소의 날을 지정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읍·면장의 신청에 의하여 공공용봉투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만매소의 지정) ①쓰레기 봉투판매업(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로 부터 판매소 지정을 받아야 한다.
  -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소를 지정함에 있어 당해 장소에서 쓰레기봉투 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판매소 지정을 아니할 수 있다.
- 제10조(판매자의 준수사항) ①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소 지정을 받은 자는(이하 "판매자"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판매자는 쓰레기봉투 판매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판매가격을 판매소의 창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 2. 판매소에는 지역주민이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별표 6과 같은 지정표시판을 부 착하여야 한다.
  - 3. 쓰레기배출자가 일반용봉투의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환수 하여야 한다.
  - ② 판매자는 군수 이외의 자로 부터 제1항제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쓰레기규격봉투를 매입하거나 양수할 수 없다.
- 제11조(판매소 지정취소) 군수는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의 규 정에 의한 판매소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1. 정당한 사유없이 30일이상 계속하여 쓰레기봉투를 판매하지 아니한 때
- 2.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판매자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3.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소 지정을 받은 자가 영업장 소재지를 변경할 때제12조(일반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 1. 연단재와 재활용가능폐기물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 2.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 3. 제1호 및 제2호외의 폐기물의 수수료는 일반용봉투의 판매가격으로 한다.
    ②제1항제3호의 판매가격은 별표 7의 기준에 의하되 군수가 결정하여 고시한다.
    ③법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 처리업자에 의하여 수집·운반 또는 처리에 소요되는 수수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 제13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①군수는 다음 각호에 해당 하는 장소에는 관리사무소·출입구 주변의 상점 등을 대상으로 일반용 봉투판매소를 지정하고, 당해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쓰레기봉투를 구입하여 쓰레기를 배출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유원지(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 또는 자연발생적인 유 원지를 포함한다)
  - 2. 공원(도시계획법에 의한 공원 또는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을 포함한다)
  - 3. 기타 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군수가 정하는 장소 ②군수는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관리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관리주체 에게, 관리주체가 없을 경우 군수가 "등산로·유원지쓰레기통설치·관리규정"을 준 용하여 대형쓰레기통 설치, 안내판 설치 및 행락객 홍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4조(독립채산지역에 관한 적용) ①군수는 주민과 일반폐기물처리업자간에 직접 계약에 의하여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고 있는 독립채산지역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라 폐기물이 배출되도록 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5조(수수료의 감면) ①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일반용 봉투의 무료제공등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 1.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
  - 2. 제1호외의 자로서 군수가 정하는 자
  -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용봉투를 무료로 공급할 때에는 1인당 매월 60리터를 초과하여 공급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6조(권한위임) 군수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규칙이 정하는 바 에 따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수수료등 부과·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부과한 수수료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따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 ③(봉투만매를 위한 조치) 군수는 일반용봉투의 판매를 위하여 봉투판매소의 지정 및 표시판의 부착을 1994년 12월 10일까지 완료하고, 봉투판매소에 대한 봉투공급은 1994년 12월 30일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 ④(다른 조례의 개정) "평창군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증 제2조제1항2호, 제2조 . 제2항,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삭제한다.

[ 별표 1 ]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기준(제2조, 제4조 및 제12조 관련)

품 명	규 격	수수료(원)
냉 장 고	500 와 이상 300 와 이상 300 와 미만	8, 000 6, 000 4, 000
텔 레 비 견	42인치 이상 12인치 이상	5, 000 3, 000
세 탁 기	모 든 규 격	4, 000
에 어 콘	264대형 이상 66대형 이상 66대형 미만	8, 000 5, 000 3, 000
가스오븐렌지	높이 1m 이상 높이 1m 미만	4, 000 2, 000
탈 수 기	모 든 규 격	2, 000
공기청정기	높이 1m 이상	2, 000
장 농	120cm장 1쪽 90cm장 1쪽	15. 000 10. 000
소 파	대형 6인용 소형 4인용	8, 000 5, 000
책 상	양수, 대형 편수, 소형	5, 000 4, 000
식 탁	6인용 이상 6인용 미만	5, 000 4, 000
피 아 노	어프라이트 그 랜 드	10, 000 15, 000
보 일 러 통	대 형 형 형 성	8, 000 5, 000 . 3, 000
폐타이어	대형(size 20이상) 중형(size 16~19) 소형(size 15까지)	6, 000 4, 000 2, 000
기타 가전제품 및 사무용제품	대 형 중 형 소 형	5, 000 4, 000 2, 000
침 대	2인용이상 1 인 용	8, 000 5, 000

※ 상기외 대형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으로 수수료를 준용

[ 별표 2 ]

### 재활용가능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묘령

총 류	품 목	배 출 요 령
1. 종이류	<ul> <li>신문지</li> <li>책자, 노트, 종이쇼핑백, 달력, 포장지</li> <li>종이컵, 팩</li> <li>상자류(과자, 포장상자, 기타골판지상자 등)</li> </ul>	<ul> <li>물기에 젖지 않게 함</li> <li>반듯하계 펴서 차곡차곡 쌓아서 묶음</li> <li>비닐코팅된 광고지, 비닐류, 기타 오물이 섞이지 않아야 함</li> <li>비닐코팅표지, 공책의 스프링등은 제거함</li> <li>비닐포장지는 제외</li> <li>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한번 행군 후 압착하여 봉투에 넣거나 한데 묶음</li> <li>비닐코팅 부분 제거</li> <li>상자에 붙어 있는 테이프, 철핀을 제거후 압착하여 운반이 용이하도록 묶음</li> </ul>
2. 캔 류	<ul> <li>철캔, 알루미늄</li> <li>캔(음·식용류)</li> <li>이 기타캔(부탄가 스, 살충제용기)</li> </ul>	<ul> <li>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한번 행군후 가능하면 압착</li> <li>겉 또는 속에 플라스틱 뚜껑이 있는 것은 플라스틱 제거</li> <li>봉투(비닐봉투도 가능)에 넣어서 배출</li> <li>구멍을 뚫어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li> </ul>
3. 병 류	<ul> <li>음료수병,기타병</li> <li>농약병</li> </ul>	- 병뚜껑을 제거후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행구어 배출 - 담배공초등 이물질을 넣지 말것 (맥주, 소주병은 슈퍼에 팔수 있음) - 물로 행군후 음료수병 동과 섞이지 않도 록 별도 배출
4. 고철류	<ul> <li>고철(공기구, 철사, 못, 철판 등 쇠붙이)</li> <li>비철금속(양은 , 스텐류, 전선, 알미늄샷시류)</li> </ul>	<ul> <li>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에 넣 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li> <li>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에 넣 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li> </ul>
5. 플라스틱류	o PET병  o 합성수지용기류  o 일반가정용 생활용품류  ※프라스틱 재질 식별코드가 부여된 용기에한정	<ul> <li>무정을 제거한 후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행구어 배출</li> <li>가능한 압착하여 부피축소</li> <li>가능한 압착하여 부피축소</li> <li>※ 폐유 용기류는 제외</li> </ul>

### [ 별표 3 ]

과태료 부과기준(제5조 관련)

부 과 항 목	부	과 금 앤	(천원)
T 4 8 3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이후)
1. 폐기물을 종류·성상별로 분리·보관하			
지 아니한 자(법 제15조제2항)			
가. 일반폐기물배출시 쓰레기봉투를 사용	100	200	500
하지 아니하거나, 군수가 정한 배출방			
법에 위반하여 배출하거나지정된 장소			
및 용기에 배출하지 아니한 경우			
나. 쓰레기봉투를 묶지 아니하고 일반폐기	50	<u>.</u>	-
물을 담아 배출한 경우	(매회마다)	-	

- 비고 : 1. 위반행위가 2이상일때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 2. 위반행위의 횟수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건 최근 1년간의 한도에 서 산입한다.

[ 별표 4 ] 쓰레기봉투의 용량·크기 및 두께(제6조 관련)

구 분	봉투용량(4)	봉투규격 (가로×세로)	호칭두께
일 반 용	10	33 × 40cm	0.015 mm 0.020 mm 0.025 mm 0.030 mm
일 반 용	20	41 × 49cm	
공공용, 일반용	50	56 × 67cm	
공공용, 일반용	100	71 × 85cm	

- 비고 : 1. 실제 사용할 쓰레기봉투 제작시에는 봉투상단에 봉투용량에 포함되지 않는 여분을 두어 쓰레기를 담은 후 묶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2. 여분부분의 표시는 굵은선으로 하며, 여분의 길이는 다음식에 의해 산정 하되 소숫점이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



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



쓰레기봉투(50 2)

일 반 용

- 1. 재활용품은 분리배출하여 주십시요
- ※ 재활용품 종류 : 캔류, 고철류, 병류, 종이류, 알루미늄류 (5종류)
- 2. 쓰레기는 반드시 이 봉투에 담아 묶은후 내놓아야 수거합니다.
- 3. 이 봉투외에 다른 봉투등을 사용하 여 쓰레기를 버릴경우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평창군수

연 락 처

평창읍 30-2601 미탄면 30-2602

방림면 30-2603 대화면 30-2604

봉평면 30-2605 용평면 30-2603

진부면 30-2607 도암면 30-2608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



쓰레기봉투(50 ℓ)

공 공 용

- 1. 재활용품은 분리수거하여 주십시요
- 2. 이 봉투는 자연정화활동, 주민단체 공동청소 및 공공행사등에서 발생 된 쓰레기를 답는데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 3. 이 봉투는 군수가 지정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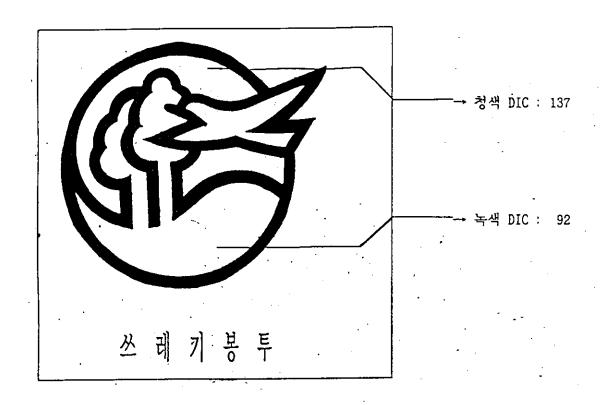
평창군수

연락처 : 평창군 환경보호과

(전화: 30 - 2336)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

### 쓰레기봉투만매소 표지판(제8조 관련)



- 비고 : 1. 글씨위치는 표시와 하단접점으로 부터 표시지름의 1/10만큼 뛰어서 중심 맞춤으로 표기한다.
  - 2. 글씨체는 견출고딕 평2체를 쓰도록 하며, 글씨의 크기는 표시지름의 1/10 올 초과할 수 없다.
  - 3. 표시의 색은 상기와 같이 청색(DIC: 137), 녹색(DIC: 9→)으로 2도 표현 하거나 청색(DIC: 579), 녹색(DIC: 643), 검정색, 흰색, 금색 또는 은색 의 단색으로 표현할 수 있다.

### 쓰레기봉투가격의 산정방법

쓰레기 수집·운반·처리비용 × 수수료자립도(%) + 제작비 + 판매이익

- 비고 : 1. 쓰레기 수집·운반·처리비용은 압틀카, 밀폐식 압축용기 등 현대적인 위생장비를 사용할 경우의 수거·운반비용과 침출수처리시설·가스포집 시설등이 설치된 위생매립지 및 위생소각장에서 반입·처리되는 경우의 최종처리비용을 합하여 산정한다.
  - 2. 수수료 자립도는 '95년 40%에서 시작하여 매년 10%씩 상향조정하여, 2001년 이후는 100%로 하며, 다만 기존 자립도·물가에 미치는 영향·주민부담정도를 고려하여 자기부담율의 현실화방침에 따라 걱정하게 조정할수 있다.
  - 3. 제작비는 쓰레기봉투용량별 제작단가를 말함
  - 4. 판매이익은 복권판매이익과 같이 9%를 적용, 쓰레기 수집·운반·처리비용 × 수수료자립도 × 0.09로 산정함

### 관계법령발췌서

#### 

#### 第2條(定義)

2. "一般廢棄物"이라 함은 特定廢棄物외의 廢棄物을 말한다.

#### 第12條(一般廢棄物管理區域)

全國을 一般廢棄物管理區域으로 한다. 다만, 總理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市長·郡 守·區顯長이 지정하는 地域을 제외한다.

#### 第13條(一般廢棄物의 처리등)

④市長·郡守·區聽長은 一般廢棄物을 收集·運搬·처리함에 있어서 당해 地方自治 團體의 條例가 정하는 바에 따라 手數料를 徵收할 수 있다.

#### 第14條(多量排出一般廢棄物의 처리등)

①事業活動에 수반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量이상의 一般廢棄物을 배출하는 事業者 (이하 "多量排出者"라 한다)는 市長·郡守·區聽長에게 당해 廢棄物의 종류·發生量 등을 總理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申告하여야 한다.

②多量排出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一般廢棄物을 收集‧運搬‧ 처리하거나 第17條의 規定에 의한 一般廢棄物處理業者에게 委託하여 一般廢棄物을 收集‧運搬‧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總理令이 정하는 多量排出者는 第13條第3항 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방법에 따라 一般廢棄物을 收集‧運搬‧처리할 수 있다.

#### 第17條(一般廢棄物處理業)

④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를 받은 者(이하 "一般廢棄物處理業者"라 한다)는 당해 市·道의 條例가 정하는 基準을 초과하여 料金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 第63條(過点料)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00만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 1. 第7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廢棄物을 버린 者
- 2. 第15條第2項의 規定을 위반한 者
- 3. 第16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措置命令을 위반한 者
- 4. 第17條第4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處理料金을 받은 者
- 5. 第20條第3項 또는 第28條第3項의 規定에 외한 申告를 하지 아니한 者

- 6. 第24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帳簿를 記錄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記錄한 者
- 7. 第41條의 規定에 의한 帳簿를 記錄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記錄한 者
- 8. 第4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한 者
-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별로 環境處長官,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聽長이 賦課·徵收한다.
-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愈料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處分이 告知된 날부터 30日이 내에 環境處長官,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聽長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④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愈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 제기한 때에는 環境處長官,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聽長은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愈料의 裁判을 한다.
- ⑤第3項의 規定에 의한 期間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國稅 또는 地方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 ▨ 폐기 물 관리 법 시 행 령

### 제6조(일반폐기물 다량배출자)

- 법 제14조제1항에서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이상의 일반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이하 "다량배출자"로 한다)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 1. 일반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이상 배출하는 자
- 2. 제1호외의 자로서 일반폐기물을 1회에 1톤이상 배출하거나 일련의 공사·작업등 연속되는 행위에 의하여 1주일에 1톤이상 배출하는 자
-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자로서 대기환경보전법·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 제법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일반폐기물을 1일 평균 100킬로그램이상 배출하는 자

# 평창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의 안 번 호 200 제출년월일 : 1994. 11.

제 출 자 : 명 창 군 수 이 1974 9

# 1.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물론 민간이 설치·관리하는 공중화장실에 대하여서도 지속적인 청결관리와 최선의 시설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효율적인 관리체제를 확립, 불결하고 시설정비·보수를 요하는 불량화장실에 대한 시설개선 명령과 명령 미이행자에 대해서는 행정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공중화장실은 지방자치단체장 판단이대 유료화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2. 주요골자

- 가.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화장실을 항상 청결·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최선 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책무를 부여함. (안 제3조)
- 나.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국가·법인·개인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을 포괄하여 공중화장 실의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함.(안 제4조)
- 다. 공중화장실에 필수적·임외적으로 두어야 할 시설의 설치 기준과 청결을 유지하기 위한 관리기준을 정함.(안 제5조, 제6조, 제10조)
- 라. 공중화장실이외에 다수인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화장실은 건축물 소유자· 판리지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 운영토록 함(안 제12조)
- 마. 군수가 공중화장실 설치 및 유지·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시설의 설치·관리자에게 시설개선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개선명령 이행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함. (안 제14조, 제15조)
- 바. 일정 시설기준·전담판리인 배치·편의용품 비치등의 요건을 갖춘 공중화장실에 대해 군수 승인아래 유료화가 가능하도록 함(안 제16조)
- 사. 개선명령 이행기간내 시설개선을 이행하지 않은자와 유료화장실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는자에 대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 평 창 군 공 중 화 장실 설 치 및 관리 조 례 안

### 제 1 장 총 칙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6조 및 공중화장실을 규정한 관계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편익과 복지중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중화장실"이라 함은 다수인이 통행하거나 모이는 장소와 시설에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과 관계법령에 의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법인 및 개인이 설치한 화장실을 말한다.
- 제3조(설치·관리자의책무)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법인 및 개인(이하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라 한다)은 공중화장실을 함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선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 설치한 공 중화장실에 한하여 격용한다.
  - 1.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설치한 · 화장실
  - 2. 여객자동차터미널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터미널
  - 3. 도·소매업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정기시장·대형점·대규모소매접 ·도매센타
  - 4. 자연공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공원
  - 5. 도시공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
  - 6. 도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변의 휴게소
  - 7. 문화재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
  - 8. 석유사업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주유소
  - 9. 관광진홍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관광단지·전무휴양·총합휴양시설
  - 10. 국민채육진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체육시설
  - 11. 기타 군수가 공중화장실로 지정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화장실

### 제 2 장 시설의 설치기준

- 제5조(설치기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화장실의 시설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법령에 공중화장실의 시설기준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1. 전체면적은 33제곱미터이상으로 하고, 대변기 8개(남자용 3개, 여자용 5개)이 상, 소변기 5개이상 또는 5인용이상을 설치할 것. 다만, 설치장소의 여건상 그 면적의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확보가능한 면적에 적합한 수의 대변기·소변기를 설치할 수 있다
  - 2. 대변기가 설치되어 있는 칸의 규모는 가로 85센티미터이상, 세로 115센티미터이상 (양변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130센티미터이상)일 것
  - 3. 수세식일 것. 다만, 상·하수도시설의 미비 또는 수질오염등의 이유로 인하여 수세식변소를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4. 동파방지를 위한 난방시설, 환풍시설, 세면기, 거울 및 에어타월기(또는 롤러타월기), 100룩스 이상의 조도를 유지할 수 있는 조명시설을 설치할 것. 다만, 전기시설이 미비하고 설치장소의 여건상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5. 변기칸에는 소지품을 두거나 옷을 걸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것
  - 6. 공중화장실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에 안내표지를 부착함 것
  - 7. 출입구는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되도록 따로 설치하고 이를 구분할 수 있도록 남자·여자 표지를 부착할 것
- 제6조(기타시설) 군수는 공중화장실에 제5조의 규정된 시설이외에 필요한 경우 신 채장애자용 변기를 설치하거나 주위환경과 조화되는 화단·휴식시설등의 시설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 제 3 장 시설의 유지·관리

- 제7조(위탁처리 등) ①군수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관리할 수 있는 자 에게 위탁할 수 있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유지· 판리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8조(관리인의 지정)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관리인을 지정하여 화장 -636-

- 의 청결유지와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 지도록 하여야 한다.
- 제9조(면의용품의 비치 제공)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이용주민의 편의 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곳은 예외로 할 수 있다.
  - 1. 화장지 (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 2. 비누 (또는 액체비누)
  - 3. 탈취제 및 소독약품
- 제10조(유지·관리기준)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다음 각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법령에 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기준이 별도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1. 1일 3회이상 청소할 것
  - 2. 화장실 내부 및 외부를 4월부터 9월까지는 주3회이상, 10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는 주1회이상 소독을 실시하여 악취의 발산과 파리·모기등 해로운 벌레의 발생. 번식을 방지할 것
  - 3. 수시로 시설을 검검하여 파손·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내·외부는 년1 회 이상 도색할 것
- 제11조(관리대장의 비치) 공중화장실을 설치 관리하는 자는 관리카드를 비치하여 시설의 정비 유지 관리상황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제12조(화장실의 개방 및 비용보조) ①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다수인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건물내부에 설 치된 공중화장실은 영업시간에 한하여 개방할 수 있다.
  - ②군수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화장실 이외에 다수인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장소와 시설의 화장실에 대하여 개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에는 개방화장실임을 알 수 있도록 걱정한 위치에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 ④ 군수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자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방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관리비의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 4 장 시설개선명령

- 제13조(시설점검) 군수는 공중화장실에 대해 제5조, 제8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지·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년2회(상·하반기) 정기점검과 필요시 행하는 수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14조(개선명령) 군수는 시설을 점검한 결과 공중화장실이 불결하거나 이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유지·관리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에게 시설의 개선·청결등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 제15조(개선명령의 이행기간등) ①군수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명령을 할때에는 청결·도색 기타 경미한 수선을 요하는 경우에는 1월의 범위내에서, 대수선을 요하는 경우에는 3월의 범위내에서 그 이행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 ②군수는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제1항의 기간내에 필요한 조치를 완료하지 못한자에 대하여는 설치·관리하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1월의 범 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③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였을 때에는 이행서를 10일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군수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서를 접수한 때에는 그 이행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제 5 장 유료화장실 승인

- 제16조(유료화장실 승인) ①군수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화장실중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유료화장실로 승인할 수 있다. 다만, 시설전반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포괄적으로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 이 시설내의 화장실은 승인대상에서 제외한다.
  - 1.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설치기준에 적합할 것
  - 2. 전담관리인을 둘 것
  - 3. 화장지, 비누, 수건(또는 에어타월기)등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할 것 ②유료화장실의 사용료는 군수가 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승인하여 야 한다.
- 제17조(준수사항)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의 승인을 받은 자는 다 \*옵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걱합하게 유지·관리할 것
- 2.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숭인금액을 초과 징수하지 않을 것
- 3. 화장실 입구에는 유료화장실임을 알리는 표시판과 사용료 표지를 부착할 것
- 4. 기타 화장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할 것

### 제 6 장 과태료 부과징수동

- 제18조(과태료의 부과징수등) ①군수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자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유료화장실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 ②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할때에는 위반사실과 과태료의 금액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항목별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 ④제1항의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나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의 징수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20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
- ②(기존 공중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제5조의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공중화장실은 이 조례 시행일로 부터 2년이내에 동조의 규정에 적합... 하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③ (개방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곳은 이 조례에 의한 개방화장실로 본다.
- ④(유료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군수로 부터 유료화장실의 승인을 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 【 별 표 】

### 과태료 부과기준 (제18조제3항 관련)

### 1. 일반기준

- 가. 위반사항이 2이상일때에는 그중 중한 처분에 의한다
- 나. 위반행위회수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이전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반복하는 경우에는 적용한다.

### 2. 개별기준

(단위 : 만원)

위 반 사 항	근거조항	부	과 금	액	
	C/128	1' 차	2 차	3 차	
1.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에 위반한 때	제5조		_		
가. 제5조제1,2,3,4호 위반		20	40	60	
나. 제5조제5,6,7호 위반		10	20	30	
2. 관리인 미지정 및 청결관리에 소홀히	제8조	10	20	30	
한 때					
3.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하지 아니한 때	제 9조	10	20	30	
4. 공중화장실 유지관리기준에 위반한 때	제 10조	20	30	50	
5. 유료화장실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제 17조	20	30	50	
	(제2호내				
	지제4호)	;			

# 관계법령발췌서

図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第16條(公衆便所의 設置및管理)

市長·郡守·區聰長은 多數人이 通行하거나 모이는 場所에 公衆이 이용할 수 있는 便所가 設置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總理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公衆便所를 設置하고 이를 衛生的으로 유지·管理하여야 한다.

# 평창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

의 안 번호 *198*  ○ 제출년월일 : 1994. 11.

○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 1. 제안이유

 자동차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주차시설의 공급은 이에 따르지 못하여 심각한 주차문제가 대두되고 있어, 1995년 부터는 주차장법 제21조의2 제1항에 의한 주 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주차장의 효율적인 설치,관리 및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2. 주요골자

- 세입재원 규정(제2조)
  - 가) 법 제9조 1,3항 및 14조 1항에 의한 주차요금.
  - 나) 법 제8조 1항에 의한 주차장관리 위탁자 부담금.
  - 다) 법 제19조 제5항에 의한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금.
  - 라) 법 제24조의 2에 의한 주차장관리 위반 과징금.
  - 마) 법 제30조 규정에 외하여 부과하는 과태료 및 도로법 제43조관련 추차목적의 도로검용료.
  - 바) 도로교통법 제115조의 2에 의한 과태료 징수액.
- 사) 강원도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수한 견인료.
- 아) 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1조의 2관련 과징금.
- 자) 국. 도비 보조금
- 차)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 카) 기타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한 통행료등 교통관련 수입 등
  - "위 수입금액에 대하여 평창군 주차장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 운영 하고져 함".

- 세출분야 규정(제3조)
- 가) 시장. 군수가 설치하는 노상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설치. 관리 및 운영비
- 나) 공영주차장관리 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운영비의 보조.
- 다) 노외주차장설치자에 대한 설치비용의 보조 및 융자.
- 라) 불법주. 정차 단속에 따른 비용.
- 특별회계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입한다(제4조)

# 평창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이하 "법" 이라한다)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한 평창군 주차장 특별회계(이하 "회계" 라한다)를 설치하고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 ○ 이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의 수입으로 한다.

- 1. 법 제9조 제1항, 제3항 및 제14조 제1항에 의한 주차요금.
- 2. 법 제8조 제1항관련 주차장관리수탁자 부담금.
- 3. 법 제19조 제5항관련 건축물부설주차장설치비용 납부금.
- 4. 법 제24조의2에 의한 주차장관리위반 과징금.
- 5. 법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는 과태료 및 도로법 제43조관련 주차목적의 도로 검용료.
- 6. 도로교통법 제11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액.
- 7. 강원도 견인자동차 운영에관한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견인료.
- 8.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의 2관련 과징금.
- 9. 국. 도비보조금.
- 10.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 11. 기타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한 통행료 등 교통관련 수입.
- ② 제1항 제10호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에는 주차장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년도 도시계획세 징수액의 10퍼센트를 반드시 표함시켜야 하며,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은 다음연도에 정산 계상하여야 한다.

제3조(세출) ①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경비에 충당한다.

1. 군수가 설치하는 노상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설치. 관리 및 운영비

- 2. 공영주차장관리 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운영비의 보조.
- 3. 노외주차장설치자에 대한 설치비용의 보조 및 융자.
- 4. 불법주. 정차 단속에 따른 비용.

제4조(잉여금처리) 이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입에 이입한다.

제5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6조(준용)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 는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계 법령발췌

### ○ 주차장법

- 제6조(주차장 설비기준등) ①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중 골프연습장 기타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의 부설주차장에 관한 사무는 교통부장관이,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에 관한 사무는 건설부장관이 각각 관장하며 주차장의 구조. 설비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부령으로 정한다.
- '제7조(노상주차장의 설치 폐지) ①노상주차장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이를 설치한다. 이 경우 도시계획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상주차장중 당해 지역의 교통여건을 참작하여 화물의 하역을 위한 하역주차구간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역주차구간에 화물자동차외의 자동차의 주차를 금지할 수 있다.
- 제8조(노상주차장의 관리) ①노상주차장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주 차장을 설치한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리하거나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으 로부터 그 관리를 위탁받은 자가 관리한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상주차장관리수탁자의 자격 및 기타 노상주차장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상주차장관리수탁자와 그 관리를 직접 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 제8조2(노상주차장에서의 주차행위 제한) 누구든지 노상주차장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하역주차구간에 화물자동차외의 자동차를 주차 하는 행위

- 2.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별 주차시간이 제한되어 있는 주차장 에서 그 제한시간을 초과하여 주차하는 행위
- 3. 주차장안의 지정된 주차구획외의 곳에 주차하는 행위
- 4. 주차장을 주차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 제9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징수등) ①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상주차장을 관리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노상주차장관리수탁자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자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제16호의 규정에 의한 응급자동차가 주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노상주차장관리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 및 제8조의2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외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주차요금의 4배이내의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받을 수 있다.
- 제12조(노외주차장의 설치) ①도시계획구역안에서의 노외주차장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이를 설치한다. 이 경우 주차장정비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때에 는 당해 주차장정비계획에 의한 노외주차장설치계획에 따라야 한다.
  -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외의 자가 도시계획구역안에서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노외주차장의 구조를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설치를 완료한 자는 7일이내에 그 사실을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당해 주차장이 그 설치계획서의 내용과일치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필증을 받기전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3조(노외주차장의 관리) ①노외주차장은 제1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관리한다.
  -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그 관리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위탁을 받아 노외주차장을 관리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관리를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8조제 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노상주차장관리수탁자"는 "노외주차장관리 를 위탁받은 자"로 본다
- 제14조(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징수등) ①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자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수 있다.
- 제15조(관리방법) ②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의 관리자는 당해 주 차장을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기 전에 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차요금과 주차장의 관리. 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관리규정으로 정하여 시장. 군수 또는 구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6조(중지등의 신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 이외의 노외주차장관리자가 주차 장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공용을 중지하거나 금지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 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17조(노외주차장관리자의 책임등) ②노외주차장관리자는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의 보관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대만히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보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 제18조(노외주차장관리자의 표시)①노외주차장관리자는 주차장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표시를 설치하여야 한다.
- 제19조(무설주차장의 설치) ①도시계획구역안에서 건축물·골프연습장 기타 주

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건축물의 내 부 또는 그 부지안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부설주차장은 당해 건축물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1항의 경우에 부설주차장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하인 때에는 동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설물의 부지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물의 부지인근의 범위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5)제1항의 경우에 시설물의 위치. 용도. 규모 및 부설주차장의 규모동이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주차장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시장. 군수에게 납부함으로써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같음할 수있다. 이 경우 납부된 비용은 그에 같음되는 노상주차장의 설치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6)시장. 군수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한 설치비용에 상응하는 범위안에서 시장. 군수가 설치한 노외주차장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여야 한

⑦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비용의 산정기준 및 설치비용에 상용하는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3(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에의 제공)①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 주차장을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장. 군수에게 신고하여 신고필증을 받아야 한다.

②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는 부설주차장과 당해 건축물의 종류 및 규모. 일반의 이용시간 기타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제12조제5항. 제13조 내지 제18조의 규정 제1항의 부설주차장에 관하여 이 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를 "시장. 군수"로 본다

- 제21조의2(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등) ①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차장의 효율 적인 설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군수가 설치하는 주차장특별회계는 다음 각호 의 재원으로 조성된다.
  - 1. 제9조제1항 및 제3항,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등의 징수급과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설치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
  - 2.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징수금
  - 3.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의 건입금
  - 4. 정부의 보조금
  - 5. 도시계획세 징수액증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율의 금액
  - 6. 도로교통법 제1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금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설치하는 주차장 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 1. 제2항제1호의 수입금증 당해 구청장이 설치. 관리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 주차장의 주차요금.
  - 2.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 3. 서울특별시 또는 직할시의 보조금
  - 5. 도로교통법 제1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금
  -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⑤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의 관리를 위탁한 경우 그 위탁을 받은 자에게 위탁수수료외에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의 관리. 운영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다만, 주차장특별회계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 회계로부터 보조할 수 있다.
  - ⑤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외주차장의 설치자에 대하여 주차장특별회계로 부터 노외주차장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용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 또는 용자의 대상. 방법 및 용자금의 상환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

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⑦시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한 지방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별회계에 이 법에 의한 주차장특별회계 를 종합하여 운용할 수 있다.

- 제24조(영업정지등)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 외주차장의 관리자 또는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의 관리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주차장의 일 반이용에의 제공을 금지하거나 300만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1. 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등이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게 된 때
- 2. 제15조제2항(제19조의제3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관리규정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주차요금을 받은 때
  - 3.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
- 제24조의2(과징금처분) ①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 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②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제25조(보고 및 검사) ①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노외주차장관리자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주차장 또는 그 업무와 관계있는 장소에서 주차장의 시설 또는 업무에 관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 제30조(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치한다.
    - 1.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자
    - 2. 제12조제5항(제19조의3제3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 반하여 주차장을 일반의 이용에 제공한 자
    - 3. 제12제2항(제19조의3제3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관리규정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주차요금을 받은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치한다.

- 1. 제16조(제19조의3제3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신 고를 하지 아니하고 노외주차장에 대한 일반의 이용을 중지 또는 금지한 자
  - 2. 제17조제2항(제19조의3제3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 반하여 주차장에 대한 일반의 이용을 거절한 자
  - 3. 제18조제1항(제19조의3제3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 반하여 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
  - 4.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한 자
  -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 징수한다.
  -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30일이내에 당해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 군수의 과태료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당해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치분을 한다.
  -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 ○ 주차장법 시행령

제15조(도시계획세징수액중 주차장특별회계의 재원이 될 금액) 법 제21조의2 제 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율은 도시계획세징수액의 10 펴센트로 한다.

### ○ 도로법

제35조(운행료의 징수) ①관리청은 도로의 시설인 교량.도반시설.지하도 또는삭 도의 이용자로부터 그 수익의 한도안에서 통행료를 징수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행료와 그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도인 경우에는 당해 도로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제40조(도로의 점용) ①도로의 구역안에서 공작물·물건 기타의 시설을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물건 기타의 시설의 종류와 도로의 점용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점용료의 징수) ①관리청은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를 검용하는자 로부터 검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제35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

### 〇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6. "긴급자동차"라 함은 소방자동차.구급자동차 그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로서 그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중인 자동차를 말한다 제28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모든 차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곳에서는 이법과 이법에 의한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의한 경우와 위험 방지를 위하여 일시 정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버스여객자동차가 그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소에서 승객을 태우거나내리기 위하여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교차로. 횡단보도. 차도와 보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또는 건널목. 다만, 차도와 보도에 걸쳐 설치된 주차장법에 의한 노상주차장에 주차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2. 교차로의 가장자리 또는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이내의 곳
  - 3.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이 내의 곳
  - 4.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를 표시하는 기둥이나 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 부터 10미터이내의 곳. 다만,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중에 한한다

- 5. 건널목의 가장자리로부터 10미터이내의 곳
  - 6.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 제30조(정차.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재한) 모든 차는 도로에서의 정차나 주차의 방법과 시간의 제한 또는 노상주차장에서의 정차나 주차의 금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2조(고용주의 의무) ①차의 운전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람이나 직접 이를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 또는 차의 사용자는 운전자에게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지키도록 항상 주의시키고 감독하여야 한다.
  - 제115조의2(과대료) ①자동차가 제28조 내지 제3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차 또는 정차를 한 때에는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주등에 대하여 5만원 이하의 과대료에 처한다. 다만, 그 자동차가 도난 당하였거나 고장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운전자가 당해 위반행위로 제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된 때(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범칙금의 통고처분을 받은때를 포함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등이 부과·징수한다.
    -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사람은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날로부터 30일이내에 시장등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사람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시장등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 제118조(통고처분) 경찰서장은 범칙자로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명시한 범칙금납부통고서로 범칙금을 납부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성명 또는 주소가 확실하지 아니한 사람
- 2. 달아날 염려가 있는 사람
- 3.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받기를 거부한 사람

### ○ 자동차운수사업법

- 제26조(명의의 이용금지) 자동차운송사업자는 여하한 방법을 불문하고 그 명의로서 자동차운송사업을 타인에게 경영하게 하지 못한다.
- 제31조(사업면허의등의 취소등)①자동차운송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때 에는 교통부장관은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면허 또는 등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소할 수 있다.
  - 1.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거한 명령이나 처분 또는 면허, 허가나 인가에 부한 조건에 위반한 때
  - 2. 허가 또는 인가를 얻은 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실시하지 아니한 때
  - 3. 공공복리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
  - 사업경영의 불확실 또는 자산상태의 현저한 불량 기타 사유로서 사업을 계
     속함에 적합하지 아니할 때
  - 5. 중대한 교통사고 또는 빈번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많은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때
  - 6.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기준과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제31조의2(과징금처분) 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운송사업자가 제31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동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500만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2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제3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은 교통부장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세징수법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제31조의 권한이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도지사가 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법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은 징수주체가 사용(보조 또는 응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되, 다음 각호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 1. 벽지노선운행에 따른 결손의 보전
- 2. 교통안전시설의 확충
- 3. 운송종사자의 교육시설의 설치,확충 및 운영
- 4. 자동차운송사업의 운영개선 기타 자동차운송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의 절차 · 대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의 운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제69(권한의 위임 및 위탁)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서 규정하는 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지사 또는 소관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 ○ 도시계획법

제16조(도시계획시설의 설치. 관리) ①도시계획구역안에서 지상. 공간 및 지하에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도시계획으로써만이 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조(적용대상지역) 이 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지역은 상추인구 10만이상의 도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으로 한다.

- 제11조(도시교통의 개선명령) ①교통부장관은 도시교통정비지역안에서 도시교통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도지사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 1. 2인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간의 버스노선의 신설 및 변경 운영
  - 2. 버스공동배차제의 실시
  - 3. 교통산업종사원의 근무환경의 개선
  - 4. 여객자동차터미널. 화물터미널. 정류소 및 대중교통환승시설의 설치. 운영
  - 5. 대중교통수단 환승요금제 실시
  - 6. 택시 사업구역의 확대 또는 축소
  - 7. 도시교통 시설의 확충
  - 8. 기타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시장등은 대중교통의 운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중교통수단을 운영하는 자에게 제1항 각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의 내용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권역과 관련되는 때에는 시장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교통권역을 관할하는 도지사.시장.군수 또는 해당 교통시설의 관리첫과 혐의하여야 한다.

# 1994年度第3回平昌郡一般會計與特別會計追加更正豫算案 審 査 報 告 書

1994年 12月 日 豫算決算特別委員會

# 1. 回附 豫算案

가. 1994년도제3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 2. 審查經過

가. 제안일자및 제출자 : 1994년 12월 15일 ,평창군수

나. 회 부 일 자 : 1994년 12월 15일

다. 상 정 일 자 : 제28회 평창군의회(정기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94.12.21)

상정, 의결

### 3. 提案說明의 要旨

( 제안설명자 : 기획실장 고창식 )

- 1994년도 제3회 평창군일반회계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사유는 지방교부세(특별교부세) 지원과, 기타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최종 추경임.
- 세입은 총 17억 8,200만원으로서 세외수입 3억7,600만원, 지방교부세 3억원, 보조금 11억 600만원임.
- 세출예산은 17억8,200만원으로 인건비 2억9,400만원이 감되었고, 물건비는 1,500만원 중액편성되었으며, 이전경비는2억2,100만원이 감액되고, 자본적지출은 22억 7,900만원, 예비비및 기타경비가 300만원임.
- 예산총규모는 568억3,6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515억9,700만원 특별회계가 52억 3.900만원임.

## 4. 專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旨

(전문위원 신교선)

- 총세입 17억 8,198만원은 대부분 지방세및 특별교부세, 국도 비보조금임.
- 지방세입중 세외수입 3억7,586만원은 관공업수입 8,745만원과 도세징수교부금 2억6,988만원이 대부분이며,
- 지방교부세 3억원은 특별교부세로 주민소규모사업으로 내시 증액 되었음.

- 보조금수입 11억 611만원중 국고보조금이 4억 3,084만원으로 이는 산업경제비 보조가 대부분으로 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과 농산물간이집하장 설치 보조금이며, 도비보조금 6억 7,527만원 은 산업경제비 보조3억 6,269만원과,지역개발비보조중 횡계진입 로 정비에 3억원임.
- 세출예산은 총 17억 8,198만원으로 그중 감액된 부분은 급여 지급잔액이고 중액된 부분은 국도비 추가내시에 따른 사업비임.

1944年 - 1945年 -

- 5. 質疑以 答辯要旨
- 6. 討論要旨
- 7. 審查結果
  - 원안에 대하여 『 이의 없음 』 올 의결
- 8. 少數意見의 要旨
- 9. 其他 必要한事項

가. 건의사항 : 없음

나. 기타복이사항 : 없음

첨부: 1994년도제3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1부.

# 1994년제3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의 안 번호 205

제출년월일 : '94. 12

제 출 자 : 평창군수

### 1. 제안이유

군민의 복지중진과 군정시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행정수요의 능동적인 지원은 물론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엄정한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199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 요구합니다.

### 2. 제안주요내용

199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요구액은 총 1,732백만원으로, 일반 회계 1,782백만원과 특별회계 △ 50백만원이며,

### (세 입)

일반회계는 세외수입 376백만원, 지방교부세 300백만원, 보조금 1,106 백만원으로 되어 있고,

특별회계는 사업외수입 6백만원, 보조금 Δ 56백만원입니다.

### (세출)

일반회계의 편성은 인건비  $\triangle$  294백만원, 물건비 15백만원, 이전경비  $\triangle$  220백만원, 자본지출 2,279백만원, 자치단체 내부거래  $\triangle$  1백만원, 예비비및 기타 3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인건비 Δ 1, 물건비 Δ 46백만원, 이전경비 1, 자본지출 Δ 10백만원, 융자및 출자 6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3. 관계법령

### 1) 지방재정법 제36조

지방자치단체는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때에는 추가 경정예산안을 편성할수 있다.

다만, 국가나 도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는 추가경정 예산성립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동일 회계년도내에 차기 추가 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 1) 지방자치법 제121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1994년도 (제3회추경)

#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 산 총 칙

세 입 세 출 예 신

평 창 군

예 산 총 최

1994 년도 [ 3회추경 ]

\* 제1초 : 1994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J	<b>刘</b>	제	별	세임세출 예산총액	일시차입 한도액
ļ 	*	•	1	56,836,623	1,705,098
	일 반	3	계	51,597,328	1,547,919
	복 별	희	<b>ৰ্ম</b>	5,239,295	157,178
1	상수도사약	] 특별회계		3,303,099	99,092
	주택사업 된	· 별회계		939,877	28,196
	의료보호7	] 금 복 별 회 계	1	500,984	15.029
	<b>시마음소</b> 특	금교운영관	리폭별회계	279,177	8,375
	영세민생활	l 안 경 기 금 복	변회계	77,843	2,335
	농공지구조	·성및 관리시	임특별회계	138,315	4,149

\* 계2조 :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뷀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 제3조 : 1994년도 치무부담행위는 별첨 '치무부담행위조서'와 같다.

" 계4조 : 1994년도 지방치 발행 한도액은

백만원으로 한다.

\* 제5조 : 1994년도 명시이월사업은 별취 '명시이월사업' 조서와 같다.

▫ 계6조 : 1994년도 계속비 사업은 별철 '계속비조서'와 같다.

• 계7조 : 일반회계 예비비는 581,048천원으로한다.

# 예 산 총 규 모

(단위 : 천원)

							The state of the s	
	희	계	별	7	분	에 산 액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중 Δ 감
			계			56,836,623	55, 104, 649	1,731,974
	일		반	<b>3</b> ]	계	51,597,328	49,815,343	1,781,985
	툑		별	<u>3</u> ]	계	5, 239, 295	5, 289, 306	-50,011
665	상	ź	<del></del>	로 사	입	3, 303, 099	3,303,099	0
	주		탣	사	업	939,877	939,877	0
	의	豆	<u> </u>	<u>Š</u>	기 금	500,984	557,043	-56,059
	새벽	마을	소득	금고 운영	를 관리	279, 177	279,177	0
	영	세 '	킨 생 =	<u>활</u> 안 정	기 금	77,843	71,795	6,048
	ㅎ~	공지-	 구 조성	및 관리	l 사업	138,315	138,315	0
	새፣	마 을	소득	특별 지원	나 사업	0	0	0
	공	<del>n</del>	임 야	관 리	사 업	0	0	0
	지	방	양 (	겨 금	사 업	0	0	0

# 세입세출예산 충괄표

(단위 : 원원)

Γ						. 🛊			ļ	반회	,	स्था अत्र							
		7		艺	여산역	구성 비율 (토)	전 년 도 (기정) 예 산 예	계 구성 비율 (5)	ኞ ል ፡}	여산 역	일 구성 비율 (%)	전 년 도 (가정) 예 산 예	기 구성 비율 (5)	중 소 감	이 산 이	구성 비율 (5)	전 년 도 (기정) 대 산 역	구성 비운 (5)	<b>₹△</b> ₽
ſ			才.		56,836,62	3 100%	55,104,649	100%	1,731,974	51,597,328	1001	49,815,343	100%		5,239,295	100%	5,289,306	100%	-50,011
Ì,	, [	지	¥	서	6,038,55	0 119	6,038,550	11%	0	6,038,550	125	6,038,550	12%	0	0	0%	0	04	0
	`[	4	외숙	일	8,031,89	0 149	7,650,206	j4 <b>%</b>	381,684	5,275,668	10%	4,899,800	10%	375,868	2,756,222	53%	2,750,406	524	5,816
		경	상적기	되수입	3,988,77	1 71	3,621,101	7%	361,673	2,850,540	6%	2,483,128	5%	367,412	1,138,234	22%	1,137,973	221	261
ļ	Į	임	시작시	되수입	4,043,11	5 71	4,029,105	7%	14,011	2,425,128	5%	2,416,672	5%	8,456	1,617,988	31%	1,612,433	30%	5,555
İ		지	4 1	부시	20,940,56	1 37%	20,640,561	371	300,000	20,940,561	419	20,640,561	415	300,000	0	0%	0	01	0
		지	바 양	여 금	4,506,20	7 89	4,506,207	84	0	4,506,207	9%	4,506,207	9%	0	0	0%	0	04	0
ę	ı	<u> </u>	줖	귱	16,769,41	5 30%	15,719,125	29%	1,050,290	14,536,342	28%	13,430,225	275	1,106,117	2,233,013	43%	2,288,900	431	-55,827
,		₹	고 보	조금	7,530,69	3 137	7,145,675	13%	385,018	6,390,717	12%	5,959,875	12%	430,842	1,139,976	224	1,185,800	225	-45,824
3		<u> </u>	비보	조 급	9,238,72	2 16%	8,573,450	16%	665,272	8,145,625	16%	7,470,350	15%	675,275	1,093,097	215	1,103,100	215	-10,003
1	Ĺ	지	경 치	환	550,000	) 15	550,000	14	. 0	300,000	15	300,000	15	0	250,000	5%	250,000	5 <b>£</b>	. 0
		7	¥	4	550,000	) 15	550,000	18	0	300,000	15	300,000	1%	0	250,000	5%	250,000	5 <b>£</b>	0
	1	1			,	) 04	0	0%	0	0	01	0	0%	0	0	0%	0	0%	0
L	1	<u> </u>	닿	귱	(		0	0%	0	0	0%	0	0%	0	0	04	0	· 04	0
			4		56,836,623	-}	55,104,649	100±	1,731,974	51,597,328	100%	49,815,343	100%	1,781,985	5,239,295	100%	5,289,306	100%	-50,011
14		શ	<u>đ</u>		9,201,335		9,495,969	17%	-294,634	9,190,925	18%	9,484,809	19%	-293,884	10,410	0%	11,160	04	-750
	L	활	<u> </u>	R	7,144,685	-	7,175,766	13%	-31,081	6,281,580	12%	6,266,852	13%	14,728	863,105	165	908,914	17%	-45,809
	L	d		병 	5,166,580		5,386,109	101	-219,529	4,322,215	85	4,542,574	91	-220,359	844,365	16%	843,535	164	830
	L	4		시 출 -	33,329,621		31,061,309	56%	2,268,318	30,629,217	59%	28,350,569	57%	2,278,648	2,700,410	521	2,710,740	51%	-10,330
	L	<del>}</del>	가 및		356,220	14	350,172	15	6,048	0	0%	0	· 0%	0	356,220	7%	350,172	75	6,048
	_	耳		1 1	773,851	15	773,851	1%	0	392,384	1%	392,384	15	0	381,467	7%	381,467	75	0
3	L	4	부 7	4 4	45,269		45,501	0%	-232	45,269	0%	45,501	0%	-232	0	01	0	04	0
		기		타	198,328	<del>- </del>	195,244	0%	3,084	154,690	0%	151,606	0%	3,084	43,638	15	43,638	iş	0
	1	ఠ	비	비	620,728	15	620,728	15	0	581,048	15	581,048	15	0	39,680	15	39,680	15	0

- 666 -

# 

# 1. 回附豫算

가. 1995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2. 審查經過

가. 제안일자및 제출자

○ 당초 : 1994년 11월 21일 평창군수

○ 수정 : 1994년 12월 15일 평창군수

나. 회 부 일 자

○ 당초 : 1994년 11월 25일

○ 수정 : 1994년 12월 15일

다. 상 정 일 자 : 제28회 평창군의회(정기회)

-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년 12월 7일상정
-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년 12월 21일의결

## 3. 提案說明의 要旨

( 제안설명자 : 기획실장 고창식 )

### ○ 제안이유

-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시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행정수요 의 능동적인 지원은 물론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엄정한 관리를 도모하기 위함임

### ○ 제안주요내용은

. 1995년도 일반회계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결요구액은 총617억5,300만원으로 일반회계 559억1,200 만원과 특별회계 58억4,000만원임

### - 세입예산중

- . 일반회계는 지방세 64억6,200만원, 세외수입 40억1,300만원, 지방교부세 242억1,100만원, 양여금 47억1,700만원, 보조금 137억9,600만원, 지정재원 27억1,200만원으로 되어있고
- . 특별회계는 사업수입 10억7,500만원, 사업외수입30억400 만원 보조금 17억6,100만원임.

### - 세출예산중

- . 일반회계 편성은 인건비 107억6,600만원, 물건비 173억1,800 이전경비 46억4,600만원, 자본지출 319억5,500만원,보전재원 1억2,700만원,자치단체 내부거래 5억3,500만원, 예비비및기타 5억6,400만원이며,
- . 특별회계는 인건비 1,200만원,물건비 6억4,000만원, 이전경비 7억3,100만원, 자본지출 37억1.800만원, 융자및출자 4억5,000만원 보전제원 2억9,000만원으로 편성하였음.

# 4. 專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旨

(전문위원 신교선)

가. 1995년도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 559억1,200만원,특별회계 58억4,000만원을 포함 총 617억5,300만원으로 전년대비 8%중가 되었음.

#### 나, 일반회계

#### - 세입부분

- . 세입은 총 559억 1,200만원으로 전년대비 43억1,500만원 (8%)이 증가되었으며,
- . 송정택지매각수입 10억원에 대한 세입은 불투명하다고 판단됨.

#### - 세출부분

- 군비보조사업중 군비미부담사업으로 수간주사 3억원, '95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 2억원등 5억원이 미부담되어 추경시 과중한 재원부담으로 남게됨.
- . 위험시설물관련 예산은 총소요 예산액 68억6,800만원 중 금희 30억 1,000만원만 계상하고, 향후 38억 5,800만원이 추가소요될것으로 전망됨.

#### 나. 특별회계

특별회계 총 6개사업에서 전년대비 28억100만원인 92%가 증가되었으며, 주요인은 봉평,진부상수도시설공사비임.

- 6. 討論要旨

# 7. 修正案要旨

- 일반회계 세출중
  - . 의 회 비 2,800만원
  - . 기획관리비 1억3,886만원
  - . 공 보 비 1,200만원
  - . 내무행정비 1억4,120만원
  - . 재무행정비 2,200만원
  - . 농수산비 1억2,425만원
  - . 임 업 비 7,000만원
  - . 건설사업비 8,150만원등 총 9억7,431만원삭감
- 일반회계 세출
  - . 지역개발비 3억원,
  - . 예 비 비 3억1,781만원 총 6억 1,781만원을 중액
- 특별회계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 세임.세출에서 1억원을 각각감액.

- 8. 審査結果
  - 수정안 가결
- 9. 少數意見의要旨

[없음]

첨부 : 1995년도 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에대한수정안 1부.

## 1995年度平昌郡一般會計具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에對한修正案

## 1. 豫算總則

○ 제 1 조

(단위 : 천원)

			······································
회 계 명	예 산총 액	일시차입한도액	비고
일반회계및특별회 계	61,653,419	1,849,602	
		:	

○ 제2조 ~ 6조 : 변동사항 없음.

○ 제7조 : 예비비는 822,631천원으로 한다.

# 2. 예산안수정내역

#### 가. 일반회계 세출

(단위 : 천원)

예	산 과	<b>4</b>	지방자치	수	정	수 정	수정사유
관	항	세항	단체계출	감 액	중액	예산액	및 내 역
	계			617,810	617,810		
1000 의회비			457,758	28,000		429,758	
	.100 리회운영기	4)	457,758	28,000		429,758	
	1110 지방의3	리 <del>운</del> 영	457,758	28,000		429,758	:
		1112 의정활 동	131,600	28,000		103,600	.예산절감 의원해외연수비
2000 일반행 <sup>2</sup>	है थे।		17,831,418	314,064	The state of the s	17,518,154	
	100 기획관리	1	10,302,175	138,864		10,164,111	
	2120 기 <b>의</b> 판	4	814,372	138,864		676,308	
		2123 역산 <i>운</i> 병	532,409	215,364		317,045	·예산절감 심충광천수수료 : 18,000
							심충광천수개발 : 120,000
							경영수익사업추진 부대비:864
				·			

예	산 과	목	지방자치	수	정	수 정	수정사유
관	정-	세항	단체제출	감 엑	중 예	예산액	및 내 역
	2200 공보비		178,540	12,000		166,540	
	2210 공보관	리	178,540	12,000		166,540	
		2211 공보판 리	172,054	12,000		160,054	.예산절감 주민계도용신문구 독료(중앙지)
2300 내무학	행정비	·	5,409,339	141,200		5,268,139	
	2310 내무행?	청	4,557,174	141,200		4,415,974	
		2311 서무관 리	1,152,757	19,200		1,133,557	.예산절감 .행정통신센타콩신 롱신장비구입
		2314 국민운 동지원	1,751,688	100,000		1,651,688	.예산절감 새마을소득사업운 영관리특별회계전 출금:100,000
		2316 민원실 운영	131,217	22,000		109,217	·예산절감 민원실민원대설지
2400 계무	<b>9</b> 정비		1,941,364	22,000		1,919,364	
	2420 의계및	<b>4산관리</b>	1,724,037	22,000	:	1,702,037	
		2421 회계관 리	166,576	22,000		144,576	.예산절감 소형화물차구입

예	산 과	목	지방자치	수	정	수 정	수정사유
봔	항	세항	단체제출	감 액	중액	예산액	및 내 역
4000 산업7	경제비		16,788,083	124,246		16,593,837	
4100 . 농수소			11,512,436	124,246		11,388,191	
	4130 <b>농촌</b> 진	<b>8</b> -	1,091,546	124,246		967,301	
		4131 서무판 리	738,487	124,246		614,242	.예산절감 유리온실설치및 감리 부대비
4200						·	
임역	걸비		5,132,713	70,000		5,062,713	
	4220 조림사	<b>항관리</b>	2,875,593	70,000		2,805,953	
		4221 조림판 리	2,875,953	70,000		2,805,953	.예산절감 임도호우피해복구
5000 지역7	세 AF pj		11,857,095	81,500	300,000	12,075,595	
5200 건설 <sup>)</sup>	}얼비	,	10,003,573	81,500		9,832,073	
	5210 건설판:	리	8,745,047	81,500		8,573,547	
		5213 도로유 지판리	1,724,179	81,500		1,642,679	. 예산절감 군도노후교량보수 :20,000 .군도보수및정비 :10,000 .농어촌도로노후교 량보수:50,000

(단위 : 천원)

<b>ା</b>	산 과	목	지방자치	수	정	수 정	수정사유
펀	항	세항	단체계출	감 액	중액	예산역	및 내 역
							·농어촌도로노후교 랑가설부대비 :1,500
	5220 지역개	₽.	1,258,526		300,000	1,558,526	
		5222 지역개 발	773,000		300,000	1,073,000	.중액 붕평소도옵정비 :300,000
8400 예비비			564,821		317,810	882,631	
	8410 예비비		564,821	7	317,810	882,631	
		8411 예비비	564,821		317,810	882,631	. 중액
		-			<i>j</i>	in the second	<u>.</u>
					use some e		
					:		
				·			
					· · · · · · · · · · · · · · · · · · ·		
							:

나, 목별회계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희계)

(세임)

(단위 : 천원)

예	산 과	4	지방자치	수	정	수 정	수정사유
봔	항	세항	단체제출	감 엑	중색	예산액	및 내 역 
200 사업	<b>네</b> 비외수'	યુ	352,638	100,000		252,638	
	2400 건입금	+	200,000	160,000		100,000	
		240-1 전임금	200,000	100,000		100,000	. 일반회계건출금삭 감

(세출)

(단위 : 천원)

예	산 과	폭	지방자치	¢	정	수 정	수정사유 및
관	항	세항	단체제출	감 쉑	중 엑	예산액	내 역
200 사업	배		352, <i>7</i> 80	100,000		252,780	
	210 전입금		352 <b>,7</b> 80	100,000		252,780	
		211 새마을 소득용 자사업	352,780	100,000		252,780	.삭감

# 1995년 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 안 번 호 /95 제출년월일 : '94. 11.

제 출 자:평창군수

#### 1. 제안이유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시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행정수요의 능동적인 지원은 물론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엄정한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1995년도 일반회계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의결 요구합니다.

#### 2. 제안주요내용

1995년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결요구액은 총 55,088 백만원으로 일반회계 49,248백만원과 특별회계 5,840백만원이며

#### (세 입)

일반회계는 지방세 6,063백만원, 세외수입 3,672백만원, 지방교부세 19,578백만원, 양여금 4,057백만원, 보조금 14,166백만원, 지정재원 1,712 백만원으로 되어있고

특별희계는 사업수입 1,075백만원, 사업외수입 3,004백만원, 보조금 1,761 백만원입니다.

#### (세 출)

일반회계의 편성은 인건비 10,009백만원, 물건비 6,604백만원, 이전경비 4,559백만원, 자본지출 26,925백만원, 보전재원 127백만원, 자치단체 내부거래 535백만원, 예비비및 기타 489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인건비 12백만원, 물건비 640백만원, 이전경비 731백만원, 자본지출 3,718백만원, 용자 및 출자 450백만원, 보전재원 290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3. 관계법령

#### 1) 지방재정법 제30조

제30조(예산의면성)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료에 의하여 엄정하게 그 재원을 포착하고 경제의 현실에 적용하도록 그 수입을 산정하여 이를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 재정계획을 기초로 하여야 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매 회계년도의 예산편성기본지침은 내무부장관이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작성한 다음 전년도 8월 3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하여야 한다.

#### 2)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118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① 지방자치단채의 장은 회계년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도는 회계년도시 50일전까지 시·군 및 자치구는 회계년도 개시 40일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예산안을 시·도의회에서는 회계년도 개시 15일전까지, 시·군및 자치구 의회에서는 회계년도개시 10일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없이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 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장은 제1항의 예산안을 제출한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할 때에는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

1995년도 (당초예산)

#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 산 총 칙 세입세출예산

평 창 군

1995 년도 [본에산 ]

-681-

※ ※ 1995년도 세일·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임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븨	7	I	4	세일세를 예산층의	일시차일 한도액
*			1	55,088,922	1,652,667
ଧ	반	희	<b>A</b> .	49,248,438	1,477,453
4	Al.	Þ	<b>A</b>	5,840,484	175,214
상수도	사업목별	회계		4,170,153	125,104
주택시	임폭별호	<b>1</b>		724,873	21,746
의 표 보	호기급등	·별회계		464,810	13,944
세마을	소득금고	L 운영관리·	복 별 회 계	353,528	10,605
영세민	생활안경	기금복별	의 <b>계</b>	91.620	2,748
농공지	구조성및	판리사업		35,500	1,065

• 계2조 : 세일·세출예산의 병세는 별정 '세일·세출예산'과 같다.

■ 제3조 : 1995년도 제무부담행위는 별침 '제무부담행위조서'의 같다.

• 계4조 : 1995년도 지방제 발행 한도액은 900 백만원으로 한다.

\* 제5조 : 1995년도 명시아월사업은 별점 '명시이월사업' 조서와 갈다.

• 계6조 : 1995년도 계속비 사업은 별점 '계속비조서'와 같다.

\* 제7조 : 일반회계 에비비는 488,672천원으로한다.

# 예 산 총 규 모

(단위 : 천원)

	회	계	崔	구	분	예	산	쇔	전 (기 예	년 도 정) 산 액	중		사 감
			계			:		55, 088, 922		47,431,0	065		7,657,857
	일		析	<b>3</b> ]	계			49, 248, 438		44, 392, 1	107	·	4,856,331
	<b>쁙</b>		별	킈	계			5, 840, 484		3,038,9	958		2,801,526
٦	상	4	<u>.</u>	도 사	업			4, 170, 153		1,323,6	576		2,846,477
689-	추		뛤	사	업			724, 873		871,8	883		-147,010
	의	显	보	支フ	] 금		·	464,810		551,8	310		-87,000
	새미	ትፎ :	소 목	금고 운영	관리			353, 528		201,0	068		152,460
	영	세 민	생	활 안 정	기 금			91,620	-	43,6	534		47,986
	* 7	지구	조선	및 판리	사업			35,500		46,8	387	·	-11,387
	새마	<b>+</b>	소독	특별 지원	사업			0			0		0
	광 -	<del>በ</del>	일야	관리 /	사 업			0			0		. 0
	지	방	양	여 곰 시	업			0			0		0

-682-

Г	_				T	¥		7			Į.	반회	7(			4	별의	1	1011 1007
	7		•	ŧ	예산예	구성 비율 (5)	전 년 도 (기정) 에 산 예	구성 비율 (S)	录 Δ ∛	에 산 액	구성 비율 (5)	전 년 도 (기정) 예 산 예	구성 비율 (로)	<b>₹</b> Δ ₹	이 산 역	구성 비용 (%)	원 년 도 (기정) 이 산 역	구성 비출 (도)	<b>乔</b> Δ 建
П		7			55,088,922	100%	47,431,065	1005	1,657,857	49,248,438	1005	44,392,107	100%	4,856,331	5,840,484	1005	3,038,958	1001	2,801,526
	지	1	¥	셔	6,062,771	115	5,747,008	125	315,763	6,062,771	125	5,747,008	13%	315,763	0	04	0	01	0
*	서	외	ŕ	입	7,750,839	145	6,268,040	135	1,482,799	3,671,955	75	4,185,082	91	-513,127	4,078,884	70%	2,082,958	694	1,995,926
lİ	7	상격	4 2	수입	4,654,442	85	4,045,767	95	608,675	3,579,255	75	3,016,705	78	562,550	1,075,187	184	1,029,062	345	46,125
	임	시격	서오	수입	3,096,391	61	2,222,213	5%	874,124	92,700	01	1,168,377	3%	-1,075,677	3,003,697	511	1,053,896	351	1,949,801
	지	*	2	부서	19,578,000	365	19,578,000	415	0	19,578,000	405	19,578,000	441	0	0	0%	0	0%	0
	지	*	양 0	귱	4,057,470	75	2,989,241	68	1,068,229	4,057,470	85	2,989,241	75	1,068,229	0	01	0	0%	0
01	보		<del>I</del>	급	15,927,682	295	11,768,776	25%	4,158,906	14,166,082	295	11,162,776	25%	3,003,306	1,761,600	301	606,000	201	1,155,600
¥	₹	1	¥	조 급	10,337,252	195	6,167,241	135	4,170,011	8,974,260	185	5,731,441	135	3,242,819	1,362,992	23%	435,800	145	921,192
	Σ	비	¥	조 금	5,590,430	101	5,601,535	125	-11,105	5,191,822	115	5,431,335	124	-239,513	398,608	7%	170,200	65	228,408
	지	1	1	Ð	1,712,160	3%	1,080,000	25	632,160	1,712,160	35	730,000	21	982,160	0	0%	350,000	125	-350,000
	지		방	4	0	05	350,000	15	-350,000	0	0	0	0%	0	0	05	350,000	125	-350,000
	1	산	ng z	수입	1,712,160	35	130,000	0%	1,582,160	1,712,160	35	130,000	0%	1,582,160	0	0%	0	016	0
	Å		담	구	0	0%	600,000	15	-600,000	0	05	600,000	15	-600,000	0	0%	0	0%	0
П		7	1		55,088,922	100%	47,431,065	100%	7,657,857	49,248,438	100%	44,392,107	100%	4,856,331	5,840,484	100%	3,038,958	1001	2,801,526
	인		건	刷	10,021,860	18%	9,792,930	215	228,930	10,009,620	20%	9,782,170	225	221,450	12,240	0%	10,760	05	1,480
1	를		건	Ħ	7,243,630	135	6,729,764	14%	513,866	6,603,852	135	6,037,696	145	566,156	639,778	115	692,068	231	-52,290
	0	견	! 7	#	5,289,346	10%	5,255,454	115	33,892	4,558,846	94	4,479,913	104	78,933	730,500	13£	775,541	264	-45,041
	자	본	. 7	ŧ	30,643,467	56%	23,726,093	50%	6,917,374	26,925,196	55%	22,781,443	51%	4,143,753	3,718,271	64%	944,650	315	2,713,621
	-	4	및	<b>구</b> 자	449,724	15	244,502	15	205,222	0	05	0	04	0	449,724	85	244,502	8%	205,222
	보	견	1	원	416,872	15	754,431	25	-337,559	127,051	0%	392,384	15	-265,333	289,821	5%	362,047	121	-72,236
출	4	Ť	٦ -	<b>a</b>	535,201	15	475,501	15	59,700	535,201	15	475,501	15	59,700	0	0%	0	01	0
	7			티	150	0%	9,390	0%	-9,240	0	0%	0	0%	0	150	01	9,390	0%	-9,240
	4		비	비	488,672	15	443,000	15	45,672	488,672	15	443,000	15	45,672	0	01	U	01	0

명시이월조서

and the control of th

# 명 시 이 월 조 서

## 【일반회계】

(단위:천원)

		과			•		목			23	۸)		nì	۵.	6)				۵۱	.1		
7	8	관	훵	세	훵	세	세	항	욕	사	엁		<b>명</b>	이	TEL	액	이		월	사	<del>fl</del>	
											계				1,585	, 646						
일 <b>해</b> 전	્રી ફોર્મો	내 무 행 정	내 무 행 정	통 관	신 리	害	신관	리	201-02	공중정보	롱신망희선	<u>1</u> 사용	}.E.		10	, 908	내무부사약	발	주지연	(주민동	복행정전	산화)
1 -0 -0	0 -1	3 8	3 8	12	4				404	공증정보	통신망(DN	S)구니	내공사비		2	,712	<u> </u>		•			
									407	공중정보	통신망 MOH	DEN설	치		19	, 470						
		재 무 행정비	회계및 개 산	재 관	산 리	영	선관	리	404	도암면 청	사신축				360	,000	기본설계5 계약및 발			장기간	소요로	연내
		30 30 21	관 리	1.	4				405	도암면 칭	사신축				3	, 150	714 % 6	' •	2/1			
3			보 건 위생비	보 관	건 리	보 <sup>2</sup> 지-	건소· 원	운영	407	보건지소	장비 확충	<b>.</b>			10	,000	공기부족	(3회	추정)			
사 복 -	회	보 건 위생비	환 경 관 리	환 지	경도	환:	경지.	<u></u> Έ	404	장평농촌 9	오수처리장	}			297	, 500	부지선정당 및 발주 년	Ų ↓ ↓가	시설계	지연으	로 연내	계약
		청 소 사업비	쓰레기 처 리	청 행 판	소 정 리	쓰i 시·		처리	404	소규모소	<b>가로설치</b>				195	,000						
지개발	역 <u>}</u> 비	도시 행정비	도시계 획관리	도시	년계 반리	도/ 리	시계	희관	403	명창달동니	<b>ᆌ정비사업</b>	]			2	, 000	용지보상기	사	업발주			
:		건 설 사업비	건 설 관 리	도 건	로 설	지	방	포	404	황계교가석	설공사				67	, 387	실시설계경	5				
			지 역 개 발	지 개	역 발	운 포	팔사	입 영	404	장평2리 노	⊏인정 건 <sup>3</sup>	립			40	,000	공기부족(	2회국	<b>수경</b> )			
			小阳星	/n	별	. <b>T</b>	•	đ		고질리 마	울진입로	포장		-	. 6	, 000	공기부족(	3회국	추경)			
										조동리 마	율진임로	포장			6	,000	•					
			'							조둔리 소	교량설치				10	,000	*					

**-** 685 **-**

		¥	}					목			tl 01 12				a) 01 ) A
7	ş	관	ŧ	황	세	훵	세	세	8)	목	사 업 명	ľ	] <u>8</u>	액	이 월 사 유
											<b>뇌운리 흄관매설</b>			3,000	•
											유동리 간이승강장			4,000	•
											종부3리 농로포장			6,000	•
							!				평안1리 간이상수도		3	35,000	•
											계존3리 소교량		3	35,000	•
											대화시가지 뒷골목포장		4	10,000	•
											창동1리 마을안길 포장		1	7,500	•
											덕거1리 마을안길 포장		1	7,500	•
											유포3리 마을안길 포장		1	5,000	•
											속사2리 세월교		3	000,000	•
		!									기문리 농로포장		1	5,000	•
										:	상진부2리 농로포장		1	5,000	•
											탑동리 농로포장		1	0,000	•
									:		유천1리 도수로		3	5,000	
		교 통 관리비	행	통 정	교 기	봉 획	도/ ·	시교·	통 8	407	오지공영버스구입		3	6,000	
문화 체육	및	체육비	체지	육 홍 리	체 진	육	체 <del>설</del>	육시설	널	401	대화체육관건립	"	ı	5,800	공기부족(3회추정)
			진 관	리	ኂ	5	<b>*</b>	٦	5	402	대화체육관건립	,	2	5, 280	•
		·	-					-		404	대화체육관건립		19	0, 439	기본설계및실시설계후 발주
<u> </u>					·· ·· · · · · · · · · · · · · · · · ·						노성산 체력단련장 조성		1	0,000	절대공기주쪽(3회추경)

1 686 -

# 명시이월조서

### 【 특별회계:상수도 】

(단위:천원)

		과					<del></del>	•		사 업	명	61	이 월 액		이	월 시	사	<del>**</del>	
	장	관	훵	세	항	세	세	항	목	77 9	G		#L	٠,		<b>E</b> .	- 1	<b>"</b>	
ſ										계			1,650	,000					
	상수도	사업비	사업비	상수 사	본		-		404	붕평상수도확장			150	,000	공기부족(2회주	노정):⊲	실시설계	장기간 소	<b>. .</b>
	상수도 사 업 특 별 최 계			^r	Æ					진부상수도확장			1,500	,000					
١	의 계																		
										·									
															•				
607																			
ĺ																			
	•																		
	į																		
														•	·				
																			٠.
L						L.													

- 08/

# 1995년 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수정예산(안)

의 안 번 호 19**r**  제출년월일 : '94. 12

제 출 자:평창군수

#### 1. 제안이유

군민의 복지중진과 군정시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행정수요의 능동적인 지원은 물론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엄정한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1995년도 일반회계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의결 요구하였으나, 그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합니다.

#### 2. 제안주요내용

1995년도 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수정예산(안) 의결요구액은 총 6,665백만원으로 일반회계 6,665백만원이며,

#### (세 입)

일반회계는 지방세 400백만원, 세외수입 341백만원, 지방교부세 4,633백만원, 지방양여금 661백만원, 보조금 △ 370백만원, 지정재원 1,000백만원입니다.

#### (세출)

일반회계의 편성은 인건비 757백만원, 물건비 714백만원, 이전경비 87백만원, 자본지출 5,031백만원, 예비비 및 기타 76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3. 관계법령

#### 1) 지방재정법

- 제 30조 (예산의편성)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모든자료에 의하여 엄정하게 그 재원을 포착하고 경제의 현실에 적용하도록 그 수입을 산정하여 이를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재정계획을 기초로 하여야 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매 회계년도의 예산편성기본지침은 내무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작성한 다음 전년도 8월 31일까지 지방자치 단체에 시달하여야 한다.

#### 2) 지방재정법 시행령

- 제 30조의 2 (예산안의 첨부서류)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1. 법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편성기본지침
  - 2. 세입, 세출예산사항별설명서
  - 3. 채무부담행위설명서
  - 4. 명시이윌비설명서
  - 5. 전전년도 결사의 총계표 및 순계표와 전년도 세입, 세출결산 추정액의 총계표 및 순계표
  - 6. 지방채증권 및 차입금에 판한 전전년도말에 있어서의 발행 및 상환실적 , 전년도와 당해연도말의 현재액 추정 및 연차별 상환계획에 판한 조서
  - 7. 공유재산의 전전년도말에 있어서의 현재액과 전년도말과 당해년도말에 있어서의 현재액의 추정액에 관한 조서

- 8. 채무부담행위로서 다음 연도 이후에 걸치는 것에 있어서는 전년도말까지의 지충액 또는 지출추정액과 당해연도 이후의 지출예정액에 관한조서
- 9. 계속비에 판한 전년도까지의 지출액 또는 지출추정액, 당해연도 이후의 지출 예정액과 사업전체의 계획 및 그 진행상황에 판한 조서
- 10. 직종별 정원표 및 전년도 정원과의 대비표
- 11. 지방재정계획서
- 12. 기타 예산의 내용을 명백히 함에 필요한 서류

#### 3) 지방자치법

- 제 118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① 지방자치단체의장은 회계년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 도는 회계년도시 50일전까지 시, 군및 자치구는 회계년도 개시 40일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예산안을 시.도의회에서는 회계년도 개시 15일전까지 , 시,군및 자치구 의회에서는 회계년도개시 10일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없이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장은 제1항의 예산안을 제출한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할때에는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

1995년도 (수정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산총칙

세 입 세 출 예 산

평 창 군

#### 1995 년도 [ [회추경 ]

\* 제1조 : 1995년도 세입·세출 예산층에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에은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회		<b>A</b>	별	세 입 세 출 예 산 총 약	일시차임 한도역
*			<b>7</b> 1	61,753,419	1,852,602
 일	舒	희	계	55,912,935	1,677,388
导	Ä	희	<b>ત્રા</b>	5,840,484	175,214
 상수	도사업투병	1 গ স		4,170,153	125,104
주혜	사업특별회	비계		724,873	21,746
의료	보호기금록	투별회계		464,810	13,944
세마	<b>윤소독</b> 금고	1 운영관리	폭 별 회 개	353,528	10,605
영세	민생활안건	기금투별	회계	91,620	2,748
<del>≽ 8</del>	지구조성 9	l 판 리 사 업	폭발회계	35,500	1,065

• 제2조 :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점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 계3조 : 1995년도 체무부담행위는 별침 '체무부담행위조서'와 갈다.

■ 계4조 : 1995년도 지방계 발행 한도액은

백반원으로 한다.

\* 제5조 : 1995년도 명시이월사업은 별취 '명시이월사업' 조서와 같다.

\* 제6조 : 1995년도 계속비 사업은 별침 '계속비조서'와 같다.

● 계7조 : 일반회계 예비비는

564,821천원으로한다.

# 예 산 총 규 모

(단위 : 천원)

	<b>3</b>	계 별	구	五	예 산 색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중 Δ 감
		계	:		61,753,419	55, 088, 922	6,664,497
	일	반	희	계	55,912,935	49, 248, 438	6,664,497
	특	별	<u></u> 회	계	5,840,484	5, 840, 484	0
- 693	상	수 도	사	업	4, 170, 153	4, 170, 153	0
ĩ	주	택	사	업	724,873	724,873	0
	의	료 보	<u>\$</u>	기 금	464,810	464,810	0
	새ㅁ	마을 소득 금	고 운영	l 관리	353, 528	353, 528	0
	영	세 민 생 활	안 정	기 금	91,620	91,620	0
	रे र	공지구 조성	및 관리	사업	35,500	35,500	0
	새ㅁ	가을 소득 <b>특</b>	별 지원	. 사업	0	0	0
	공	유 임야	관 리	사 업	0	0	0
	지	방 양 여	금 /	사 업	0	0	,, 0

#### 세입세출예산 충팔표

(단위 : 원원)

					<b>V</b>		1			일	반회	4	-		¥	<b>A</b> N	4	
	7		분	예산맥	구성 비율 (%)	전 년 도 (기정) 에 산 액	구성 비율 (%)	₹ Δ Z}	예산예	구성 비율 (%)	천 년 도 (기정) 네 산 맥	구성 비율 (%)	₹ Δ ∦	예산예	구성 비용 (함)	전 년 도 (가정) 네 산 예	구성 비율 (5)	중 스 강
		4		61,753,419	1004	55,088,922	1004	6,664,497	55,912,935	100%	49,248,438	100%		5,840,484	100%	5,840,484	100%	0
J.	7	방	거	6,462,771	104	6,062,771	115	400,000	- 6,462,771	12%	6,062,771	125	400,000	0	05	0	01	0
1	A	외수	: ប្រ	8,092,094	131	7,750,839	14%	341,255	4,013,210	7%	3,671,955	75	341,255	4,078,884	70%	4,078,884	70%	0
	ð	상직시	외수입	4,645,697	8%	4,654,442	8%	-8,745	3,570,510	6%	3,579,255	75	-8,745	1,075,187	185	1,075,187	18%	0
	일	시작시	외수입	3,446,397	64	3,096,397	64	350,000	442,700	1%	92,700	0%	350,000	3,003,697	515	3,003,697	515	0
	7	肾湿	부서	24,211,000	39 <b>1</b>	19,578,000	364	4,633,000	24,211,000	43%	19,578,000	40%	4,633,000	0	0%	0	04	0
	지	병양	여규	4,717,751	8%	4,057,470	7%	660,281	4,717,751	8%	4,057,470	85	660,281	0	05	0	05	0
입	보	<u> </u>	7	15,557,643	25%	15,927,682	29%	-370,039	13,796,043	25%	14,166,082	29%	-370,039	1,761,600	30%	1,761,600	30%	0
"	₹	고 보	조 급	9,561,360	15%	10,337,252	19%	-775,892	8,198,368	15%	8,974,260	18%	-775,892	1,362,992	235	1,362,992	231	0
	도	비보	조 궁	5,996,283	104	5,590,430	10%	405,853	5,591,675	10%	5,191,822	115	405,853	398,608	75	398,608	75	0
	지	광 차	원	2,712,160	47	1,712,160	3%	1,000,000	2,712,160	5%	1,712,160	35	1,000,000	0	0%	0	0%	0
	7	뷩	<b>月</b>	0	04	0	046	0	0	0%	0	0%	0	0	0%	0	0%	0
	4	산네	각수입	2,712,160	4%	1,712,160	31	1,000,000	2,712,160	5%	1,712,160	35	1,000,000	0	0%	0	0%	0
	부	甘	구	0	0%	0	0%	0	0	0%	0	0%	0	0	0%	0	01	0
		4		61,753,419	100#	55,088,922	100%	6,664,497	55,912,935	100%	49,248,438	100%	6,664,497	5,840,484	100%	5,840,484	100%	0
A	인	건	비	10,778,488	17%	10,021,860	18%	756,628	10,766,248	19%	10,009,620	20%	756,628	12,240	0%	12,240	0%	0
7	룓	건	Вļ	7,957,844	13%	7,243,630	13%	714,214	7,318,066	13%	6,603,852	13%	714,214	639,778	115	639,778	115	0
	ণ	전 ?	g 1)	5,376,575	91	5,289,346	10%	87,229	4,646,075	8%	4,558,846	9%	87,229	730,500	135	730,500	135	0
	자		출	35,673,744	584	30,643,467	56%	5,030,277	31,955,473	57%	26,925,196	55%	5,030,277	3,718,271	645	3,718,271	64%	0
	ŧ	자 및	출자	449,724	15	449,724	15	0	0	0%	0	. 0%	0	449,724	85	449,724	85	0
	Ā	전 7	4 원	416,872	19	416,872	15	0	127,051	0%	127,051	0%	0	289,821	5\$	289,821	5%	0
ş	4	부 7	4	535,201	15	535,201	15	0	535,201	15	535,201	15	0	0	0%	0	05	0
	기		타	150	0%	150	0%	0	0	0%	,0	0%	0	150	0%	150	05	0
	4	비	8	564,821	j Ç	488,672	15	76,149	564,821	15	488,672	15	76,149	0	05	0	0%	0

- 694 -

#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 1. 감사의 목적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의 규정 및 평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한 행정사무감사 를 실시하여,

-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집행을 감시.통제하고,
- 예산안 및 각종의안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 행정의 민주성.능률성.공정성 향상에 기여함으로써,
   군민 본위의 복지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촉구코자함.
- 2. 감사기간: '94.11.28 ~ 12.3(6일간)
- 3. 감사실시대상기관
  - 당연대상기관(군본청및 소속행정기관,하부행정기관)
  - ※ 관련시설 및 사업장현지확인 (8건)
    - o 미탄복지회관 피로연장 주차장부지 및 공용주차장시설
    - o 평창 송어양식장
    - o 한우경쟁력사업(6건)

## 4. 감사실시 경과

가.감사반편성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전원(7명)

- 위원장 : 이치옥 위원 간 사 : 곽문춘 위원
- 위 원 : 이상훈, 박용태, 주태원, 김낙운, 김종영 위원
- ☀ 사무보조 : 의회사무과 직원 5명

# 나. 감사일정 및 장소

감사일시	대 상 기 관	감사장소	비	고
94.11.28(월) 10:00	. 기획실,문화공보실, 내무과 사회진흥과	군청대회의실		
94.11.29(화) 10:00	. 미탄면,진부면,도암면	미탄면회의실 및 현지확인 (8건)		
94.11.30(수) 10:00	· 재무과,사회과, 환경보호과 위생환경사업소	의회소회의실		·
94.12. 1(목) 10:00	. 산업과, 축산과,산림과 농촌지도소	н		
94.12. 2(금) 10:00	. 건설과, 도시과, 민방위과	п		
94.12.3(토) 10:00	· 보건의료원, 가정복지과 지역경제과 · 강평	n		·

## 다. 감사방법 : 공식적인 의회의 "회의형식 "

## ○ 감사진행은

- 감사자료를 사전 제출받아 위원별로 검토
- 감사위원장의 감사실시 선언과 인사
- 자치단체장의 인사와 간부소개가 있은다음
- 소관별로 부서장의 증인선서에 이어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 감사 위원의 질의.답변후 미진한 부분은 보충질의.답변을하고, 필요부분은 별도 자료를 제출토록 함.
- 읍면확인은 당해 부서장이 동행 현황설명, 질의.답변을 실시하고
- 감사사항별로 결과를 면밀히 분석 시정.처리.건의등 대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진행 하였음.

# 5. 주요감사실시내용

# 가. 소관별 실시내용

소 관 별	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	비고
평 창 군 기 획 실	o 소송 사무처리 사항 o 군수포괄사업비 집행내역 o 풀보조금및 보상금 집행내역 o 이월사업에 대한 내역 o 년도별 지방채무 현황	
문화공보실	o 유선방송 허가및 지도감독 실태 o 비지정관광지 이용실태 및 관리현항 o 주민계도용 신문.도서 구입내역 o 종합문화예술회관건립 추진현황	
내 무 과	o '94년도 1년동안 전보자 현황 및 전보사유 o 바르게살기혐의회 운영비보조금 집행내역 o 각종 감사시 지적사항 처리현황 o 모범공무원 효도관광 예산집행내역 o 자율방범대 운영 및 운영비 집행내역 o 주민등록 전산장비 구입 및 배치내역	

소 관 별	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	비고
사회진훙과	o '94마을안길 확포장사업추진내역 o 노성궁도정 건립현황 o 평창종합체육관 설계용역 내역 o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 추진현황	
재 무 과	o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 부진사유 o 시장사용료 징수 중액방안 및 읍면별 수입내역 o 관내 별장에 대한 세금징수 현황 o 지방교부세,국도비보조금 계획대비 실적내역 o 무주부동산 현황및 공고료 집행내역 o 공사발주 설계변경현황	
사 회 과	o 위생접객업소 위생검사실태및 행정처분 내역 o '94년도 취로사업내역 o 생활보호대상자 직업훈련내역 o 재가복지 서비스사업 실태	
환경보호과	o 송어양식장 침전지 시설에 대한 점검현황 o 축산폐수 방류업체에 대한 지도감독 사항 o 오수처리장 시설의 향후대책	

소 관 별	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	υl
T 1 1	T 표 검 자 걸 지 내 용	비고
환경보호과	o 쓰레기 분리수거 추진내역 및 매립장 처리대책	
	o 영동고속도로 4차선 확장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추진사항	:
:	o 하천수질오염 대책	
:	o 대화시가지에서 발생하는 오.폐수 처리대책	· . :
,		<u>.</u>
가정복지과	o 공설묘지 시설사업 추진내역	: ! !
	o '94경로당 운영비 지원현황	: :
	o 노인건강진단 실태	
산 업 과	o 미탄복지회관 피로연장부지 및 공용주차장시설과 관련한 농업진흥지역지정경위	: - : : : :
	o 기계화 전업농육성및 읍면별 일반농기계 구입지 원내역	
	o '93. '94 객토 인.허가 내역	
	o 진부 용평레미콘 부지 농지전용 실태	
	o 청과물 유통센타 추진과정	
	o 농촌소득사업및 특화사업추진,각종지원사업내역	
	o 병내리, 신기리 화훼단지 조성현황	
	o 마을공동 개량저장고 지원 내역	

소 관 별	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	비고
지역경제과	o 미탄공용주차장 설치사업 추진현황 o 중소기업 육성자금 출연금집행내역 o 평창군일원 주유소 현황과 관리실태 o 주차장 부지확보및 마무리 작업현황	
축 산 과	o 송어양식장 오수.오염단속및조치현황 o 공수의 수당지급및 관리현황 o '94어도시설 설치 현황 o 가축분뇨 유기질비료 사업 투자 내역 o 축산폐수 정화시설 투자현황 o '94한우종합대책사업 추진실대	
산 림 과	o 솔잎흑파리 방제사업 추진사항  o 천연림보육및 간벌사업추진사항  o 임도시설내역  o 산불유급감시원 인건비 지급내역  o 산지정화 감시원운영 실태	
건 설 과	o 제설장비 운용사항 o 군도.농어촌도로사업에 대한 수의계약 사항	

소 관 별	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	비고
건 설 과	o 노후교량 실태조사 현황 o 폐천부지 매각 내역 o 골재채취 인.허가 사항 o 군도포장실태및 향후 추진내역	
도 시 과	<ul> <li>○ 간이상수도 관리인 인건비 지급사항</li> <li>○ 방치된 공가 철거 대책</li> <li>○ 군청앞 택지 개발 현황</li> <li>○ 부엌개량및 화장실 개량사업</li> <li>○ 농촌 주택개량 지원 내역</li> <li>○ 평창상수도 확장사업 추진현황</li> <li>○ 대화 도시계획 변경에 대한 내역</li> <li>○ 계촌 상수도 추진 현황</li> </ul>	
민방위과	o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 지급현황 o 화재진압 장비 확보대책	
보건의료원	o '94약품구입내역및 예방접종현황 o '94년도 직원교육실시현황 o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실시 사항 o 의료원 장비 구입 내역	

소 관 별	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	비고
농촌지도소	o 농기계수리 봉사와 투자내역 o 여름느타리 재배 현황 및 대책 o 대추나무 빛자루병 방제실태 o 1읍면 1특화작목 개발 추진 사항 o UR대비 경제성 작목 개발 추진현황	
위생환경사업소	o 모터펌프 운영문제 o 관정 설치 내역	
읍 면	o 취로사업비 집행내역 o 읍면장 포괄사업비 집행사항 o 읍면장및 마을담당공무원 일일출장내역 o 면사무소 직원 복무관리 현황 o '94마을안길포장사업 추진내역	

## 6. 감사결과처리의견

## 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POOL보조금및 보상금 집행시 당초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할사항인
   체육회 지원금등은 이를 이행하지 않은것으로써 추후 개선이 요구됨.
- 항정집행의 미흡으로 이월사업이 과다하게 발생한것은 무사안일의 결과 로써 시정이 되어야 할 사항임.
- 3)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투자하여야 하는 포괄사업비를 집행함에 있어 대부분 목적외에 사용되고 있음. 이들의 사업은 당초예산에 편성되어야 할 사항으로써 예산운용에 개선이 요구됨.
- 4) 총가입찰에 의한 계속사업이 년차별로 정확한 재원확보대책이 없이 추상적인 예산편성으로 열악한 군의 재정형편을 어렵게 하는것은 전반적인 사업계획검토가 미흡한것으로 조속히 보완되어야 할사항임.
- 5) 평창 종합문화예술회관건립에 대한 주민의 활용도. 재원대책마련과 완공후의 운영관리체계등의 실효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함이 요구됨.
- 6) 주민계도용 신문 배부에 있어서 지방지의 경우 배포선대로 배달되지 않는 사례가 많고, 중앙지 감축방안을 강구하여 지방지로 전환하는 방안을 강구바람.

- 7) 유선방송사들의 비정규방송시간대 재방송시 선전. 광고등의 무분별한 방영으로 군민정서를 해하는바 이의 시정과 교양.문화등으로 채널을 구분한 방영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함이 요구됨.
- 8) 잦은 인사로 인한 업무공백과 업무연찬의 미숙으로 행정추진력 미흡 사례를 일으키는것은 대민행정의 누수현상으로써 안정되고,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할 수 있는 인력관리 대책의 강구가 요구됨.
- 9) 농촌마을길 포장사업 선정시 주민에 대한 수혜의 폭을 충분히 감안 하여 사업추진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민원발생소지의 대상 이 된것은 개선이 되어야 할 사항임.
- 10) 평창 노성궁도정 건립에 따른 협회부담금의 경우 군에 납부후 공사 계약이 이루어짐이 타당할 것이나 자부담 5,000만원을 본설계에서 제외한 것은 타당치 못하며 추후 본공사의 자부담으로 시행코자하는 토공, 조경, 사대등의 부분에 대해서는 군에서 철저한 시공감독을 통하여 정확한 투자가 이루어 지도록 하여야할 것임.
- 11) '94년도에 의회의 승인을 받은 공유재산관리 계획에 대한 사업추진이 미흡, 이월되는 사례가 있는바 당해년도에 계획된 사업이 완료되어 누수없는 행정이 추진되도록 관심제고가 요구됨.

- 12) 자동차세 체납액이 과다한것은 과감한 행정처분을 하는등 체납액 일소대책이 소홀한 것으로 사료되는바 대책을 강구 추진하기바람.
- 13) 정기위생검사를 요식업협회의 자율로 실시함으로써 형식적인 검사가되어 위생상태의 불량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군에서도 주요업소에 대한 위생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시행함이 타당함.
- 14) 심야퇴폐업소에 대한 관련부서간의 유기적인 협조로 정기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유기장 도박등 변태영업행위 근절 대책을 강구하여 주기바람.
- 15) 생활보호대상자 책정에 있어서 정확한 법규등의 연찬과 관련공무원의 적극적인 추진자세로 실제 생계곤란자가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추진 하기 바람.
- 16) 이 미용료,목욕료등이 급격히 인상되고 있어 물가에 미치는 영향 또한 크다고 할 수 있으므로, 주민생활에 부담을 주는 행위는 자율인상에 대한 규제나 지도.계도가 미흡한것으로 대책을 강구 추진하기 바람.
- 17) 송어양식장 폐수로 인하여 하천오염이 가속되고 있는 현상은 지도감독을 소홀히한 결과로써 하천오염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요망됨.

- 18) 위생처리장 기계가동을 위한 부족한 용수공급은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충분한 예산확보후 시행함이 타당함.
- 19) 미탄면 공용주차장 부지에 대한 농지전용문제는 조속히 해결하여 사업을 완료토록하고, 농지전용문제로 인하여 주민의 불이익을 초래하는 경우가 없도록 조치바람.
- 20) 진부 용평례미콘 농지전용은 사업주가 파산상태에 있으므로 농지 원상 복구 또는 향토기업의 보호문제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군의 사전대책이 요구됨.
- 21) 청과물종합유통센타 설치는 군의 중심지역이고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설치하여야 할것이나 이를 감안하지 않아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바, 금후 유사한 사업선정시 개선.보완이 되어야할 사항임.
- 22) 출생기념통장 발급에 따른 예산배정이 지연되어 적시에 발급이 안되는 사례가 있었으며, 일부읍면에서 회계관계법규에 의한 출납원이 아닌 공무원으로 행위가 이루어 지는 것은 조속히 시정이 되어야 할 사항임.
- 23) 어도시설에 대하여 당초 사업계획을 확정치 않고 포괄적으로 예산을 편성 사업을 추진한 것은 예산운영상 적절치못한 경우로써 금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추진바람.

- 24) '94한우종합대책사업 추진의 경우 사업신청및 대상농가선정등 사업추진 절차를 축협에서 주관하여 시행한 것은 행정절차상 타당치 못하며, 희망농가가 선정과정에서 누락될 여지를 내포하였는바, 금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하고, '94대상사업장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지도 감독으로 사업수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기 바람.
- 25) 내수면 어업양식용 기자재구입 지원사업 대상업체의 선정에 있어서 영세업체 위주로 지원이 되었어야 하나, 경영상태가 우수한 업체로 집중지원이 된 것은 불합리한 처사로 금후 개선을 요하는 사업임.
- 26) 군도,농어촌도로의 포장공사에 있어서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사업장에 대한 장기계속적인 수의계약 행위는 관련법규의 확대적용으로 인위적인 수의계약사유를 구비 적용하였고, 이로인한 예산상의 상대적인 낭비요인을 발생케 한것은 금후 사업추진시 시정.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임.
- 27) 미탄 서천지구 경지정리사업 도수로설치공사는 군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하여 주민의 경작의지를 북돋우고 민원발생의 소지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함.
- 28) 마을내 방치된 공가철거의 문제는 정확한 조사등을 통하여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추진바람.

- 29) 평창읍 도시계획 변경에 따라 군청앞 택지개발사업 자체가 무산된것은 금후 사업시행시 군비부담을 가중케할것이 예상되는바 사업계획에 대한 철저한 검토.보완을 통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 30) 농민 건강관리실 운영은 농민들의 피로해소는 물론 주민화합의 장이 되고 건강증진에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써 적극권장 보급해야 될 사업임.
- 31) 농기계 기동수리및 교육은 농민을 위한 실질적인 투자사업으로써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여 점차 확대 추진하기 바람.
- 32) 대추나무 빗자루병 방제시 수간주사의 방법등에 대한 철저한 지도교육을 통하여 실질적인 예방.치료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추진바람.
- 33) 읍면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의 경우 잦은이석으로 진료행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등 복무관리의 취약점이 발생하고 있는바, 철저한 복무 지도단속을 통하여 이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조치하기 바람.

#### 나. 건의사항

- 1) 종합문화예술회관건립에 따른 국.도비등의 지원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상급관서에 적극 요청하고,추진위원단의 적극적인 활동을 촉구 열악한 지방재정부담을 풀어 나가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 2) 국공유지 임대계약시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토록 한것은 대부분 생활이 어려운자들에 대한 계약임을 감안하여 공채소화 기준등을 개정해서라도 주민을 위한 행정을 실현하여 나가기 바람.
- 3) 식품위생검사시 보다 철저한 위생검사가 이루어지도록 요식업협회에 강력한 촉구등을 하고 군에서도 직접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추진바람.
- 4) 행려사망자에 대한 장제비가 과소하게 책정되어 일선기관에서 행려자 처리시 어려움이 발생하는바 현실적인 보상대책이 강구되도록 정책적인 대안이 요구됨.
- 5) 영동고속도로 4차선 확장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시 주민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유관기관및 각부서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강구하기 바람.

#### 다. 기타 감사의견

- □ 군의회 개원이래 네번째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 o 초대 평창군 의회로서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의식을 가지고 군정의 감사 대상사무 전반에 대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 사전 충분한 연구검토를 하여,
  - o 주민 복지증진과 군정발전 도모를 위한 적정한 사업투자를 촉구하고,
  - o 주민이 바라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군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도출하는데 전력 하였음.

#### □ 감사결과 미흡했던 부분은

- o 포괄적이고 방대한 감사자료로 인하여 상대적인 연구·검토 시간의 제한으로, 핵심을 파악치 못한 추궁과 중복된 질의, 구체적인 대안과 방향 제시등이 미흡했던것은 앞으로 의회운영에서 개선이 되어야 하고,
- 전반적으로 위원들의 서류제출요구에 대한 불충분한 자료의 제출과, 출석대상공무원의 출석지연, 관계공무원의 애매모호한 소신없는 답변, 업무파악소홀등은 매년 반복되는 사항으로 시급히 시정이 되어야 할 사항이었음.

#### □ 금후 개선방향으로는

- o 이번감사를 통하여 나타난 문제점들을 면밀히 검토 보완하여 관련규정의 개정등이 필요한 부분은 적극 시책에 반영토록 하고,
- o 감사과정에서 제시된 위원들의 시정·처리요구나 건의사항등은 충분한 연구 검토를 통하여 군정수행에 적극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엄정한 군정수행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하여 나가야 할 것임.
- ●히, 95년도 완전한 지방자치시대를 대비한 공무원들의 부단한 노력
   으로 군민이 바라는 복지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는 배전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것임.

### 7. 기타 특기사항

And the content of the property of the following the follow

· 1877年,198

the first of the control of the cont

### 평창군행정정보공개조례안

의안 번호 194 제출년월일 : '94, 11.

제 출 자 : 평창군수

#### 1. 제안이유

○ 행정기관이 공무상 작성,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기록물을 일반 주민들에게 열람, 복사의 형태로 공개하여

○ 군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주민참여에 의한 책임행정의 진작을 통하여 국민생활 관련 정보의 자유로운이용에 따른 국민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고 민주적인 군정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 2. 주요골자

- 군정과 관련 행정정보를 공개하여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책임행정의 진작을 통해 주민 복지증진과 민주적인 군정 발전에 기여코자 함(제1조)
- 행정정보공개를 청구 할 수 있는 자는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거나 군내에 사업소 또는 사무소를 두고있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 정함(제4조)
- 공개 또는 비공개 할 수 있는 행정정보를 명확히 규정하여 개인,단체,법인의 보호와 군정의 업무수행을 원할하게 하고자 함.(제5조)
- 행정정보는 청구인이 청구서에 작성한 사용목적외에 타용도로 사용 할 수없도록
   함(제7조)
- 행정정보공개는 청구 받은 날로 14일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고, 즉시 결정할 수 있을 때는 구두로 통보할수 있으며, 비공개결정시 이의신청 절차를 청구인에게 통지하도록 함(제8조)

- ㅇ 비용부담은 "보존문서열람및수수료에관한규칙"을 준용 징수토록 함(제10조)
- 청구인은 이의가 있을시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며, 집행기관은 10일 이내에 행정정보공개심의 위원회에 회부토록 함.(제11조)
- 행정정보공개에 있어 자문과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를 위한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 회를 9인이내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토록 정함.(제12조)
- ㅇ 심의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을 타인에게 누설하지 못 하도록 함(제13조)
- 청구인의 편의를 위하여 집행기관은 행정정보공개목록을 작성하여 지정된 장소에 비치하도록 함(제14조)
- 행정정보공개운용상황을 매년 2회(1월,7월중)에 걸쳐 주민들에게 공표 하도록 함.(제15조)

### 평창군행정정보공개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군정에 관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책임행정의 구현 을 통하여 주민 복지증진과 민주적인 군정발전에 기여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행정정보"라 함은 지방자치법령등에서 정한 군의 사무로서 집행기관에서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보유·관리하고 있 는 문서·그림·사진·도면·필름·녹음테이프·녹화테이프 및 컴퓨터에 입력된 자료등을 말한다.
- 2. "집행기관" 이라 함은 군수와 그 소속 행정기관의 장 및 하부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 3. "공개" 라 함은 행정정보를 열람에 제공하거나 사본을 교부 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 (집행기관의 의무) ①집행기관은 적극적으로 공개대상 행정정보에 대하여 공개할 의무를 지며, 동시에 개인의 사생활과 기본권에 대한 정보는 최대한 보호하여야 한다.
  - ②집행기관은 군민의 행정정보공개 청구에 응할 뿐만아니라 대다수의 주민에게 필요한 행정정보는 자발적으로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4조 (공개청구권자)이 조례에 의하여 행정정보의 공개를 청구할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 1.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자
  - 2.군 관내에 사업소 또는 사무소를 두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

- 3.집행기관이 행하는 사업으로 청구하는 행정정보에 대하여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자
- 4.외국인에 대하여는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제5조 (공개대상 행정정보) ①집행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모든 행정정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 1.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공개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 행정 정보
  - 2.출생지·사상·종교·경력·신체적특성등 공개 됨으로써 개인의 기본권과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행정정보
  - 3.개인·법인·단체등의 거래상의 비밀 또는 영업 및 재산에 관계되는 것으로써 공개 될 경우 현저한 불이익을 초래 할 우려가 있거나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 되는 행정정보
  - 4. 집행과정에 관련 되는 다음의 행정정보
    - 가.집행기관 내부 또는 다른 기관과의 상호간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하는 것이 적정한 의사결정에 지장을 가져 올 우려가 명백한 것.
    - 나.미확정 계획·입찰예정가격·시험문제·교섭·쟁송·인사· 회계등 공개하는 것이 군정의 적정한 업무 집행을 해할 우려 가 있는 것.
    - 다. 범죄의 예방과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또는 형의 집행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 하거나 개인의 재산과 신변에 위협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것.
  - 라.국가 또는 공공단체 상호간의 협의 또는 의뢰에 의하여 작성· 취득한 사항으로 공개하는 것이 이들간의 협력관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것

- 5.국가사무(기관위임사무)와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의 사항으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상 또는 군정업무 추진상 해를 미친다고 판단 되는 행정정보
- ②집행기관은 제1항 각호의 공개할 수 없는 행정정보와 공개할 수 있는 행정정보가 합하여 기록되어 있는 경우 이를 합리적으로 분리가능 할 때에는 공개 가능 부분에 대하는 공개하여야 한다.
- ③집행기관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라도 일정기간이 경과하여 공개하지 아니할 사유가 없어진 때에는 신속히 공개 하여야 한다.
- 제6조 (공개의 청구방법) 행정정보의 공개를 청구하고자 하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청구서를 집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집행기관이 청구서의 제출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1.청구인의 이름 및 주소 (법인등에 있어서는 명칭,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이름)
  - 2. 공개를 청구하는 행정정보의 내용 및 사용 목적
  - 3.기타 규칙이 정하는 사항
- 제7조 (청구인의 책무) 이 조례에 의하여 얻는 행정정보는 제6조제2호 의 사용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이용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에 이용하 여서는 아니된다.
- 제8조 (공개여부결정) ①집행기관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개를 청구 받은 때에는 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고 결정사항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다만, 공개여부를 즉시 결정할수 있을 때에는 청구서를 접수한 때에 구두로 통지할수 있다.
  - ②집행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공개일시,장소,방법 및 수수료 금액등을 명시하여 공개결정 통지를 하고,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한 때에는 비공개사유와 이의신청 절차등을 기재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집행기관은 제1항의 기간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청구인에게 따로 기간을 정하여 연장 통지를 하여야 한다.
- 제9조 (공개방법) ①행정정보의 공개는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당해 기록물의 원본을 직접 열람하거나 그 사본의 교부로 행한다.
  - ②행정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그 원본이 훼손·오손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밖의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본을 공개 할수 있다.
  - ③행정정보는 청구인 본인에게 직접 공개하거나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에게 공개 할 수 있다.
- 제10조 (비용부담) ①행정정보의 공개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 ②제1항 비용은 "보존문서열람수수료에관한규칙"의 열람수수료규 정을 준용하여 징수한다
  -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행정정보의 공개가 공공복리의 향상에 기여한다고 집행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을 청구인에게 부담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 제11조 (이의신청) ①청구인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기관으로 부터 행정정보 비공개결정서를 받았을 때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 ②집행기관은 제1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 ③위원회로부터 심의결과를 이송 받은 집행기관은 지체없이 공개 여부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2조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 ①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집행기관의 자문에 응하고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한 공개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평창군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 으로 구성하되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 ③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 ④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⑤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⑥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공무원인 위원은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임기만료 등의 사유에 의한 위원의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 ⑦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의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 ⑧회의는 군수 또는 재적위원 3분의1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 ⑨위원회가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을 출석하게하여 충분 한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 ⑩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 ⑪위원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평창군각종위원회실비변 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누설금지의 의무) 위원회의 위원은 직무상 알게된 사실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 직에서 물러난 후에도 또한 같다.
- 제14조(공개대상 목록의 작성) ①집행기관은 청구인의 편의를 위하여 즉시 공개할 수 있는 행정정보 공개목록을 작성하여 지정된 장소 에 비치하고 일반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②제1항의 목록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5조(운용상황의 공표) ①집행기관은 매년 1월과 7월중에 행정정보의 반기별 공개운용상황을 주민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 ②제1향의 운용상황공표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6조(다른 법령등과의 관계) 이 조례는 다른 법령등에서 행정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초

①(시행일) 이조레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이미 작성 또는 취득한 행정정보에 대하여는 당해 행정정보공개 목록이 작성 완료 된 것부터 이 조례의 규정을 적용한다.

### 평창군행정정보공개조례안에대한 수정안

의 안 194 번 호

제안년월일: 1994.11. .

발 의 자 : 김낙운 의원외 6 인

### 1. 수정이유

 군정에관한 행정정보공개의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이고 명백히 정하여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투명한 공개행정을 통하여 책임행정을 구현하고 주민복지증진과 민주적인 군정발전에 기여 할수 있도록 하고자함.

#### 2. 수정주요골자

- ㅇ 공개대상기관 범위확대(제2조)
- ㅇ 이의신청절차 보완 신설(제11조)
- o 행정정보 공개심의위원회 구성.임기.조직의 구체화 (제12조)

#### 평창군행정정보공개조례안에대한수정안

평창군행정정보공개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 제2호증 "그소속행정기관의장"을 "그소속행정기관의장및 하부 행정기관의장"으로한다.

안 제11조 중 제3항을 제4항으로하고 제3항을 다음과같이 신설한다.

"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부된 안건을 접수일로부터 20일이내에 공개여부를 심의하고 그결과를 집행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안 제12조 제2항중 "위원으로 구성하되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를

"위원으로구성하되 집행기관의공무원 3인.군의회의원3인및 학계등 전문성을 가진 3인이내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로한다.

안 제12조 제6항증 "임기만료등의 사유"를 "보궐"로한다.

안 제12조 제10항중 " 간사와 서기를 둔다"를 간사와 서기각1인을 둔다" 로한다.

# ( 수 정 안 대 비 표 )

원 안	수 경 안
제2조 (정외) (생략)	제2조 (정의) (생략)
1. ( 생략 )	1. (원안과 갈음)
2."집행기관" 이라함은 군수와 그소속행정기관의장을 말한다.	2 그소속행정기관의장및 하부행정기관의장
	을 말한다.
3. (생략)	3. (원안과 갈음)
계1i조 (이의신청)	제11조 (이의신청)
①~② (생략)	①~② (원안과 갈음)
(신설)	③ 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부된 안건을 접수일로부터 20일이내에 공개 여부를 심의하고 그결과를 집행기판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3) (생략) —	④ (원안 3호와 갈음)

원 안	수 경 안
제12조 (행정정보공개 심의위원회)	제12조 (행정정보공개 심의위원회)
① (생략)	① (원안과 갈음)
② 위원회는 위원장및 부위원장 각	<b>②</b>
1인을 포함한 9인이내의 위원으	위원으
로 구성하되 군수가 임명 또는	로 구성하되 집행기관의 공무원3인.군의
위축한다.	회의원3인및 학계등 전문성을 가진 3 인
	이내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④ (생 략)	③~⑨ (원안과 갈음)
⑩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	<b>@</b>
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① (생략)	① (원안과 같음)

### 평창군세감면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1994. 12. .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 1. 저안이유

○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군세의 과세면제 및 불군일과세에 관한 사항을 그동안 감면 목적에 따라 개별조례로 제정 운영해 오던 것을 통폐합하여 단일조례로 규정하여 운영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 하려는 것임.

### 2. 주요골자

- '94년말로 감면시한이 만료되는 11개조례의 시한율 '97년 12월 31일까지 연장 하고,(부칙 제2항)
- 마을회등 주민공동체가 경작하는 농지소득에 대하여는 농지세를 면제하고 마을 공동작업에 직접 사용되는 주민공동체 소유의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내용을 추가하고,(제14조)
- 주차장에 대한 종합토지세 면제기준을 완화함.(제15조)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제2장 사회복지지원을 위한 감면
제2조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
제3조 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한 감면
제4조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제5조 음성나환자집단촌 지원을 위한 감면
제6조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제3장 사회교육시설등 지원을 위한 감면
제7조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감면
제8조 사립학교의 교육용재산에 대한 감면
제9조 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
제10조 향교재단 소유재산에 대한 감면

제4장 농어촌주택개량등 지원을 위한 감면
제11조 농어촌주택개량등에 대한 감면
제12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제13조 농외소득원개발에 대한 감면
제14조 마을공동체소유 농지등에 대한 감면

제5장 대중교통등의 지원을 위한 감면
제15조 주차장에 대한 감면
제16조 여객자동차터미널에 대한 감면
제17조 짚형승용자동차등에 대한 감면

제6장 지역발전지원등을 위한 감면
제18조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감면
제19조 지방공사등에 대한 감면

제7장 보칙

제20조 사무처리의 위임.

제21조 감면신청등

제22조 시행규칙

### 평창군세감면조례안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군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장 사회복지 지원을 위한 감면

- 제2조(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 ①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집단거주하고 있는 중상이자가 자활용사촌안에서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본인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배기량 2,000씨씨이하인 승용자동차 1대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 ②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급수 1급 내지 5급에 해당하는 자(다만, 3급내지 5급의 경우는 별표에 정하는 자에 한한다)가 본인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배기량 2,000씨씨 이하인 승용자동차 1대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 제3조(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한 감면)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판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에서 규정한 비영리사업자를 말한다)가 과세기준일현재 임대 기타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 제4조(장애인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18세이 상인 장애인증 지체장애인(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과 시각 장애인(장애등급 1급 내지 4급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이 본인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안마사등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배기량 2,000씨씨이하인

승용자동차 1대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다만,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를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5조(음성나환자집단촌 지원을 위한 감면) 음성나환자집단촌에 거주하는 나환자가 그 집단촌안에서 소유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의 주거용 부동산과 축사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 제6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종교단체(재단법인에 한한다)가 인구 100만미만의 시 또는 군지역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법에 의한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 제3장 사회교육시설등 지원을 위한 감면

- 제7조(사회교육시설에 대한 감면)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회 교육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중합토지세 및 도시계획 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시설을 다른 용도에 겸용하거나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교육시설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사회교육법에 의하여 등록된 사회교육시설
  - 2. 한국노동교육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노동교육원
  - 3. 교통부의 운수연수원 설립계획에 따라 설립된 운수연수원
  - 4. 사회교육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여 행정관청의 인·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사회교육시설
  - 5.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박물관 및 미술관
  - 6. 도서관및독서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도서관
- 제8조(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에 대한 감면) 교육법에 의한 각급 학교를 설치·경영 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학생들의 실험·실습에 직접 사용하는 항공기와 선박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 제9조(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문화재등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1.5로 하고, 도시계획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23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1로 하며, 종합토지세는 지방세법 제234조의15의 규정에 불구하고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 1. 문화재보호법 제4조, 제6조 내지 제8조와 강원도문화재보호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재로 지정된 주거용 부동산
  - 2. 제1호의 규정에 준하는 주거용 건축물로서 향토문화보호를 위하여 보존할 가치 가 있다고 인정되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군수가 따로 지정한 주거용 부동산
  - 3. 문화재보호법 및 강원도문화재보호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보호구역안의 부동산
  - 4. 전통건조물보존법에 의하여 지정된 전통건조물과 그 부속토지 및 전통건조물 보존지구안의 부동산
- 제10조(향교재단소유 재산에 대한 감면) 향교재산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향교재단 이 소유하는 농지(전·답 및 과수원을 말한다) 및 임야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234조의16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1로 한다. 다만, 19 91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하여 소유하는 것에 한한다.

#### 제4장 농어촌주택개량등 지원을 위한 감면

제11조(농어촌주택개량등에 대한 감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당해지역에 거주하는 자(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 서는 1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부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자에 한한다) 및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인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건축물 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하되, 시지역에 서는 993제곱미터이내의 토지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년간 면제한다.

- 1.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및 취락구조개선사업계획에 의한 주택개량사업
- 2. 농어촌정주권개발사업중 농어가주택정비사업 및 오지중합개발사업
- 제12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①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검사일까지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 및 임대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주택용에 직접 사용하는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인 5세대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말하며, 그 부대복리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한 재산세는 지방세법 제188조의 규정에의하여 산출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234조의16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3으로 한다. 다만, 임대주택용 부동산을 준공한 후 5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추정한다.
  - ②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이하인 영구임대주택(임대주택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에 규정한 기간동안 매각이 제한된 임대주택을 말한다)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 제13조(농외소득원개발에 대한 감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숭계취득한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5년간 재산세는 산출된 세액의 100분의 50을, 종합토지세는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 1.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 인을 받은 자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농공단지안에서 농외소득원 개발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토지·시설 등을 최초로 분양받은 자
  - 2.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지정신청서에 첨부한 사업계획서에 포함된 참여자
  - 3. 중소기업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동화사업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은 추 진주체 및 참가업체

4.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의 설치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은 자 및 아파트형 공장에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감된 재산세 및 종합도지세를 추정한다.

- 1. 과세기준일 현재 60일이상 휴업하고 있는 때
- 2. 지정한 제품의 생산 또는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때 제14조(마을공동체소유 농지등에 대한 감면)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가 경작하는 농지소득에 대하여는 농지세를 면제하고, 마을공동작업에 직접 사용되는 주민공동체 소유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 제5장 대중교통등의 지원을 위한 감면

제15조(주차장에 대한 감면) ①관계법령에 의한 주차장설치의무가 없는 자가 과세기 준일 현재 주차장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설치한 노외주차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주차대수 20대이상의 주차전용건축물(근린생활시설등 주차시설이 아닌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을 제외한다)과 그 부속토지(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초과하는 부분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주차장설치일 또는 사용검사일이후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재산세・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재산활)를 면제한다. 다만, 주차영업을 최초로 개시한 날부터 5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주차시설이외의 용도(일부를 주차시설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말한다)에 사용하는 경우 그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재산세・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재산할)를 추정한다.

②파세기준일 현재 주차장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설치한 노 외주차장(주차대수 20대이상의 주차전용 토지와 그 부대시설로서 주차장의 1년간 수 입금액이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이상인 것에 한한다)으로 직접 사용하는 토 지에 대하여는 주차장 설치일 또는 사용검사일이후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총합 토지세와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732

- ③제2항에 규정한 주차장의 연간수입금액과 부동산가액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의하여 계산한다.
- 1. 연간수입금액은 과세기준일부터 소급하여 1년간(직전년도 6월 1일부터 당해년도 5월 31일까지)의 수입금액으로 한다.
- 2. 연간수입금액의 계산기간중에 사업을 개시하는 등 그 계산기간이 365일에 미달 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연간수입금액으로 한다.

- 3. 부동산가액은 토지는 지가공시및로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로 하고, 건축물은 과세시가표준액 또는 법인장부가액증 높은 가액으로 한다.
- 제16조(여객자동차터미널에 대한 감면) 여객자동차터미널법에 의하여 사업면허를 받은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1년이상 계속하여 여객자동차터미널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 제17조(짚형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승용자동차 중 짚형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는 지방세법 제196조의5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구분에 의한 배기량에 씨씨당 세액을 곱하여 산정한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배 기 량 ㅡ	씨씨당 세액		
	영 업 용	비 영 업 <del>용</del>	
1,000씨씨이하	10원	110원	
1,000씨씨초과 2,000씨씨이하	10 <del>원</del>	140원	
2,000씨씨초과 3,000씨씨이하	12 <del>원</del>	165 <del>원</del>	
3,000씨씨초과	15 <del>원</del>	200원	

#### 제6장 지역발전 지원 등을 위하 감면

- 제18조(사권제한토지에 대한 감면) 공공시설용지(도시계획법 제2조제1항제14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용 토지를 말한다)로서 동법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적고시된 토지와 철도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등이 제한된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 제19조(지방공사등에 대한 감면) ①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공단을 포함한다)가 파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파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재산할)를 면제하고, 동 공사에 종사하는 종업원의 급여에 대하여는 사업소세(종업원할)를 면제한다. 다만, 총자본증 민간출자분이 있는 경우그 민간출자분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에 대하여는 주민세를 면제한다.

#### 제7장 보 칙

- 제20조(사무처리의 위임) 이 조례에 의한 군세 감면에 관한 사무는 읍·면장(출장소를 포함한다)에게 위임하여 처리한다.
- 제21조(감면신청등) ①이 조례에 의하여 군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감면신청서 [별지서식]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 ②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최

-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적용시한) 이 조례는 199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 ③(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다음 각호의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 1. 평창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 · 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 2. 평창군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예관한조례
  - 3. 평창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 4. 평창군농외소득원개발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 5. 평창군새마을사업등의지원을위한군세의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 6. 평창군임대주택건설에대한군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 7. 평창군장애인숭용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 8. 평창군주차장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 9. 평창군지정문화재에대한군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 10. 평창군음성나환자소유토지및건축물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 11. 평창군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 12. 평창군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 13. 평창군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 14. 평창군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 15. 평창군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 16. 명창군여객자동차터미널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 [ 별 표 ]

## 상이등급분류표<sub>(제2조제2항 관련)</sub>

귤	<u>ት</u>	분 류 번 호				
	3 급	5, 13, 22, 23, 24, 27, 31, 72, 78, 81, 83, 86, 89				
4	1 급	108, 109, 111, 112, 113				
5	5 급	25, 26, 28, 29, 41, 73, 77, 92				
6급 (복합	1 항	35, 36, 47, 48, 115, 116, 117, 119, 120, 121, 122 125, 126, 127, 129, 130, 131				
호수자)	2 항	16, 30, 32, 37, 39, 40, 44, 49, 52, 53, 54, 57, 58 59, 60, 64, 65, 67, 69, 70, 74, 75, 88				
벼]	ত্র	다만, 위에서 지정되지 않은 3급 내지 5급의 호수자는 6급 1항 및 2항에 정한 상하지계통호수와 복합된 경우 에만 그 대상이 된다.				

평 창 군 세 감 면 신 청 서				처리기간		
	7일					
성 명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기번호)					
주 소						
	세 -	루 년도/기분	당초세액	감면세액		
감면내용	-					
		.				
	합 계					
감면사유	평창군세감면조례 제 조					
i			에 의하여 위와 같	o <sub>)</sub>		
a l	감면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명 창		귀하			
7 H L Z				수 수 료		
구비서류				없 음		

### 관계 법령 발췌서

### □ 지방세법 제7조 제1항

○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를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에는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지방세법 제7조 제2항

○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때에는 불균일과세를 할 수 있다.

### □ 지방세법 제9조

○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내무부장판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정하여야 한다.

### □ 민법 제32조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 □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2호

○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울은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과세표준 〉

〈세 율〉

1.000만원 이하

1,000분의 3

1,000만원 초과 1,300만원 이하 3만원+1,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1,300만원 초과 1.800만원 이하 . 4만5천원+1,3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0

1,800만원 초과

9만5천원+1,8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0

2,600만원 이하

33만5천원+2,6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0

2,600만원 초과 3,500만원 이하

.

3,500만원 초과

78만5천원+3,5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70

### □ 지방세법 제234조의15 제1항

○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은 종합합산과세표준, 별도합산과세표준 및 분리과세표준으로 구분한다.

### □ 지방세법 제234조의 16 제1항

○ 제234조의15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토지의 중합토지세는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 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종합합산과세"이라 한다)으로 한다.

〈 과세표준 ﴾

〈세 윤〉

2 천만원 이하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

2 천만원 초과

4만원+2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5 천만원 이하

5 천만원 1 억원	초과 이하		13만원+5천만원 초파금액의 1,000분의 5
1 억원 3 억원	초과 이하	grati to the	38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7
3 억원 5 억원	초과 이하		178만원+3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0
5 억원 10억원	초과 이하	. :	378만원+5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5
10억원 30억원	초과 이하	and the second	1,128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0
30억원 50억원	초과 이하	wert of the	5,128만원+30억원 초파금액의 1,000분의 30
50억원	초과	v je i	1억1,128만원+5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0

### □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5호

○ 지상 정착물의 부속토지(공장용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다)로서 그 지상 정착물의 바닥면적(건물이외의 시설물은 그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에 다음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이 경우 지상정착물의 연면적을 건축법에 의한 당해지역 용적률로 나는 면적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면적이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면적보다 클 때에는 이를 기준으로하여 초과토지를 산정한다.

	8	도	지	역	별		적용배율
도시계획	· 주거전용 · 상업지역 · 주거지역	<ul><li>・ 준주ス</li></ul>		공업지역	및 건 <del>용</del>	공업지역	5 배 3 배 4 배
지 역	• 자연녹지	지역・생	산녹지	지역			7 배
4	・미계획지역	對					4 н
도시	계획지역외의	지역	i pagas	7			7 m
		11	g ser j	,		*. · · ·	

# □ 지방세법 제196조의5 제1항 1호,2호

○ 자동차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구분에 의한다.

#### 1. 승용자동차

배기량에 씨씨당 세액을 곱하여 산정한 세액을 자동차 1대당 년세액으로 한다다, 자동차 1대당 년세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0만원으로 한다.

영 업	8	비 영 업 <del>용</del>	
배 -기 량	씨씨당 세액	배 기 량	씨씨당 세액
1,000씨씨 이하	18원	800씨씨 이하	100원
1,500씨씨 이하	18원	1,000세씨 이하	120 <del>원</del>
2,000씨씨 이하	19 <del>원</del>	1,500씨씨 이하	160원
2,500씨씨 이하	19 <del>원</del>	2,000씨씨 이하	220원
2,500씨씨 초과	24원	2,500씨씨 이하	250원
		3,000씨씨 이하	410원
		3,000씨씨 초과	630 <del>원</del>

#### 2. 기타 숭용자동차

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년세액으로 한다.

영 업 <del>용</del>	비 영 얼 용
20,000원	100,000원

# □ 향교재산법 제2조

○(향교재산의 정의) 이 법에서 향교재산이라 함은 향교의 유지와 운영을 위하여 조성된 동산, 부동산 기타재산을 말한다.

# □ 주차장법 제12조 제2항

○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외의 자가 도시계획구역안에서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노외주차장의 구조를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 도시계획법 제2조 제1항 14호

○ "공공시설"이라 함은 도로·공원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용시설을 말한다.

# □ 도시계획법시행령 제2조의3

- 법제2조 제1항 제1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용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 의 시설을 말한다.
  - 1. 광 장
  - 2. 주차장(행정청이 설치한 것에 한한다)
  - 3. 철 도
  - 4. 하 천
  - 5. 운 하
  - 6. 항 만
  - 7. 공 항
  - 8. 녹 지
  - 9. 운동장(행정청이 설치한 것에 한한다)
  - 10. 공공공지
  - 11. 수 도

- 12. 하수도
- 13. 공동구
- 14. 공동묘지(행정청이 설치한 것에 한한다)
- 15. 화장장(행정청이 설치한 것에 한한다)
- 16. 저수지(행정청이 설치한 것에 한한다)
- 17. 방풍설비
- 18. 방수설비
- 19. 방화설비
- , 20. 사방설비
  - 21. 방조설비
  - 22. 유수지 시설

## □ 문화재보호법 제4조

- ○(보물·국보의 지정) ①문화체육부장관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형문화재 중 중요한 것을 보물로 지정할 수 있다.
  - ②문화체육부장판은 제1항의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중 인류문화의 견지에서 그 가 치가 크고 유례가 드문것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보로 지정할 수 있다.

# □ 문화재보호법 제6조 내지 제8조

○(사적·명승·천연기념물의 지정) 문화체육부장관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념물중 중요한 것을 사적·명승 또는 천연기념물로 지정할 수 있다.

- ○(중요민속자료의 지정) 문화체육부장관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민속자료중 중요한 것을 중요민속자료로 지정할 수 있다.
-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문화체육부장관은 제4조·제6조 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에 있어서 문화재의 보호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 □ 지방세법 제237조 제1항

○ 도시계획세의 표준세율은 제236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의 1000분의 2로 한다.

#### 명 창 군 의 료 보 호 기 금 특 별 회 계 설 치 및 운 용 조 례 중 개정 조 례 안

의 안 번호 204

제출년월일: 1994. 12.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이 12267

#### 1. 제 안 이 유

- 상위법인 외료보호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의 개정으로 관련 법규인 본조례의
   상위법 규정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56조에 규정된 기금관리공무원의 관직명칭이 본 조례와 상이하여 상위법에 일치시킴.

#### 2. 주 묘 골 자

- 가. 의료보호법 제17조제1항의 개정으로 본조례 제17조제1항중 "1개월이내에 6개월내의" 를 "6월이내의"로 하고, (조례안 제17조제1항)
- 나. 의료보호법 제18조의 개정으로 본조례안의 제7조의2 "결손처분" 조항을 신설하며 (조례안 제7조의 2)
- 다. 의료보호법 제11조 및 제17조의 개정으로 본조례안의 별지서식 제2호의 "독촉장" 중 "의료보호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을 "의료보호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조례안 별지제2호 서식)
- 라. 의료보호법시행규칙 제25조제2항의 개정으로 본조례 제7조제1항중 "대불금의 지출 원인행위를 한 날부터"를 "대불한 날부터"로 하고, 동조제1항의 제1호 내지 제3호 에 규정된 대불금의 총액에 따른 분할 상환규정의 금액과 상환횟수를 상위법에 일 치시킴. (조례안 제7조제1항)
- 마.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관리자의 관직에서 "기금출납명령관"을 "기금운용관"으로,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출납원"으로 한다. (조례안 제3·4·5·6·7조)

#### 명 장 군의 료 보 호 기 금 특 별 회 계 설 치 및 운 용 조레 중 개 정 조 례 안

평창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외료보호법시행령 제11조"를 "의료보호법시행령 제21조"로 "기금출납명령 관"을 "기금운용관"으로,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충납원"으로 한다.

제4조중 "기금출납명령관"을 "기금운용관"으로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출납원"으로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3항증 "기금출납명령관"을 기금운용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증 "기금출납명령판"을 기금운용관"으로, "의료시설의 장이"를 "의료보호 진료기관의 장이"로, "청구내용을"을 "진료비청구명세서를"로, "결정한 후 의료대상자 카드에 각각 기재하고"를 "결정, 의료보호 대불금 상환장에 기재하고"로,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출납원"으로 한다.

동조제2항증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출납원"으로 한다.

제7조제1항중 "기금출납명령관"을 "기금운용관"으로, "대불금의 지출원인행위를 한 날부터"를 "대불한 날부터"로 한다.

등조제1항제1호중 "4회"를 "3회"로, 제2호중 "20만원 미만"을 "30만원 미만"으로, 제3호 중 "20만원이상"을 "30만원이상"으로 한다.

동조제2항중 "1개월이내에 6개월내"를 "6월이내의"로 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결손처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상환받지 못한 대불금을 결손처분할 수 있다.

- 1. 보호대상자외 행방을 알 수 없게 된 때
- 2.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 3. 대불금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대불금 상환이 불가능한 때 (읍면장의 확인과 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호기관이 결손처분을 결정한 때에 한 한다)
- [별지 제2호서식]의 독촉장중 "의료보호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을 "의료보호법 제17조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1조(생략) 제2조(생략) 제3조(회계공무원의 임명) ①외료보호법 시행명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기급출납 명령판은 사회과장, 기급출납공무원은 의료보장계장으로 한다. ②(생략)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 법중 화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경리관, 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급출납원에 판한 규정은 기급출납공무원에게 전용한다. 제5조(수입) ①기급출납명령판이 수임급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임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생략) ③수임금을 수납할 기판은 납입자에게 영수중을 교부하고 지쇄없이 기급출납 명령판에게 영수보고서를 충부하여야한다. 제6조(지출)①기급출납명령판은 보호대상자에게 외료보호를 행한 외료시설의 장	현 행	계 정
제2조(생략) 제3조(회계공무원의 임명) ①의료보호법 시행형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기급출납 명령관은 사회과장, 기급출납공무원은 의료보장계장으로 한다. ②(생략)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 법중 화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 법중 화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 는 경리관, 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급 출납명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급출납공무원에게 준용한 다.  제5조(수임) ①기급출납명령관이 수임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임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생략) ③수임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임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급출납 명령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한다.  ②(현행과 같음) ③(현행과 같음)  제5조(수임) ①기급출납명령관은 보호대상 제6조(지출)①기급운용관은		제1조(현행과 같음)
시행정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기급출납 명령관은 사회과장, 기급출납공무원은 의료보장계장으로 한다. ②(생략)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 법중 화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 법중 화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판하여는 경리관, 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급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급출납공무원에게 조용한다. 제5조(수입)·①기금출납명령관이 수입금을 수납한기관은 납입자에게 납입의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생략) ③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급출납 명령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한다. 제6조(지출)①기금출납명령관은 보호대상 제6조(지출)①기금운용관은		제2조(현행과 같음)
명령관은 사회과장, 기금출납공무원은 의료보장계장으로 한다. ②(생략)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 법중 화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 는 경리관, 정수판에 관한 규정은 기급 출납명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 한 규정은 기급출납공무원에게 준용한 다.  제5조(수임) ①기금출납명령관이 수임금 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임액 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생략) ③수임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중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급출납 명령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6조(지출)①기급출납명령관은 보호대상 제6조(지출)①기금운용관은	제3조(회계공무원의 임명) ①의료보호법	제3조(회계공무원의 임명) ①의료보호법
의료보장계장으로 한다. ②(생략)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 법중 화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판하여 는 경리관, 징수판에 판한 규정은 기금 출납명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판 한 규정은 기금출납공무원에게 준용한 다.  제5조(수입) ①기금출납명령관이 수입금 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 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생략) ③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자체없이 기급출납 명령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6조(지출)①기금출납명령관은 보호대상 제6조(지출)①기금운용관은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u>기금출납</u>	시행령 제21조의 기급운
②(생략)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 법중 화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 는 경리관, 징수판에 판한 규정은 기금 출납명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판한 규정은 기금출납공무원에게 준용한다.  제5조(수입)·①기금출납명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생략) ③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출납 명관 연수 연구 연결 연결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한다.  제6조(지출)①기금출납명령관은 보호대상 제6조(지출)①기금운용관은	명령관은 사회과장, 기금출납공무원은	용관은 기금출납원은
재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 법증 화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 는 정리관, 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급 출납명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 한 규정은 기급출납공무원에게 준용한 다. 제5조(수임)·①기급출납명령관이 수임급 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 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생략) ③수임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급출납 명령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6조(지출)①기급출납명령관은 보호대상 제6조(지출)①기급운용관은	의료보장계장으로 한다.	•••••
법중 화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 는 경리관, 징수판에 판한 규정은 기급 출납명령판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판 한 규정은 기급출납공무원에게 준용한 다.  제5조(수임) ①기급출납명령판이 수입급 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 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생략) ③수임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급출납 명령판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6조(지출)①기급출납명령판은 보호대상 제6조(지출)①기급운용판은	②(생략)	②(현행과 같음)
는 경리판, 징수판에 판한 규정은 기금 출납명령판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판한 규정은 기금출납공무원에게 준용한다.  제5조(수입)·①기금출납명령판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고지를 하여야한다. ②(생략) ③수입금을 수납할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출납명령판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한다.  제6조(지출)①기금출납명령판은 보호대상 제6조(지출)①기금운용판은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출납명령판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판한 규정은 기금출납공무원에게 준용한다.  제5조(수입)·①기금출납명령판이 수입금 제5조(수입)·①기금운용판이 제5조(수입)·①기금운용판이 의료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고지를 하여야한다. ②(생략) ②(현행과 같음) ③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출납명령판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한다.	법중 화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	
한 규정은 기급출납공무원에게 준용한 다.  제5조(수입)·①기급출납명령관이 수입급 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 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생략) ③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급출납 명령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6조(지출)①기금출납명령관은 보호대상 제6조(지출)①기금운용관은	는 경리관,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u>기금</u>	<u>기금</u>
다.  제5조(수입)·①기금출남명령관이 수입금 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 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생략) ③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출납 명령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6조(지출)①기금출납명령관은 보호대상 제6조(지출)①기금운용관은	출납명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	<u>운용관</u> 에게
제5조(수입)·①기금출납명령관이 수입금 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 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생략) ③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출납 명령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6조(지출)①기금출납명령관은 보호대상 제6조(지출)①기금운용관은	한 규정은 <u>기금출납공무원</u> 에게 준용한	기금출납원에게
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 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생략) ②(현행과 같음) ③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③	다.	•••
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생략) ②(현행과 같음) ③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③	제5조(수입)·①기금출납명령관이 수입금	제5조(수입) ①기금운용관이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생략) ②(현행과 같음) ③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③	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	•••••
②(생략) ②(현행과 같음) ③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③	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
③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③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출납	고지를 하여야 한다.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u>기금출납</u>	② (생략)	②(현행과 같음)
명령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용판	③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b>3</b>
한다 제6조(지출)①기금출납명령관은 보호대상 제6조(지출)①기금운용관은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출납	·····기금운
제6조(지출)①기금출납명령관은 보호대상 제6조(지출)①기금운용관은	명령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용관
	한다.	••••
자에게 의료보호를 행한 <u>의료시설의 장</u> 의료보호 진료기관	제6조(지출)① <u>기금출납명령관</u> 은 보호대상	제6조(지출)①기금운용관은
i i	자에게 의료보호를 행한 <u>의료시설의 장</u>	·····의료보호 진료기판

	현	행	71	정
	이 의료보호비를 기	병구한 때에는 그 <u>청</u>	의 장이	<u> 진</u>
	구내용을 검토 조건	성하여 기금 부담액과	료비청구명세서를	
	대불금을 구분 결	정한 후 의료보호대상	· · · · · · · · · · · · · · · · · · ·	결정, 의료보호 대
	자 카드에 각각 기	재하고 대불금 상환	불금 상환장에 기지	하고
	의무자에게는 제53	조제2항의 규정에 따	• • • • • • • • • • • • • • • • • • • •	
	른 납입고지서를,	<u>기금출납공무원</u> 에게	, <u>7</u> ]	금출납원에게는
	는 지출원인행위	판계서류를 송부하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야 한다.		•••••	•
	②제1항의 규정에	외하여 지출원인행위	Ø	
	관계서류를 송부받	은 기급출납공무원은		기금출납원은
	해당 군금고에 대학	하여 지급명령을 발하		•••••
	여야 한다.	,		
7	117조(대불금의 상흰	등) ① <u>기금출납명령</u>	제7조(대불금의 상환	등) Φ <u>기금운용관</u> 은
	관은 대불금의 총	액에 따라 다음 각호		• • • • • • • • • • • • • • • • • • • •
	의 구분에 따라 <u>대</u>	불금의 지출원인행위		. <u>대불한 날부터</u>
	를 한 날로부터 3	월이 경과한 월의 말		••••••
	일을 최초의 납기	일로 하여 3월마다 분		• • • • • • • • • • • • • • • • • • • •
	할상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불		••••••
	금은 무이자로 한	다.		••
	1. 10만원미만은 _	1회	1. 10만원미만은 <u>3</u>	<u> </u>
	2. 10만원이상 <u>20</u>	만원미만은 8회	2. 10만원이상 <u>30만</u>	<u>반원미만</u> 은 8회
	3. 20만원이상은 :	12회	3. <u>30만원이상</u> 은 1	2회
	②대불금의 상환의	무자가 대불금을 납	Ø	• • • • • • • • • • • • • • • • • • • •
	부기한까지 상환히	지 아니한 때에는 납		• • • • • • • • • • • • • • • • • • • •
	기일이 경과한 날	로부터 1개월 이내에		6월이내
	6개월 내의 납입기	간을 정하여 별지 제	<u>의</u>	••••••
<u> </u>	<del></del>	<u> </u>		

현 행	개 정
2호서식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그 기간내에 대불금을 상환하지	•••••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의료보호를 경기	
한다.	
③ (생략)	③(현행과 같음)
(신설)	제7조의2(결손치분) 다음 각호에 해당하
	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상환받지 못한
	대불금을 결손처분할 수 있다.
	1. 보호대상자의 행방을 알 수 없게 된
	<u> </u>
	2.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
	효가 완성된 때
	3. 대불금상환의무자의 경제격 사정으
	로 인하여 대불금 상환이 불가능한
	때(읍면장의 확인과 군의료보호심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호기관이 결
	손치분을 결정한 때에 한한다)
제8조(생략)	제8조(현행과 같음)
	i

### 관계법령발췌서

#### ■ 지방자치법

제133조(재산 및 기금의 설치) ①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자금을 적립하가나 또는 <u>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u> ②제1항의 재산의 보유, 자산의 적립 및 기금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 지방재정법시행령 (조례안 제3·4·5·6·7조와 관련)

제156조(기금의 운용·관리)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의 종류별로 <u>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어야 한다.</u>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 ■ 의료보호법

- 제17조(독촉등) ①대불금상환의무자가 대불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u>6월이내의</u> 기간을 정하여 지체없이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그 기간내에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의료보호를 정지할 수 있다.(조례안 제7조제2항 관련)
- 제18조(대불금의 결손처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상환받지 못한 대불금을 결손처분할 수 있다. (조례안 제7조의2 관련)
  - 1. 보호대상자의 행방을 알 수 없게 된 때
  - 2.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 3. 대불금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대불금 상환이 불가능한 때 (옵면장의 확인과 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호기관이 결손처분을 결정한 때에 한한다) 제22조(소멸시효) ①보호비용 및 대불금에 관한 채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 📕 의료보호법시행령

제11조(의료보호대상자) 법 제4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의료보호대상자로 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조례안 제3조와 관련)

#### ■ 의료보호법시행규칙

제25조(의료보호비용의 대불 및 상환방법) ①(생략)

②의료보호기금에서 보호비용의 대불을 받은 자는 대불금 총액을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3월마다 같은 액수로 분할하여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초의 납입기한은 의료보호비용을 대불한 날부터 3월이 경과한 달의 말일로 한다.(조례안 제7조와 관련)

- 1. 대불금액이 10만원미만은 3회
- 2. 대불금액이 10만원이상 30만원미만은 8회
- 3. 대불금액이 30만원이상은 12회

# 1994년제4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의 안 번 호 >>7 제출년월일 : '94. 12

제 출 자: 평창군수

#### 1. 제안이유

군민의 복지중진과 군정시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행정수요의 능동적인 지원은 물론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엄정한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199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 요구합니다.

#### 2. 제안주요내용

199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요구액은 총 750백만원으로 일반회계 750백만원이며

#### (세 입)

일반회계는 지방교부세 750백만원으로 되어있고

특별회계는 사업외수입 750백만원과 보조금  $\Delta$  750백만원으로 되어 있고

#### (세출)

일반회계의 편성은 자치단체 내부거래 750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3. 관계법령

#### 1) 지방재정법 제36조

지방자치단체는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때에는 추가 경정예산안을 편성할수 있다.

다만, 국가나 도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는 추가경정 예산성립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동일 회계년도내에 차기 추가 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 2) 지방자치법 제121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1994년도 (제4회추정)

세입세출예산(안 특별회계 引入 일반회계

예산총직 세입 세출 예산

평 창 군

1994 世王 [ 4期条湯]

T	<b>3</b> 5°	मधमक बिरुक्ष	ध्रम्था क्रिड
₩	Ħ	57,586,623	1,727,598
स च	¥	52,347,328	1,570,419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	5, 239, 295	157,178
상수도두별회계		3,303,099	99,092
주택사업목별회계	*	P39.877	28,196
의료보호기금목별회계		500,984	15,029
시마을소득사업은영관리	天双声中	771,672	8,375
거소독주민생활안경기금	<b>李祖位</b> <del>龙</del>	77.843	2,335
농광지구조성및판리사업	中国过年	138,315	4,149

\* 제3조 : 1994년도 계부부담핵위는 별점 '재무부담력위조서'와 같다.

\* 제4조 : 1994년도 지방치 발행 한도에은

북만원으로 한다. \* 제5조 : 1994년도 명시이월사업은 별점 '명시이월사업' 조서와 잘다.

\* 제6조 : 1994년도 계속비 사업은 별점 '계속비조서'와 갑다.

\* 1472 : 22世 14 24 0 0 日 日 七

581,048천원으로한다.

예 산 총 규 모

(단위 : 천원)	중 △ 관	750,000	750,000	0	0	0	0	0	0	0	0	0	0
	전 년 도 (기 정) 예 산 액	56, 836, 623	51, 597, 328	5, 239, 295	3, 303, 099	939,877	500,984	279,177	77,843	138,315	0	0	0
	66 산 상	57, 586, 623	52, 347, 328	5, 239, 295	3, 303, 099	939,877	500,984	279, 177	77,843	138,315	0	0	0
	中中	東	中	天 杨	<b>Т</b>	4 公	면 오 기 면	을 소득 사업 운영	두 주민생활 안정 기금	이구 조성 및 관리 사업			
	柯		কা	· pijr	マ	KI-	গ	세마음	사수	*			:

- 7.57 -

五空上音画令 李勒田

		• •		,																						
: # <del>(</del> )		**	0	0	0	0	0	0	0	0	0	0	0	0	٥	0	0	0	0	0	0	0	0	0	0	0
新世)		₩ ₩ π- <del>-</del> <del>-</del> <del>-</del> <del>-</del> <del>-</del> <del>-</del> <del>-</del> <del>-</del> <del>-</del> <del>-</del>	1001	8	67%	228	458	8	8	288	150	215	155	15	8		8	8	<b>59</b>	<b>15</b>	\$28	150	  **	8	=	<b>1</b> 2
	₹	너 =	1	-	+	╁.	$\vdash$	0	-	-	1	<del> </del>		<u> </u>	0	0	1001	├—	┢	┧	+	<del> </del>	_	0	ļ	
	₩. ₩	(유 원 (도) 당 명	5,239,295		3,506,222	1,138,234	2,361,988			1,483,073	389,976	1,093,097	250,000	250,000			5,239,295	10,410	863,105	844,365	2,700,410	356,220	381,467		43,638	39,680
1	шу-	나 == 소 예약	<u>200</u>	8	678	83	458	8	8	\$8	K	215	35	55	8	8	8	8	25	\$	23	15	122	8	=	13
		<b>इ</b> १२ इ	5,239,295	0	3,506,222	1,138,234	2,367,988	0	0	1,483,073	389,976	1,093,097	250,000	250,000	0	0	5,239,295	10,410	863,105	844,365	2,700,410	356,220	381,467	0	43,638	39,680
		K. □	750,000	0	0	0	0	000,02T	0	0	0	0	0	0	0	0	750,000	0	0	0	0	0	0	750,000	0	0
	74	₹ 00 mm	25	22	<b>10</b>	\$	55	418	8	88	123	<u>35</u>	<b>5</b> 5	¥2.	8	8	8	\$6 50	<u> </u>	*5	8	8	~	8	8	12
	<b>斯</b>	전 년 도 (기상) 4 산 6	51,597,328	6,038,550	5,275,668	2,850,540	2,425,128	20,940,561	4,506,207	14,536,342	6,390,717	8,145,625	300,000	300,000	0	0	51,597,328	9,190,925	6,281,580	4,322,215	30,629,217	٥	392,384	45,269	154,690	581,048
0		₹	8	12	8	55	锈	415	85	<b>5</b> 82	125	35	3	15	8	85	1009	188	23	\$6	55	ජි	=	77	85	~
j =	6	क २० इ	52,347,328	6,038,550	5,275,668	2,850,540	2,425,128	21,690,561	4,506,207	14,536,342	6,390,717	8,145,625	300,000	300,000	0	0	52,347,328 1	9,190,925	6,281,580	4,322,215	30,629,217	0	392,384	795,269	154,690	581,048
) -		# V &	750,000	0	0	0	0	000'0SL	0	0	0	0	0	0	0	0	750,000	0	0	0	0	0	0	000,02T	0	0
ì	_	₹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	<b>100</b>	118	15%	25	***	378	86 80	288	128	168	=	2	8	85	<b>5</b> 00	168	13%	85	365	₩.	#	85	8	≝
		전 년 도 (기정) 약 산 약	56,836,623	6,038,550	8, 781,890	3,988,774	4,793,116	20,940,561	4,506,207	16,019,415	6,780,693	9,238,722	550,000	250,000	0	0	56,836,623	9,201,335	. 7,144,685	5,166,580	33,329,627	356,220	173,851	45,269	198,328	620,728
	₩-	₹ 1- ±	1008	108	155	卢	**	<b>5</b>	***	<b>\$</b>	132	<b>19</b>	*	<b>≤</b>	8	8	8	<u>\$</u>	178	8.	88	¥.	=	=	8	≖
		44 A	51,586,623	6,038,550	8,781,890	3,988,774	4,793,116	21,690,561	4,506,207	16,019,415	6,780,693	9,238,722	250,000	250,000	0	0	51,586,623	9,201,335	7,144,685	5,166,580	33,329,627	356,220	173,851	795,269	198,328	620,728
	:	과	A	¥ ∰	<b>क</b> क	경상폭류외수입	임시적체외수입	用中用	TILE 180	rie rei	። ት ጁ 및 E	는 보	æ' ₹	₹	산 매자수입	Tipe Tipe	₩.	E E	는 다	E.	는 지	<b>水 및 含 자</b>	वर <sup>1</sup> चर	는 구	立	<del>2</del>
		r <del>i</del>		ন	-	ል የ	<del>장</del>	क्रे <sup>o</sup> स	TY.	과	HГ	퍼	*	र	- 1	파		ره	Dļi V	~	74	حد طو	퍼	=	~	-
				7	<del>- '</del>					<del></del>							—-	ᆛ				1		+6a		<b></b> -∤